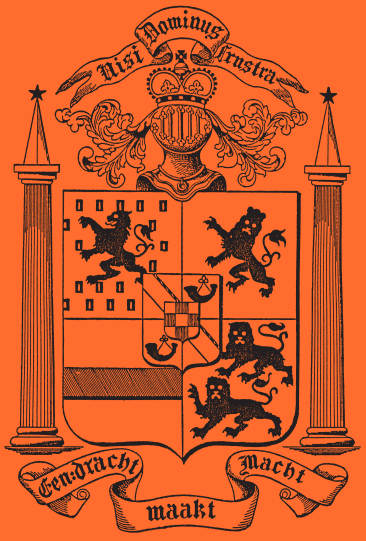

BOOK OF CHURCH ORDER

총회헌법

2026 CLASSIS EDITION

2026년판 노회용

Effective until December 30, 2026

2026년 12월 30일까지 유효

REFORMED CHURCH IN AMERICA

미 국 개 혁 교 회

총회헌법
THE BOOK OF CHURCH ORDER

정치, 권징조례, 총회 내규 및 특별규칙, 각종 교단 양식

The Government, the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the Bylaws and Special Rules of Order of the General Synod,
the Formularies

미 국 개 혁 교 회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2026년판 노회용
헌법의 최종권위는 영문판에 있음

2026년판 노회용은 헌법의 주요 개정 사항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하며, 2026년 12월 30일부터는 영어로 인쇄된 「2026 EDITION, MIDDLE ASSEMBLY VERSION」이 현행 최종권위본이 된다.

한 글 판

2026 년도
© 2026 Reformed Church Press
판권소유: 미국개혁교회 출판부

총회헌법 사용서

(How to Use the *Book of Church Order*)

시작하면서

매년 개정안의 승인에 따라 낱장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먼저 서문 (Preamble) 을 읽으십시오. 서문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헌법상의 기본적인 용어와 원리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 필요에 따라 헌법의 각 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교회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컨시스토리 (The Consistory)" 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1부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내용

헌법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부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 1부는 정치, 제 2부는 권징조례, 제 3부는 총회의 부칙과 세칙을 다룹니다. 제 1부는 조직상의 회의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제 1장 컨시스토리, 제 2장 노회, 제 3장 대회, 제 4장 총회.

만일 특정 주제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기 원하시면, 책의 첫머리에 있는 목차나 끝부분에 있는 색인을 참조하십시오. 색인은 헌법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총회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용어들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권징의 절차와 관련해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제 2부 뒷부분에 수록된 권징조례 관련 주해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헌법은 RCA 홈페이지 (www.rca.org) 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관심있는 단어나 문구의 검색도 가능합니다. 각 조항을 살필 때 보다 넓은 문맥을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관련된 장 전체를 읽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해석

총회헌법 내의 전체 장을 읽은 뒤에도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목사 혹은 노회 서기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보통 노회 서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헌법의 최근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시면, 부록 뒤에 수록된 총회회의록참조 부분을 참고하여 관련된 총회회의록 (Minutes of General Synod, MGS) 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총회헌법의 주해서인 알렌 잰슨 (Allen Janssen) 의 "헌법 신학 (Constitutional Theology)"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절차 이후에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총회헌법위원회 (the Commission on Church Order) 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 해석과 관련된 제반 질문들에 답변할 책임을 가진 총회 내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답변을 위해 공식적 헌의안 (overture) 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와 융통성

총회헌법은 교단의 조례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개혁교회의 헌법은 타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각 치리회에게 교회의 일반적인 감독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2002년 2월 총회헌법위원회에 의하여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총회헌법 서론

(An Introduction to the *Book of Church Order*)

총회헌법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
헌법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all things must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고전 14:40) 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역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질서 (order) 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보이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방편을 말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사역하는 방식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교단이 말하는 교회 질서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대의제 혹은 장로교 정치체제는 교회 내에서 직분자로 선출되어 안수를 받은 이들로 구성된 일련의 대표회의들에 그 권위를 둡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질서는 교회 정치의 다른 두 형태의 중간지점에 위치합니다: 하나는 주교 (bishop) 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감독 정치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각 회중의 개별적인 자율성을 중요시하되 다른 교회와는 단지 느슨한 의미의 연합을 추구하는 회중 정치체제입니다.

교단 내의 직분들은 무엇인가?
우리 교단 내에는 네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 세 개는 교회의 정치와 관계가 있는 직분으로, 목사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 장로, 그리고 집사입니다. 네 번째는 신학생을 훈련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는 직분으로, 신학교나 총회 산하 목회자격증명기관 (Ministerial Formation Certification Agency, MFCA) 에서 사역하는 총회 임명 교수 (General Synod professor) 입니다. 이러한 직분으로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리인들로 섬기는 종들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내 직분의 존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반적인 사역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단 하나의 사역,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단 내의 대표회의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네 개의 대표회의 혹은 치리회가 있는데, 컨스시토리 (the consistory), 노회 (the classis), 대회 (the regional synod), 총회 (the General Synod) 가 그것입니다.

왜 우리는 대표회의들에 의존하는가?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모든 결정은 전체 회중들의 모임에 의해 이루어져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위해 전체 회중이 항상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으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 내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대의적 치리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교회의 치리회들에서 대표로 섬기는 이들의 결정을 수락함으로 이루어 집니다.

총회헌법만이 우리 교단을 위한 유일한 안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단의 정치와 권징조례가 담긴 총회헌법과 더불어, 우리는 교리적 표준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그 요약서, 도르트신경, 벨하고백서) 과 예배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 (theology) 과 예전 (liturgy) 과 정치 (government) 는 교회 사역을 위한 뼈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교단을 하나로 묶는 골격의 역할을 합니다.

총회헌법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RCA 교단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rca.org/bco).

이 안내서는 2002년 2월 총회헌법위원회에 의하여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한글판의 번역은 2015년 판 한글본을 기초로
수정 및 재번역 되었습니다.
오역이나 오자, 혹은 더 나은 한글판 번역의 제안을 위해서
번역자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서 문 (Preamble) 1

제 1 부 정치 (The Government)

제 1 장 컨시스토리 (The Consistory)

제1조 정의 (Definitions)..... 11
제2조 컨시스토리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Consistory)..... 13
제3조 컨시스토리의 임원 (Officers of the Consistory) 17
제4조 업무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18
제5조 장로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of Elders)..... 19
제6조 집사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of Deacons) 20
제7조 통합 교회 (Union Churches) 21
제8조 연합 교회 (Federated Churches)..... 21
제9조 다교단 교회 (Affiliated Churches)..... 22

제 2 장 노 회 (The Classis)

제1조 노회의 정의 (Classis Defined) 25
제2조 노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Classis) 25
제3조 장로 총대 (Elder Delegates) 26
제4조 노회의 회의 (Sessions of Classis)..... 27
제5조 노회의 임원 (Officers of Classis)..... 27
제6조 업무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27
제7조 지역교회 및 미조직 교회의 감독 (Superintendence of the Local and Organizing Churches) 28
제8조 교회의 창립 (Organizing a Church)..... 31
제9조 컨시스토리의 권한 대행 (Superseding a Consistory)..... 32
제10조 교회의 해산 또는 이전 (Disbanding or Transferring a Church) 34
제11조 목회 후보생에 대한 감독 (Supervision of Candidates for Ministry) 38
제12조 노회고시준비증명서 (Certificates of Readiness for Examination) .. 40
제13조 강도권 인허와 안수의 감독 (Supervision of Licensure and Ordination) 42
제14조 타교단의 목회자나 강도권 인허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영입 (Reception of Ministers and Licensed Candidates from Other Denominations) 43

제15조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에 대한 감독 (Supervision of 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 45
제16조 설교 장로의 위임과 감독 (Commissioning and Supervision of Preaching Elders) 49
제17조 평신도 목회자의 위임과 감독 (Commissioning and Supervision of Commissioned Pastors) 50
제18조 부목회자의 자격 인준과 감독 (Certification and Supervision of Associates in Ministry) 52
제19조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 (Relation to Regional Synod and General Synod) 52

제 3 장 대 회 (The Regional Synod)

제1조 대회의 정의 (Regional Synod Defined) 53
제2조 대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Regional Synod) 53
제3조 총대 (Delegates) 54
제4조 대회의 회의 (Sessions of Regional Synod) 54
제5조 대회의 임원 (Officers of Regional Synod) 54
제6조 업무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55
제7조 총회와의 관계 (Relation to the General Synod) 55

제 4 장 총 회 (The General Synod)

제1조 총회의 정의 (General Synod Defined) 57
제2조 총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General Synod) 57
제3조 총 대 (Delegates) 58
제4조 총회의 회무와 회의 (Sessions and Meetings of General Synod) 59
제5조 총회의 임원 (Officers of the General Synod) 59
제6조 업무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60
제7조 총회의 각종 위원회, 이사회 및 대행기관 (Committees, Boards, and Agencies of the General Synod) 60
제8조 총회 임명 교수의 직분 (The Office of General Synod Professor). 61

미국개혁교회 정치와 권징조례의 규칙 및 수정
(Rules and Amendments) 63
미국개혁교회의 헌법을 구성하는 제 1부와 제 2부, 각종 양식 (부록 참조) 및 미국개혁교회 예배모범에 적용되며, 노회의 승인이 요구됨.

제 2 부 권징 조례
(The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제 1 장 권 징 (Discipline)

제1조 권징의 의미 (Nature of Discipline) 67
제2조 위법 행위의 의미 (Nature of Offenses) 67
제3조 권징의 책임 (Responsibilities for Discipline) 67
제4조 고소의 처리절차 (Procedure for Bringing a Charge) 70
제5조 고소건의 재판 (Trying a Charge) 71
제6조 해벌과 복직 (Restoration and Reinstatement)..... 74

제 2 장 이의신청 (Complaints)

제1조 이의신청의 의미 (Nature of Complaints) 75
제2조 이의신청의 과정 (Process for Complaints) 76

제 3 장 상 소 (Appeals)

제1조 상소의 의미 (Nature of an Appeal).....79
제2조 상소의 과정 (Process for Appeals) 79

2부 권징 조례에 관한 주해서 EXPLANATORY NOTES ON CHAPTER 2:
THE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83

제 3 부 내규 및 특별규칙
(The Bylaws and Special Rules of Order)

제 1 장 총회 내규 (The Bylaws of the General Synod)

제1조 총대의 권리와 의무 (Privileges and Duties of Delegates) 91
제2조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선출 (Election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91
제3조 총회중앙위원회 (General Synod Council) 92
제4조 총회의 대행기관과 위원회의 구성 (Membership on General Synod Agencies and Commissions) 95
제5조 위원회 (Commissions) 96
제6조 교수회 (The Professorate) 103
제7조 총회 대행기관들 (General Synod Agencies).....104
제8조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s).....105
제9조 준회원 (Corresponding Delegates).....105
제10조 회의 규칙 (Committee on Emergencies) 107
제11조 회의 규칙 (Rules of Order).....108

제12조 개정 (Amendments) 108

제 2 장 총회의 특별규칙 (Special Rules of Order of the General Synod)

제1조 회무의 순서 (Order of Business) 109
제2조 회무의 상정 (Presentation of Business) 110
제3조 회무의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112

부록 (Appendix): 미국개혁교회의 각종 양식들 (The Formularies)

1.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선언서 (Declaration for Licensed Candidates) 115
2.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증명 (Attestation of a Licensed Candidate) 115
3.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의 선언서 (Declaration for 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 116
4. 안수 받은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에 대한 증명 (Attestation of an Ordained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117
5.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에 대한 청빙 (Call to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118
6. 총회 임명 교수의 임용 (Appointment of a General Synod Professor) . 119
7. 총회 임명 교수의 선언서 (Declaration for a General Synod Professor) .. 120
8. 목회 관계의 해지에 대한 청원 (Application for the Dissolution of a Pastoral Relationship) 121
9.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의 이명서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122
10. 교인의 이명서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Church Member) 123
11. RCA 산하 교회를 다른 교단으로 전출하는 증명서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Church to Another Denomination) 123
12. 고소장 (Charge) 124
13. 고소를 당한 개인이나 컨시스토리의 소환장 (Citation to an Accused Person or Consistory) 125
14. 증인의 소환장 (Citation to a Witness) 126
15. 교회등록을 위한 정관의 규정 (Provision for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Congregations) 127
16. 평신도 목회자의 선언서 (Declaration for Commissioned Pastors) 127
17.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이명서 (Certificate of Transfer for a Licensed Candidate) 128
18.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이명서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to Another Denomination) 129

총회회의록참조 (References to the Minutes of General Synod) 130

서 문 (*Preamble*)

미국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의 존재목적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과 또한 일체의 기독교적 선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섬기는 사역에 있다. 이러한 존재목적은 특정 직분들과 행정기관, 그리고 신학적, 예전적 규범들에 의해 적절한 질서와 합당한 권징이 유지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성경은 미국개혁교회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다. 본 교단의 헌법은 네 개의 교리적 표준 (the Doctrinal Standards: 벨직 신앙고백서 the Belgic Confession of Faith,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그 요약서 the Heidelberg Catechism with its Compendium, 도르트 신경 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 벨하 고백서 the Belhar Confession), 예배모범 (the Liturgy with the Directory for Worship), 미국개혁교회의 정치 (the Government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권징조례 (the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그리고 본 서문 (Preamble) 과 각종 교단 양식들 (the Formularies) 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개혁교회의 기본적인 또는 핵심적인 정치조직상 네 개의 단위는 컨시스토리 (the consistory), 노회 (the classis), 대회 (the regional synod), 그리고 총회 (the General Synod) 이다. 또한 컨시스토리는 장로회와 집사회로 나뉜다. 장로회와 노회, 대회, 총회는 치리권과 입법권을 갖는다. 각 정치 단위는 치리권을 행사할 때는 치리회 (judicatory) 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는 단순히 기관 (assembly) 이라고 부른다. 집사회는 컨시스토리 내에서만 입법권을 행사한다. 미국개혁교회 내에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는데,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 (이후로는 '목회자'), 장로, 그리고 집사이다. 네 번째 직분인 총회 임명 교수는 특별히 사역을 위한 목회자 후보생들의 준비 및 인증과 관련된 사역을 감당하는 교단이 세운 교사를 말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직분들의 정치적인 기능은 교회의 사명과 그 사역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감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직분의 사역은 교회의 사명과 분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명제에서 다음의 세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교회 정치의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그 모든 성장 단계에 있어서 그 머리되신 분의 사명, 즉 온 세상에 그분의 구주되심의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그 주인되심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오직 하나의 사역이 있을 것이며, 그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교회 내 직분을 맡은 자의 특정 사역들은 모두 이러한 공통된 사역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셋째, 미국개혁교회가 질서상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직분들은 본질상 기능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모든 경우에 있어 "직분" 이란 용어는 '섬김' 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개혁교회의 조직과 행정은 장로제 (presbyterial) 의 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지상에 있는 교회의 본질 (The Nature of the Church on Earth). 교회는 성경에 여러 비유를 통해 묘사되는데, 그 본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 (Lord and Savior) 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성령에 의해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선교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부름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함으로 그 사명을 성취한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 즉 "거룩한 공교회" 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 있는 모임인 것이다. 그들이 주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로 서로가 나누는 "성도의 교통 (communion of the saints)" 을 의미한다.

교회의 머리 (The Head of the Church). 개혁주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한다. 성경은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부르며,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와 가장 친밀하며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참된 머리로써 교회의 모든 삶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시며,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그분을 향한 즉각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의와 사랑과 온유함을 수반한다.

교회의 권위의 성격 (The Nature of the Church's Authority). 교회 안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위는 머리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의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 (delegated authority) 인 것이다. 그들의 특별한 임무는 주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그들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분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의 권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목회적 권위, 선언적 권위, 영적 권위가 바로 그것이다. 목회적 권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써의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포적 권위는 성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회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포하고 그에 근거해 행동해야 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영적인 권위는 교회의 삶과 활동을 다스리며 그 제반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권위이다. 교회가 정부 위에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되며, 정부 역시 교회의 권위를 침해할 수 없다.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는 교회의 기관들에서 행사된다. 함께 모인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풍성함을 대표한다. 그 어떠한 직분도 다른

직분들과 분리되어 기능할 수 없다. 개혁교회의 정치는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역을 돌보게 한다. 이 때 상위 기관은 하위 기관의 책임 범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컨시스토리, 노회, 대회 및 총회는 그 공유된 범위들 안에서 함께 사명과 사역을 수행한다.

교인의 구분과 정의 (Membership Categories and Definitions). 미국개혁교회에 속한 교회들의 교인은 "정교인 (confessing members)," "세례교인 (baptized members)," "비활동교인 (inactive members)," "원입교인 (adherents)" 으로 구분한다.

"정교인" 은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장로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거나 재확인함을 통해 교인으로 받아 들여지거나, 또는 다른 기독교회로부터 적절한 이명서를 제출한 자로서, 은혜의 방편 특히 말씀을 듣는 일과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성실한 자이다.

"세례교인"은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성찬예식에 간혹 참여를 하나, 아직 장로회를 통해 정교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이다.

"비활동교인" 은 장로회의 결의에 의해 "정교인" 명부에서 삭제된 자이다.

"교인" 은 정교인, 세례교인, 그리고 비활동교인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

"원입 교인" 은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는 참여하지만, 교인이 아닌 자를 일컫는다.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The Representative Principle).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한 능력은 성령에 의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전달된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각 직분의 기능이 다르며, 또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영향 아래 있기 마련이므로, 적절히 행사되는 권위의 체계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전체 회중이 매번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모여 안건을 다룰 수 없으므로, 다양한 수준의 대의적 치리회들이 세워져야 한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대표하여 섬기는 이들의 결정에 의해 통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루어 진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 (Government by Elders). 개혁주의 교회들은 신약성서에 기록된 교회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해 왔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기 이전에 속해 있던 회당들이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 장로들 (presbyters 또는 elders) 에 의하여 다스려졌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목회자를 특별한 종류의 장로로 생각했는데, 일부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들은 이들을 "가르치는 장로" 라 불렀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통치한다. 또한 이들은 때때로 교단 내 상위 입법기관 혹은 치리기관의

회원이 되어 상회의 사역을 돕기도 한다.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들 안에는 지역교회에서부터 총회에 이르는 권위의 계통이 존재한다.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직원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비록 교인들로부터 선출된 직분이라 할지라도 직분자들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지역교회는 노회와 총회에 총대를 파견함으로 권위를 위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많은 교회의 공통된 유익과 관련된 이러한 상회의 결정사항에 함께 따라야 할 책임을 가진다.

미국개혁교회의 통치가 각 기관들 내의 직분자들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각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양한 임무를 맡아 수행함으로써 그 온전한 사역을 표현한다. 각 기관은 성경에 대한 신실한 복종과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심 가운데 그 사역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각 교인은, 능력, 성별, 인종, 민족, 피부색 혹은 계층에 관계 없이, 세례를 통하여 사역을 부여받으며, 온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사역의 평등성 (The Equality of the Ministry). 미국개혁교회는 사역자들이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동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권위가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권위는 적절한 기구에 의해 위임되며, 그 필요성이 없어질 때는 그 권위의 행사도 중지된다. 이러한 평등성의 원리는 교회간에, 장로간에, 또 집사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역의 평등성의 원리는 모든 성직 혹은 목회적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수렴된다는 사실에 그 기초를 둔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만이 그 직분을 소유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장로와 집사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목회적인 직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탁월한 형태로 발견된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직무들을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섬김의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위임하며 포용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교회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축소시키거나 능력, 성별, 인종, 민족, 피부색 혹은 계층으로 인해 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대한 기여도를 축소시키려는 그 어떤 종류의 편견, 행동, 정책, 절차를 개혁하도록 부름 받았다.

역사적 기록 (*A Historical Note*)

미국개혁교회 (RCA) 는 전세계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교단이다. RCA는 네덜란드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의 개혁교회에 그 직접적인 뿌리를 둔다. 이러한 교회들은 16세기 카톨릭 교회를 향한 종교개혁의 움직임으로부터 태동되었다. 이런 개혁은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혁명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개혁을 추구해 왔다. RCA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증거하는 일에 강조점을 둔 교회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RCA는 신실하고 잘 정리된 신학을 존중하며, 선교사역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왔다. RCA는 모든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과의 연합을 기뻐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 공유하는 믿음의 유산 또한 존중한다.

네덜란드개혁교회 (the Netherlands Reformed Church) 는 1566년에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그 해 앤트워프 (Antwerp) 에서 열린 총회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이에 더해 약간의 기본적인 교회 정치조례를 작성하였다. 이 정치조례들은 이어지는 총회들을 통해 개정을 거듭한 후, 1619년 도르트 (Dort) 에서 열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향후 거의 이백년 간 네덜란드에서 사용되었다. 네덜란드 예배모범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71년 엠던 (Emden) 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요약서 (Compendium) 는 1608년에 작성되었다. 도르트 신경은 1619년에 도르트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들어졌다.

위에서 언급된 세 개의 교리적 선언들은 벨하 고백서 (아래 참조) 와 함께 오늘날 미국개혁교회의 표준 (Standards) 을 이룬다. 네덜란드 예배모범은 미국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1619년에 채택된 교회 정치조례는 1792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법규들을 미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설명조항 (Explanatory Articles)" 이 첨부되었다. 1833년 정치조례와 설명조항이 하나의 문서로 합쳐짐으로 적절한 정관으로 정리되었다. 그 후 헌법 조항들에 대한 일반적인 수정들이 있어왔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1874, 1910-1916, 1958-1959, 1965-1968 에 있었던 수정을 들 수 있다. 현재 교회 정치조례의 수정안은 거의 매해 총회 때마다 다루어지고 있다.

1620년대에 미 대륙에서 화란개혁교회 (the Reformed Dutch Church) 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본 교단은, 1867년에 이르러 미국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America) 로 명명되었다.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장로교회 (Presbyterian)" 라 불리고, 다수의 독일 개혁교회들이 "미합중국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the United States, 후에 그리스도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가 됨)" 가 된 반면, 본 교단은 미국개혁교회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헝가리, 스위스, 이태리, 독일계의 개혁교회들을 끌어 안게 되었다. 미국개혁교회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조직되어 있다. 2010년 벨하 고백서가 표준 교리서로 채택 되었다. 벨하 고백서는 남아프리카화란개혁 선교교회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in South Africa, 이후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 (Uniting Reforemd Church of Southern Africa) 의 일부가 됨) 에 의해 처음 작성되었다.

총회의 법인체 조직
(*Incorporation of the General Synod*)

화란개혁개신교총회 (General Synod of the Reformed Protestant Dutch Church) 의 법인 조직은 1819년 4월 7일, 뉴욕주 주의회에 의해 승인되었고, 미국개혁교회총회 (General Synod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라는 명칭으로의 수정은 1869년 4월 15일 승인된 법률 제 1869호, 197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본 법인체에 6명의 이사 (Director) 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1920년 5월 3일 뉴욕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법률 제 1920호, 451장) 그 내용의 첫 부분 (제 1920 호 1항) 은 다음과 같다.

> 미국개혁교회총회 (전 화란개혁개신교총회) 는 상기 명칭으로 법인체 조직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로써 상기 단체는 모든 형법 및 관습법정에서 법적 고소권 및 피고소권과 항의권 및 피항의권 등 모든 제반 법규정의 권리를 가지며, 공동의 인장을 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입과 판매, 양도 등에 관한 업무는 법에 규정된 조항을 따라야 하며, 종교적이며 자선적인 사용과 목적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9년 총회는 총회행정위원회 (the General Synod Executive Committee) 가 이사회 (the Board of Direction) 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인준했다. 따라서 뉴욕 주의회의 상기 관련 법률은 총 26명의 이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1993년과 1994년 총회는 총회중앙위원회 (the General Synod Council) 가 이사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인준하였다. 따라서 뉴욕 주의회의 상기 관련 법률은 총 62명의 이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

1825년 11월 30일에 뉴저지주 주의회는 본 총회의 뉴저지 주 내에서의 부동산 구입, 판매, 양도권을 승인했다.

1863년 미시간주 주의회는 본 총회가 교육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수여, 구입, 유증, 또는 일반법 및 형평법 상의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하고, 수여받고,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다” 고 승인했다.

총회헌법의 인용
(Citations to the Book of Church Order*)*

출판물에 총회헌법을 인용하는 경우, 다음의 양식을 따를 것을 권한다.

최초 인용: RCA 총회헌법 (*BCO*), __부, __장, __조, __항 ([연도]판, p.__).
[RCA *Book of Church Order* (*BCO*), Chapter__, Part__, Article__, Section__ ([year] edition, p.__).

이후 인용: *BCO*, __부, __장, __조, __항 ([연도]판, p.__).
[*BCO*, Chapter__, Part__, Article__, Section__ ([year] edition, p.__).

제 1 부
정치
CHAPTER 1
THE GOVERNMENT

제 1 장: 컨시스토리
(Part I: The Consistory)

제 1 조: 정의 (Definitions)

1 항: 컨시스토리는 지역교회를 치리하는 기관이다. 컨시스토리의 회원은 청빙을 통해 위임을 받은 그 교회의 목회자(들)와 시무 장로들 및 시무 집사들, 그리고 노회의 인준을 받은 평신도 목회자들로 구성한다 (제 1부 2장 17조 8 항을 보라). 컨시스토리는 영구적이고 지속적 기관으로써, 정기 모임 사이에는 위원회을 통하여 그 기능을 발휘한다. 미조직 교회 (organizing churches)는 컨시스토리 및 장로회와 유사한 기능을 감당하는 노회 지정 치리 기관을 갖는다. 양식 15번과 관련해 회원 [=회원 교회]이라 함은 미조직 교회, 지역 교회, 협동 교회를 일컫는다.

a. 교회의 회중 (congregation)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b. 미조직 교회 (organizing church)는 노회가 지정한 치리 기관을 가졌으나, 아직 지역교회로써는 조직되지 않은 회중을 말한다.

c. 지역 교회 (local church)는 적합하게 조직된 회중으로써, 정상적으로 조직된 컨시스토리에 의해 섬김과 다스림을 받는 모임이다.

d. 협동 교회 (Collegiate church)란 두 개 이상의 회중이 하나의 교회 조직을 이루어, 하나의 컨시스토리에 의해 섬김과 다스림을 받는 교회이다.

e. 복합적 교구 (multiple parish)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목회자들이 공동적으로 섬기는 여러 지역교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항: 컨시스토리는 지역교회를 위한 봉사와 감독에 있어 목회자, 장로, 집사의 직분에 부여된 목회적 기능과 치리권을 아울러 가진다. 이들이 함께 모임으로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목회자(들)와 함께 장로회를 구성하며 해당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집사들은 집사회를 구성하여 해당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 항: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개혁교회가 세우거나 확인한 규칙에 따라 안수를 통해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들로 취임된 남녀 사역자들이다.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들은 사역자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써 평등한 권위를 가진다. 목회자들은 미국개혁교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취임되거나 위임된 목회

직분을 포기한 자와 정직 및 면직된 자는 그 목회직을 행사할 수 없다.

4 항: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직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a. 한 회중을 섬기는 목회자는 그 회중의 목사 (pastor)와 교사 (teacher)로서 온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한다. 목회자는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컨시스토리의 권위 아래서 성례를 집행하고, 장로, 집사 및 교인들과 함께 책임을 공유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호간의 성장을 도모하고, 장로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치리를 행사하며, 교회의 모든 일이 합당하고 질서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목사와 교사로서 목회자는 회중 가운데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 회중과 자신 모두가 함께 세상을 위한 교회의 섬김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b. 특수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맡겨진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와 교사로 섬기며, 그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전체 교회와 함께 세상 속에서 교회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특수사역의 목회자는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필요한 경우 노회의 지도하에 성례를 집행한다. 또한 이러한 목회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 그들과 자신 모두가 함께 세상을 위한 교회의 섬김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c. 교회 내에서의 목회자의 적당한 칭호는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사, 교사, 교수, 선교사, 군목, 학장, 사무총장, 디렉터 등.

5 항: 장로는 지역교회의 정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개혁교회가 정하거나 인준한 방법에 의해 안수를 받아 임직한 이들이다.

6 항: 장로직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다. 지역교회에서 장로들은 영적 분별력, 모범적인 삶, 자비로운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진 자들 가운데서 선택된다. 장로들은 청빙을 받아 임직된 목회자와 함께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감독해야 한다. 장로들은 청빙을 받아 임직된 목회자 및 (필요한 경우라면) 평신도 목회자와 함께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감독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믿음의 가정을 돌보고, 영적인 성장을 권하고, 사랑으로 치리하며,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의식을 제공한다. 그들은 교인들의 행위를 감독하여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하며, 그렇게 함으로 모든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감당하도록 한다. 장로들은 다른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행위를 감독한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내용이 성경에 부합한지를 살핀다. 또한 그들은 적절한 상담과 심방을 조력함으로 목회자(들)를 돕는다. 그들은 교회의 성례가 오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장로는 장로회가 허락하는 경우 성례식을 집행할 수도 있다.

7 항: 집사는 지역교회의 정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미국개혁교회가 정하거나 인준한 방법에 의해 안수를 받아 임직한 이들이다.

8 항: 집사직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다. 지역교회에 있어서 집사들은 영적 헌신, 모범적인 삶, 자비로운 성품,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구제, 봉사, 및 전도의 직무를 위해 구분된 이들이다. 이들은 교인들의 헌금을 수집하며, 컨시스토리의 지도하에 지출한다. 집사들은 교회의 자선 프로그램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모든 헌금을 관리하며, 적절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심방하여 위로하며, 그 이외에 컨시스토리가 맡기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9 항: 한 교회의 확대 컨시스토리 (great consistory) 는 그 교회의 컨시스토리에서 현재 시무중이거나 과거에 시무했던 모든 장로와 집사들로 구성된다. 확대 컨시스토리는 교회의 안녕과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컨시스토리의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다만 확대 컨시스토리 회원은 자문의 역할만을 감당한다.

제 2 조: 컨시스토리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Consistory)

1 항: 컨시스토리는, 그 소속 노회 및 선교 파트너들과 협의하는 가운데, 교회 사역의 본질과 범위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지역사회와 세계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컨시스토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부르신 사명에 대한 회중의 신실함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들을 세우거나 인준할 수 있다. 단 이때 한 교회의 컨시스토리가 다른 교회의 컨시스토리나 노회, 또는 대회와 총회가 가진 특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항: 컨시스토리는 따로 장로회나 집사회에 특별히 맡겨진 것들 이외에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들을 처리한다.

3 항: 컨시스토리는 교회를 위해 목회자 (혹은 목회자들)를 공급해야 한다. 교회의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컨시스토리가 목회자를 청빙할 권위를 가진다. 컨시스토리는 누구를 청빙할 것인가와 관련해 교인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일과 관련해 회중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되,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청빙의 방법은 컨시스토리 회원들의 사인을 담은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록 양식 5번,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에 대한 청빙 참조) 그 청빙서가 노회의 승인과 청빙 받은 목회자로부터의 수락을 받게 되면, 그 목회자의 이름을 연속 3주간 교회 주보에 공고하도록 한다. 이는 그 기간 동안 합법적인 반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직중인 교회의 경우에는 노회가 3주간 연속 공고의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 아무런 반대가 없으면, 노회 혹은 그 담당 위원회가 예배모범 (Liturgy)에 기록된 취임 예식을 따라 그 목회자의 취임식을 진행할 것이다.

4 항: 컨시스토리는 총회에 의해 미국개혁교회와의 완전한 교류를 나누는 교단으로 선언된 타교단의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다. 노회는 예배모범에 기록된 취임 예식을 따라 그 목회자의 취임식을 진행할 것이다. 단 그 목회자는 목회자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고 (부록 양식 3번,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 선언서 참조), 청빙에 따른 사역 기간 동안 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5 항: 컨시스토리는 한 명 이상의 부목회자 (associate minister)를 둘 수 있다. 부목회자를 청빙하는 형식은 담임 목회자의 경우와 같다. 다만 청빙을 위한 모든 문서에 있어 목사 혹은 목회자라는 단어 앞에 '부(副)'를 붙여야 한다. 부목회자는 컨시스토리의 회원이 된다. ("보조목회자 (assistant minister)"에 대해서는 제 1부 1장 2조 8항을 참조하라.)

6 항: 컨시스토리가 한 명 이상의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각각의 목회자에게 따로 청빙서를 보내야 한다.

7 항: 컨시스토리는 청빙 또는 계약에 의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에게 청빙서류(부록 양식 5번)에 포함된 대로 은퇴와 의료 보험 관련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단 (a) 목회자가 후생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회를 파트 타임으로 섬기고 컨시스토리가 상기 요구 조건에서 제외될만한 정당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노회가 결정한 경우, 혹은 (b) 목회자가 후생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트 타임 이하로 사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항: 컨시스토리는 청빙에 의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더불어 한 명 이상의 보조목회자 (assistant minister)를 둘 수 있다. 보조목회자를 위한 계약은 노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보조목회자가 노회에 의해 계약직 목사로 임명받을 수는 있으나, 그 계약의 성격상 교회나 컨시스토리의 회원이 될 수는 없다.

9 항: 컨시스토리나 목회자는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 종결을 위한 청원을 노회에 올릴 수 있다. (제 1부 2장 15조 8항 참조) 컨시스토리나 평신도 목회자는 평신도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 종결을 위한 청원을 노회에 올리 수 있다.

10 항: 컨시스토리는 교인들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위해 교회의 삶에 예배 및 기타 활동, 그리고 조직을 제공할 것이다.

11 항: 컨시스토리는 예배를 관장함에 있어 다음 요건들을 따라야 한다.

a. 주일예배의 순서는 컨시스토리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지도하되, 미국개혁교회의 예배모범과 지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b. 가능하다면, 공예배 시간을 통해 세례식을 집례해야 한다. 이 때 예배모범에 기록된 "세례 예식"을 낭독해야 한다.

c. 가능하다면, 성찬식은 각 교회에서 일년에 적어도 매 3개월마다 거행되어야 한다. 이 때 예배모범에 기록된 "성찬 예식"이나 특별한 경우를 위해 총회의 승인을 받은 예식서를 낭독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 중 주의 성찬을 받을 자격이 되는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여를 권해야 한다.

d. 공예배에 사용하는 찬송은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 일반적으로는,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 회중과 계약 관계에 있는 평신도 목회자, 회중과 계약 관계에 있는 설교 장로, 혹은 총회헌법 제 1부 2장 7조 7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목회자 후보생이 설교를 할 수 있다.

    1. 콘시스토리나 운영기관은 그 성품과 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타 교단 목회자에서 설교를 부탁하는 초청장을 발행할 수 있다.

    2. 콘시스토리나 운영기관은 그 성품과 교리에 대해 잘 모르는 타 교단 목회자에 대해서는 먼저 최근 사역지 정보와 강도권에 대한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 이후에 설교를 부탁하는 초청장의 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컨시스토리나 운영기관은 때때로 혹은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할 수도 있다.

f.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하 신앙고백에 실린 교리들은 목회자에 의해 주일 공예배 시간에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 4 년 마다 전체 요리문답에 대한 강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2 항: 컨시스토리는 질병이나 그 밖의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개인적인

성례식을 베풀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한 명의 장로가 동참해야 한다. 장로가 개인적인 성례를 집행할 때에도 최소 다른 한 명의 장로가 동참해야 한다.

13 항: 컨시스토리는 교회의 재산과 재정관계를 감독하여야 한다. 교회 법인체 정관 혹은 교회가 법인체로 등록된 주 법이 따로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컨시스토리가 그 교회 재산과 관련해 이사회가 된다. 컨시스토리는 그 교회의 예배 및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과 목회자 사택이 위치한 부동산을 그 교회가 회원으로 소속된 노회의 허락 없이 팔거나, 물려주거나, 임대하거나, 담보 잡히거나, 양도하거나, 저당잡힐 수 없다. 나아가, 콘시스토리는 노회의 허락 없이는 총회에 보고된 지난해 교회 총지출의 3분의 2가 넘는 빚을 져서도 안된다.

14 항: 컨시스토리는 교회의 장로와 집사 선출을 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들을 따라야 한다.

a. 장로와 집사는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는 정교인 중 만 21세 이상에서 선출한다. 단 컨시스토리의 판단에 의하여 18세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장로, 집사의 선출은 교회 정교인들의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b. 장로, 집사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의 광고는 투표일 이전 두 주일 동안 교회의 공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되어져야 한다. 부득히 공고된 시간에 선거를 치르지 못한 경우, 컨시스토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로 다른 날짜를 정할 수 있다. 이 때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가 되어져야 한다.

c. 조직된 교회의 장로, 집사의 선출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1. 컨시스토리가 피선거인을 두 배로 공천하여 선거하는 방법.

    2. 교회의 정교인들이 피선거인 전체 수를 결정하여 공천하는 방법. 이 때 컨시스토리나 교회의 다른 대표로부터 공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3. 교회 인가서 (charter) 의 규정을 따르는 방법.

    4. 교회 내규 (bylaw) 의 규정을 따르는 방법. 단,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d. 교회에 의해 선택된 선거방법은 노회의 허가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e. 장로와 집사의 임기는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그 기간은 컨시스토리 판단에 따른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 컨시스토리의 요청에 의해 노회는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f.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만을 섬길 직분자를 선출하여 세울 수 있다. 또는 다음 번 장로와 집사의 선거 때까지 컨시스토리가 확대 컨시스토리의 회원 가운데 충원할 이를 임명하여 세울 수 있다. (이 때 이전 장로는 장로의 직으로, 집사는 집사의 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g. 컨시스토리의 전체 회원이 교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장로와 집사의 전체 숫자 가운데 일부를 선출하여 교체할 것이다.

h. 컨시스토리가 더 커질 경우, 추가 되어야 할 장로 및 집사를 매년 선출할 것이다.

15 항: 장로나 집사로 피택된 사람들의 명단은 임직전 연속 3주간 교회 주보에 공고하도록 한다. 이는 합법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장로회에 제출하여 검토토록 하기 위함이다.

16 항: 장로나 집사는 재선될 수는 있지만, 같은 직분을 위해 다시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휴무 이후 재선출 되었을 경우에만 재취임한다.

17 항: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 컨시스토리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다. 즉, 보편적인 혹은 세계적인 교회 내에서의 사역을 위한 것이었는가, 합법적인 기독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시행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교회 내의 정당한 권위를 가진 해당기관을 통하여 기도를 동반한 안수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18 항: 컨시스토리의 회장과 서기는 세례와 혼인 명부, 정교인의 전입 및 전출 명부, 그리고 사망한 교인의 명부를 면밀하게 기록 보존할 것이다..

19 항: 컨시스토리는 정기 대회와 총회 직전 노회에 보고될 교회의 통계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보고의 내용은 총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컨시스토리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같은 항목들도 첨가되어야 한다.

제 3 조: 컨시스토리의 임원 (Officers of the Consistory)

1 항: 컨시스토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빙을 받아 사역하는 목회자 중 한 명을 그 모든 회의를 주재하는 회장으로 선출할 것이다. 회장의 의무는

다루어야 할 안건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과, 의사 진행 규정들이 준행되도록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합한 예의범절과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2 항: 컨시스토리는 장로 한 명을 부회장으로 선출할 것이다. 만약 청빙을 받아 사역하는 목회자가 한 명 이상일 경우, 부목사(들)를 장로 부회장에 더하여 목사 부회장(들)으로 세울 수 있다.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그 서열을 정할 것이다.

3 항: 컨시스토리는 서기 한 명을 두어, 그 모든 회의록을 성실하게 기록 보존하게 하며, 회의의 결정 사항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공식적인 서면 통보를 하도록 할 것이다.

4 항: 컨시스토리는 그 회원 중 몇 명을 선출하여 컨시스토리의 행정과 인사에 관련된 책임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모임은 컨시스토리의 의사 진행 규정들이 허락하는 한, 전체 컨시스토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1 항: 컨시스토리는 그 회의 진행에 있어 때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채택된 의사 진행 규정을 따를 것이다. 단 이런 규정은 미국개혁교회 헌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로와 집사는 동일한 발언권을 가진다.

2 항: 정기적으로 소집된 컨시스토리 모임의 회의 진행을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이다.

3 항: 모든 컨시스토리 회의에는 성경 봉독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것이다.

4 항: 컨시스토리의 회원은 그 회의의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노회에 상소 (appeal) 혹은 이의신청 (complaint)을 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컨시스토리의 회원은 추후 필요한 경우를 위해 그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진 회원들의 명단을 회의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컨시스토리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통해 거부될 수 있다.

5 항: 정기적으로 소집된 컨시스토리 모임에 그 담임목회자가 사회를 보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컨시스토리는 같은 노회에 소속된 다른 목회자를 초청하여 사회를 보도록 할 수 있다.

6 항: 컨시스토리의 회장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회원 중 세 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특별 컨시스토리를 소집할 수 있다.

7 항: 컨시스토리는 노회가 요청할 시에 그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장로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of Elders)

1 항: 장로회는 주어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어도 일년에 네 차례의 정기 모임을 가질 것이다. 정기적으로 소집된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목회자가 모든 회의를 인도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것이다. 회의록은 기록 보관 되어야 하며, 적어도 1 년에 한 번은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항: 장로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서 교회의 회원된 교인들을 감독해야 한다.

a. 장로회는 공적 신앙고백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검토할 것이다. 장로회만이 개인을 교인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과 타교회로 전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장로회는 유아세례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적어도 그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 중 한 명은 본 교회의 정교인이어야 한다. 부모 혹은 후견인 중 한 명이 본 교회의 정교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아세례 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 부모 혹은 후견인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의 치리기관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b. 장로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교회의 정교인으로 받을 것이다. 즉 장로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 이전의 신앙고백을 재확인한 자, 또는 다른 기독 교회로부터의 정당한 이명 증서를 가져온 자이다.

c. 장로회는 교회의 정교인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것이며, 또한 교인명부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d. 장로회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이 참작되지 않는 한, 일 년간 교회생활을 중지하였거나, 일년 간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정교인에서 비활동교인 명부로 옮겨야 한다. 장로회는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한 후, 다음 일년 동안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장로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제명할 것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 장로회는 사역이 미칠수 없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교인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는 이명증서를 발부받을 것을 권해야 한다.

f. 장로회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정교인이나 노회원이 선교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자격을 얻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g. 장로회는 다음과 같은 교인들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할 것이다: 다른 교회로 전출된 이, 이명증서가 없이 다른 교회에 등록한 이, 교회의 치리에 의하여 교인 자격이 상실된 이, 오래도록 비활동교인으로 있는 이, 사망한 이, 그리고 강도권이 있는 목회자 후보생이 다른 교회의 목사로 위임되는 경우.

3 항: 장로회는 정기 모임마다 다음의 경우에 처한 교인들은 없는지 살필 것이다.

a. 영적인 상태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

b. 은혜의 방편인 예배출석과 성례식 참여에 성실하지 못하여, 기독교적인 사역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4 항: 장로회는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를 치리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장로회에 의한 행정적 지도와 치리를 받아야 한다. 장로회는 치리가 필요한 이들을 권면하거나 책망하고, 또 필요할 때는 성찬에 참여할 특권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회개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장로회의 특권이다.

5 항: 장로회는 이러한 치리의 절차에 있어 권징조례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에 기록된 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집사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of Deacons)

1 항: 집사회는 시무중인 집사들로 구성된다. 집사의 수는 교회가 그 필요에 따라, 그리고 구제, 봉사, 전도의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분명한 은사에 따라 정할 것이다.

2 항: 집사회는 고통 당하는 이들과 빈곤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 집사들은 병든 이, 가난한 이, 상처받은 이,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돌보며,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입은 이들을 돕고,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집사들은 인류의 구속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독하며 수행해야 한다. 집사들의 임무의 초점은 세상과 교회를 위한 봉사와 사역에 맞추어져 있다.

3 항: 집사회는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이는 정기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기록 보관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소집된 회의의 안건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이며,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것이다. 집사회는 회중의 자선헌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 사역 전반을 컨시스토리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통합 교회 (Union Churches)

1 항: 노회의 승인에 의하여, 한 교회는 하나 이상의 다른 개혁주의 교단의 교회들과 합하여 통합 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2 항: 통합 교회의 통합 계획은 아래의 최소 요구 사항을 따를 것이다:

a. 통합 계획은 관련된 각 교단의 헌법을 따를 것이다. 교단들의 헌법이 다를 경우, 한 교단의 필수 조항은 다른 교단에서 허용 가능한 경우 모두 적용된다. 필수 조항들이 상충될 경우, 교회의 운영 기구는 상위 운영 기구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해야 한다.

b. 통합 계획은 교회 내 정식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각 회중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각 교회가 속한 노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운영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 계획의 어떤 조항도 미국 개혁 교회의 헌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c. 상회비는 총 정교인 수 또는 연합 교회의 수입 비율을 기준으로 관할 노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운영 기구에 제출될 것이며, 관련된 교단들 간에 동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제 8 조: 연합 교회 (Federated Churches)

1 항: 미국개혁교회에 속한 한 교회는 하나 이상의 다른 비개혁주의 교단의 교회들과 합하여 연합 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연합교회는 각 개교회가 본래의 법인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의 종교 법인체를 이룰 것이다.

2 항: 노회는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연합을 이루는 교회들은 각각 다른 교회가 속한 치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다. 노회는 연합 교회의 법인체 인가서와 내규에 다음의 조항들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a. 종교 법인체로서 개혁교회의 계속적인 존속.

b. 연합 교회 내에 개혁교회의 종교 법인체 이사회로서의 역할을 할 단체 구성.

c. 미국개혁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는 공통의 교리, 예전, 정치에 대한 합의.

d. 교단들의 헌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의무적 조항을 가진 법의 항목이 허용적 조항을 가진 법의 항목에 우선할 것에 대한 합의. 의무적 조항들이 서로 상치될 경우에는, 연합 교회의 운영기관이 직속 상회에 청원서를 올려, 그 상회로 하여금 각각 그 최고 법정에 헌의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할 것.

e. 연합 교회가 목회자(들)를 청빙할 때 각 교회가 속한 어느 교단 출신이던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역자로 할 수 있는 자유.

f. 각 목회자는 자신이 본래 속한 한 교단의 치리를 받지만, 동시에 다른 교단의 교리, 예전, 정치, 권징에 대해서도 존중할 것에 대한 합의.

g. 어느 교단이 교회의 치리의 문제와 성례의 집례를 관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

3 항: 운영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이 선택한 한 교단의 헌법 조항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하나의 치리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른 교단이 같은 건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항: 장로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관) 의 법적 결정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접수하는 교인(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치리기관에만 할 것이요, 추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소들 또한 최초에 상소를 접수한 교단의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 법정에서 이루어진 최종 결정이 장로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관) 와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5 항: 연합 교회의 해제는 두 번의 공동의회에서 각각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각 교단 상위 기관들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두 번의 공동의회 사이에는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연합 교회의 해체 시, 본래 각 교회에 속해 있던 재산은 해당 교단으로 복귀될 것이다. 연합 이후에 획득된 동산과 부동산은 연합 때에 서로 간에 설정된 방식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제 9 조: 다교단 교회 (Affiliated Churches)

1항: 컨시스토리 또는 치리회는 회중과 노회의 승인을 얻어 미국개혁교회와 강단 교류가 허락된 타교단에 동시 가입할 수 있다.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교회의

컨시스토리 또는 치리회는 여전히 미국개혁교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상회에 총대를 파송할 책임이 포함된다. 노회에 상회비를 상납할 책임 또한 노회에 의해 달리 승인을 받지 않은 한 타교단에 가입되어도 축소되지 않는다.

2항: 미국개혁교회와 강단 교류가 허락된 타교단 교회의 치리회는 그 회중과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노회 및 그 교회가 속한 현재 교단의 허락을 받아 미국개혁교회의 노회에 가입할 수 있다.

a. 가입된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 총대는 노회 참석권을 가진다. 이들에 대해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노회가 노회 차원에서의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노회보다 상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b. 가입된 교회가 파송하는 장로 총대의 숫자는 제 1부, 제 2장,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c. 가입된 교회의 상회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교회와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노회 사이에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d. 가입된 교회의 목회자는 소속 교단의 치리에 복종할 책임이 있다.

e. 미국개혁교회에 가입하는 타교단 교회는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소속 교단의 통치를 받는다.

제 2 장: 노 회
(Part II: The Classis)

제 1 조: 노회의 정의 (Classis Defined)

노회는 그 등록된 모든 목사들과 노회의 인준을 받아 위임되어 섬기고 있는 평신도 목회자들 및 그 지역 경계 내의 모든 지역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총대들로 구성된 기관이자 치리회이다. 노회는 영구적이며 항속적인 기관으로, 정기 노회 회의들 사이에는 위원회들을 통해 활동한다. 투표권은 장로 총대 및 노회의 관할이나 허가를 받아 시무중인 등록된 목사들, 그리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 위임되어 섬기고 있는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국한된다.

제 2 조: 노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Classis)

1 항: 노회는, 그 소속 교회들 및 선교 파트너들과 협의하는 가운데, 그 지역 경계 내에서의 사역의 본질과 범위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노회가 사역하는 세계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노회는 교회의 사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직체들을 구성할 수 있다. 단 이때 그러한 조직들이 다른 노회나 컨시스토리, 또는 대회와 총회가 가진 특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노회의 사역은 그 지역 경계 내에 존재하는 인종-민족적,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항: 노회는 그 등록된 목사들과 평신도 목회자들 및 지역 경계 내 교회들의 관심사와 염려들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미국개혁교회의 정치조례 준수를 요구할 것이다.

3 항: 노회는 개교회의 장로회나 컨시스토리의 활동과 회의와 결의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문제와 치리에 관한 문제 모두가 포함된다.

4 항: 노회는 교회를 조직하거나, 해체하거나, 해산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교회의 연합을 조직하거나 해체할 수도 있다.

5 항: 노회는 지역교회를 다른 교단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때 그 동산과 부동산의 전체 혹은 일부를 함께 보낼 수 있다.

6 항: 노회는 개교회가 그 관할에 소속되기를 원할 때,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다.

7 항: 노회는 그 관할 노회에 소속된 모든 목회 후보생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을 행사한다.

8 항: 노회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훈련 과정 전체와 강도권 면허 수여 이전까지의 시험을 관장한다. 노회는 평신도 목회자 후보생들의 훈련 과정 전체 및/또는 위임 이전까지의 시험을 관장한다.

9 항: 노회는 목회자의 안수, 취임, 위임, 전출입, 정직, 면직을 주관하며, 사직, 휴직, 및 은퇴를 공표한다.

10 항: 노회는 목회자의 청원과 계약에 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교회 또는 회중과 목회자의 관계 설정과 결별을 시행한다. 노회는 평신도 목회자의 계약에 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교회 또는 회중과 평신도 목회자 사이의 관계 설정과 결별을 시행한다.

11 항: 노회는 미국개혁교회의 정치조례 (the Government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에 따라 다른 치리기관에 특별히 위임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교회를 위한 기능을 감당한다.

제 3 조: 장로 총대 (Elder Delegates)

1 항:

a. 한 교회는 네 명 이상의 장로 총대를 세울 수 없다. 삼백 명 이하의 정교인을 가진 교회는 한 명의 장로 총대를 세운다. 정교인수가 삼백 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 삼백 명 마다 한 명씩의 장로 총대를 추가로 세우되, 그 추가되는 최대 인원은 세 명까지이다.

b. 위임 목사가 없는거나 노회에 의해 평신도 목회자가 컨시스토리의 수퍼바이저나 의장으로 임명 받은 교회도 한 명의 장로 총대를 세울 수 있으나, 위 a 항목에서 밝힌 장로 총대에게 할당된 수에서는 제외된다.

c. 협동교회 (collegiate church) 는 소속된 각 교회로부터 적어도 한 명의 장로 총대를 세운다.

2 항: 복합적 교구 (multiple parish) 에 속한 교회는 돌아가면서 한 명 이상의 장로 총대를 추가로 세워, 그 목회자 총대와 장로 총대의 숫자의 합이 교구에 속한 교회의숫자에 적어도 두 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항: 노회에 파송되는 장로 총대는 한 교회의 전체 장로들 중에서 선출되며, 따라서 현재 장로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4 항: 장로 총대는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시점으로부터 노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임기의 종료나 다음 장로 총대 후계자의 선출 혹은 임명까지는 노회원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총대의 임기 중 그가 대표하는 개교회에서 정교인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 노회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중지될 것이다.

제 4 조: 노회의 회의 (Sessions of Classis)

1 항: 정기 노회는 노회가 정한 시간에 따라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모여야 한다. 모든 노회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것이다. 매 정기 노회에는 설교 또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두 가지 모두 있어도 된다. 성원을 위해서는 (a) 장로 총대의 과반수 이상과 (b) 노회의 관할 아래에서 시무 중인 평신도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항: 노회장은 특별한 회무가 있을 때나, 노회원2인과 장로 총대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특별 회의의 소집은 적어도 10일 전에 모든 노회원과 장로 총대들에게 연락되어야 하며, 이 때 회무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별 회무의 목적에서 밝힌 회무를 다루기 위한 정속수는 노회원 3인과 장로 총대 3인의 참석이면 된다.

제 5 조: 노회의 임원 (Officers of Classis)

1 항: 노회장은 노회의 모든 회의들을 주재한다. 노회장의 의무는 다루어야 할 안건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과, 의사 진행 규정들이 준행되도록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합한 예의범절과 품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2 항: 노회는 서기 한 명을 두어, 그 모든 회의록을 성실하게 기록 보존하게 하며, 노회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공식적인 서면 통보를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서기는 노회 및 그 하위 기관의 모든 회의록, 해체된 교회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그리고 노회의 서류 일체를 교단의 서류 보관서로 송부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업무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1 항: 노회는 그 회의 진행에 있어 때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채택된 의사 진행 규정을 따를 것이다. 단 이런 규정은 미국개혁교회 헌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州)법이 허락한다면, 노회는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2 항: 노회의 회원은 그 노회의 어떠한 판정이나 결정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상소 혹은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노회의 회원은 추후 필요한 경우를 위해 그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진 다른 노회원들의 명단을 회의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노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통해 거부될 수 있다.

3 항: 오직 정식으로 인증 받은 노회의 총대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항: 총회헌법이 다르게 기록하지 않는 한, 노회의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원은 해당 노회의 노회원이거나 노회에 속한 교회 또는 회중의 정교인이어야 한다.

5 항: 회의 석상에서 노회의 감독하에 있는 목회 보조자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질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제 7 조: 지역교회 및 미조직 교회의 감독 (Superintendence of the Local and Organizing Churches)

1 항: 노회는 해마다 그 노회원 및 장로 총대들에게 아래의 질문들을 제시함으로 개교회의 사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 답변은 상회의 보고용으로 준비된 노회 회의록에 기록될 것이다.

a.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교리들이
   i.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ii.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에 부합되는가?

b. 여러분의 교회에서 총회헌법 제1부 1장 2조 11f항이 요구하는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하 신앙고백에 담긴 교리의 조항들이 설명되고 있는가?

c. 여러분의 교회는 벨하고백서, 하이델버그 요리문답, 도르트신경, 그리고 벨직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바를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d. 여러분의 컨시스토리나 치리 기관은 총회헌법 제 1부 1장 2조 1항에 따라 교회 사역의 본질과 범위를 검토하였는가?

e. 여러분의 회중은 복음을 성실히 전파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기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성령께 반응하기를 격려하고 있는가?

f. 여러분의 회중은 미국개혁교회의 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통하여 해마다 그리고 충분하게 기여하고 있는가?

g. 여러분의 컨시스토리나 치리 기관은 총회헌법 제 1부 1장 2조 11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예배와 성찬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h. 여러분의 컨시스토리나 치리 기관은 교회와 교회가 섬기는 이들이 주 예수의 제자된 삶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i.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 진리에 근거한 젊은이 교육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j. 컨시스토리나 치리 기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인들 - 특히 젊은이들 - 가운데서, 영적은사를 가진 이, 그 중에서도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이를 가려내고, 그 은사를 개발하도록 격려하며,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는가?

k. 장로회는 총회헌법 제 1부 1장 5조에 기록된 감독과 권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l. 집사회는 총회헌법 제 1부 1장 6조에 기록된 구제, 봉사, 그리고 전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m. 컨시스토리나 치리 기관은 목회자(들) 및/또는 평신도 목회자(들)와 함께 회중의 목회적 요구와 어려움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호 검토하는가?

n. 목회자(들) 및/또는 평신도 목회자(들)가 받는 사례, 사택보조, 전문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 및 다른 일체의 혜택들이 본래의 청빙이나 계약 및 후속 수정안, 그리고 노회의 최저 기준에 부합 되는가?

2 항: 노회는 한 교회의 위임 받은 목회자가 질병이나 안식년, 또는 기타 사유로 두 달 이상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교회 내 목회적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필요한 지도의견을 제공할 것이다.

3 항: 노회는 위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컨시스토리의 모든 회의들을 감독할 목회자 또는 장로 한 명을 지명할 것이다. 만일 감독자로 지명되는 목회자 또는 장로가 다른 노회의 노회원이면 노회는 그러한 지명이 있기 이전에소속 노회와 협의를 할 것이다. 노회는 그 감독자의 적절한 교육과정 및 임무들을 결정해야 한다.

4 항: 노회는 위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요구나 승인이 있을 경우, 그 소속 목사들이나, 다른 노회 혹은 다른 인준 교단의 목회자들 중 한 명을 그 교회의 계약직 목회자로 세울 수 있다. 이 때 그 기간은 1년 이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만기 이후 노회의 적절한 심리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계약직 목회자는 목회적 의무를 감당하고, 합의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노회가 요청할 시에는 필요한 보고를 해야할 것이다.

5 항: 노회는 그 소속 목회자들 중 한명이 계약직 목회자가 된 경우, 그가 그 교회의 감독자로도 임명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직 목회자는 컨시스토리의 요청을 받아 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못한다.

6 항: 노회는 개교회의 요구나 승인이 있을 경우, 한 위임 목회자에서 다음 위임 목회자가 세워지는 과도기 동안 특별한 임시목회자를 세울 수 있다. 이 때 위 4항과 5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임시목회자는 총회 혹은 총회가 인준한 기관으로부터 목회 적합 판정을 받은 이어야 한다.

7 항: 노회는 위임 목회자나 계약직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노회고시준비증명 과정에 등록된 후보생을 세워 그가 감당할 자격이 있는 섬김의 직무를 맡길 수 있다. 이러한 지명이 있기전, 그 후보생은 본인의 노회고시준비증명 과정을 감독하는 총회 대행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항: 콘시스토리나 치리기관은 노회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목회자나, 강도권 있는 목사 후보생이나, 노회고시준비증명 과정에 있는 후보생과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노회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허락을 노회장과 노회 서기로부터 받을 수 있다.

9 항: 컨시스토리나 치리 기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목회자(들)와 한 지역의 장소나 강단에서 자신들의 지도하에 공적 예배를 인도하거나, 혹은 위임 목회자를 돕게 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노회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정식 청빙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만 노회는 그 모든 계약들을 해마다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 사역하는 목회자는 노회원으로 가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0 항: 두 개 이상의 교회가 한 명의 목회자를 청빙하여 공동으로 섬기게 하고자 할 때는 노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이러한 관계의 승인은 그 목회자의 안수가 총회헌법 제 1부 2장 14조 1항에서 밝힌 요건들에 부합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 관계는 노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다. 타 교단 출신의 목회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본 교단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경우, 같은 조건 하에 그의 출신 교단이 본 교단 출신 목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것이다.

제 8 조: 교회의 창립 (Organizing a Church)

1 항: 총회헌법 제 1부 2장 2조 4항에 따라, 노회는 새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정기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함에 있어 노회는 그 소속 컨시스토리들과 상의할 수 있다. 나아가, 노회는 새로운 교회 설립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항: 노회는 새로운 교회의 업무를 담당할 과도기적 치리 기관을 구성할 것이다. 컨시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이 치리 기관은 주 법률과 총회헌법의 규정들을 따를 것이다.

a. 노회에 의해 치리 기관이 지정되면, 총회헌법 제 1부 1 장 1 조 1b 항에 정의된 대로 그 회중은 "미조직 교회 (organizing church)"가 된다. 노회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때에, 치리 기관의 후임자들을 지정한다.

b. 미조직 교회의 치리 기관을 지정할 때 노회는 성례의 집전을 감독하고, 교인의 등록을 주관할 장로들을 공급할 것이다.

c. 치리 기관은 하나의 미조직 교회가 지역 교회로 조직되기까지는, 노회의 권한 하에서 그 교회의 교인자격을 관리할 것이다.

3항: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 평신도 목사, 설교 장로를 포함하여 미조직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개인은 노회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하며, 총회헌법에 제시된 대로 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때 임용된 각 사람에게 노회가 승인한 서면 계약서를 줄 것이다. 노회는 이 임용 계약서를 해마다 검토해야 한다.

4항: 미조직 교회가 지역 교회가 되기를 청원할 때, 노회는 아래와 같이 할 것이다.

a. 교회의 치리 기관이 제출한 대로 교인명부를 승인한다.

b. 컨시스토리 선정과 후임자 선출 과정을 승인한다.

c. 부록 양식 15번에 있는 규정이 그 교회의 조직관련 서류에 포함되도록 결정한다.

d. 지역 교회 창립 예배에서 위임될 목회자나 평신도 목사에 대한 청빙을 한다.

5항: 지역 교회 창립 예배의 일시와 장소, 장로와 집사의 안수나 취임, 목사의

취임이나 평신도 목사의 위임 등에 대한 공고는 그 미자립 교회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두 번 이상은 되어져야 할 것이다.

a. 장로와 집사의 안수는 공예배 시에 시행하되, 승인된 예배의식을 사용할 것이다.

b. 취임 후 모이는 첫 컨시스토리 회의에서, 새로 조직된 교회의 초임 장로와 집사들은 제비를 뽑아 각 직분자들의 시무 기간을 정하여 총회헌법 제1 부 1 장 2 조 14g 항에 부합되게 할 것이다.

6항: 한 노회가 그 지리적 경계가 아닌 지역에서 미조직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노회는 사역을 시작하려는 지역 노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회란 "그 지역 경계 내의 모든 교회"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제 1부 2장 1조), 일반적으로 미조직 교회는 첫 예배 일시부터 10년 내의 기간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노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회중의 최상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두 노회와 그 소속 대회(들)의 협의 및 양 노회의 승인 투표를 통해 그 회중은 다른 노회로 이전될 수 있다.

제 9 조: 컨시스토리의 권한 대행 (Superseding a Consistory)

1 항: 노회는 어느 교회가 노회가 정의하는 바 지역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조건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컨시스토리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그러한 조건은 다음 중 적어도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a. 매 주일 정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

b. 치리 기관이 3개월 동안 교회의 헌법, 내규, 또는 운영 법칙이 요구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모임을 못가지게 된 경우.

c. 교회의 치리기관이 없을 때.

d. 대출상환불가 혹은 또 다른 이유로 교회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e. 교회 재정의 부적절한 사용을 포함한 재정적인 변칙이나 부적절함이 있을 때.

f. 교회 건물의 관리를 태만히 할 때.

g. 조직 교회로써의 목적과 책임을 감당할 정교인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할 때.

h. 교인수나 출석자수가 장기간 혹은 급작스럽게 줄어들때.

i. 적절한 목회 활동을 제공할 능력이 없을때.

j. 컨시스토리가 권한 대행을 요청할 때.

2 항: 한 컨시스토리의 권한을 대행하기 전, 노회는 이 의도를 컨시스토리와 (필요한 경우라면) 목회자들에게 알리고, 컨시스토리를 소환해서, 왜 컨시스토리가 해산되지 않은 채로 교회와 교회 자산만을 노회의 지도와 감독 하에 두어야 하는지를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해당 컨시스토리가 권한 대행을 요청한 것이라면, 컨시스토리는 해산되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대신 이 안건에 대한 노회의 승인을 권할 수 있다.

3 항: 제 1부 2장 9조 2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제 1부 2장 9조 1항의 조건과 관련하여 노회가 컨시스토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근거.

b. 권한 대행의 활동이 목회적 관계의 종결을 야기할 것이라는 통보.

c. 컨시스토리의 권한 대행을 논의할 노회 모임의 시간과 날짜와 장소.

d. 컨시스토리가 그 노회 모임에 반드시 출석하여 해산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설명하라는 진술.

4 항: 컨시스토리의 답변을 들은 뒤, 노회는 컨시스토리 권한 대행을 수행할 수 있다. 권한 대행 결정을 위해서는 정기 노회나 임시 노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의 득표로 통과되어야 하며, 이 때 성수 인원은 정기 노회 개회 성수에 필요한 인원이 되어야 한다. 권한 대행 결정과 함께 혹은 그 이후에 노회는 교회가 위치한 주 법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결의할 수 있다:

a. 컨시스토리나 교회 내 다른 기관이 교회 재산의 이사회로 활동하는 권한의 종결.

b. 노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재산의 보호, 유지, 관리, 소유권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사회를 임명함으로써 교회를 지도.

5 항:

a. 컨시스토리의 권한 대행이 이루어지면 컨시스토리는 해산될 것이고 교회 내의 모든 목회적 관계 또한 종결된 것이다. 노회는 교회와 그 사역과 재산을 노회의 직접적인 운영 하에 두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취할 것이다.

b. 노회는 콘시스토리 대신 교회의 행정에 필요한 대로 컨시스토리나 장로회나 집사회의 기능을 행사할 사람들을 지명할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해당교회의 교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들은 그 교회가 완전히 해산되거나 교회의 컨시스토리가 재구성될 때까지 컨시스토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게 된다. 권한 대행 기구는 노회의 추가적인 행위 없이 제 1부 1장 2, 5, 6항에 명시된 임무들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권한 대행 기구는 제 1부 1장 4조의 요구사항을 따를 것이다. 노회는 권한 대행 기구에게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자동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6 항: 노회는 그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거나 적당한 안정을 되찾아 노회의 행정지도 없이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 교회의 컨시스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때 노회는 컨시스토리 선출과 관련된 절차를 지도할 것이다 (제 1부 1장 2조 14항). 컨시스토리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정기 노회나 임시 노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의 득표로 통과되어야 하며, 이 때 성수 인원은 정기 노회 개회 성수에 필요한 인원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교회 해산 또는 이전 (Disbanding or Transferring a Church)

1 항: 한 교회가 해산되거나, 그 컨시스토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법인체가 해산될 때, 그 동산과 부동산은 그때로부터 즉시 그 교회의 관할권을 가진 노회로 귀속된다. 이 때 그 교회가 위치한 주의 법이 금하지 않는 한, 노회는 그 교회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 만약 노회가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면, 그 동산과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부동산의 인수가 가능한 다음 상위 기관에 귀속되며, 그 교회의 모든 채무 또한 해당 기관에 의해 인수된다. 단 채무 인수의 범위는 그 재산의 평가액에 제한된다.

2 항: 만약 어떤 컨시스토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법인체가 해산이 되면, 그 해산 과정의 일부로서, 노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대해 빠짐없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a. 해당 교회 모든 건물의 판매, 이전, 혹은 다른 처분에 대하여.

b. 모든 금융 자산의 노회 이전, 그리고 노회가 해당 교회와 그 교회 내의 모든 기관의 금융 부채 전부를 그 재산의 평가액의 한도 내에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c. 모든 교회의 공식 기록과, 다른 모든 기록과 보유 문서들을 노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d. 교인의 전출 혹은 다른 처분의 과정에 대한 결정 이후, 해당 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의 소속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3 항: 노회는 다음 조항들이 충족되는 경우, 한 교회를 그 동산과 부동산의 전부 혹은 일부와 함께 다른 교단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a. 그 교회가 현재의 관계로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때.

b. 그 교회가 다른 교단에 가입했을 경우에 지역 교회로서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c. 그 교회가 가입 하려는 교단으로부터 그 교단의 관할하에서 해당 교회가 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해당 교회가 그 교단으로 이전된다면 교단 내 다른 교회들이 가지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제약 없이 가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4 항: 타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본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교회는 컨시스토리 이름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해당 교회가 본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기 원한다는 진술과, 해당될 경우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또한 미국개혁교회 및 그 산하의 어떠한 기관 (assembly) 이나 이사회 (board) 나 대행기관 (agency) 의 권리 주장 없이 함께 이전 되어지기 원한다는 진술 등을 기록될 것이다.

a. 이러한 탈퇴 청원은 즉시로 노회나 그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나 사법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b. 상기 위원회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컨시스토리, 그리고 그 교회가 가입하고자 하는 교단의 대표들과 차례로 만날 것이다. 위원회는 그 요청서에 기록된 모든 사항들의 기본적인 내용과 형편을 확인하기에 힘쓰며, 교회 내부에 그리고 교회와 본 교단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에 힘쓰고, 탈퇴의 유익 및 손해, 그리고 교회와 교단의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며, 이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지 파악할 수 있기를 힘써야 한다.

c. 위원회는 다음 형식을 따라 열린 회의를 통하여 교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먼저 특별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공고는 연속 두 주일 동안 예배 광고 시간에 강단에서 되어질 것이며, 회의의 일시와 장소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공고는 회의 일시로부터 적어도 10일 전부터는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공고의 사본이 적어도 회의 일시 10일 전에는 교회의 모든 정교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2. 이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평상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적당한 시간에 모일 것이다.

3. 장로와 집사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 정교인들만 투표의 자격을 갖는다. 대리투표는 허락되지 않는다.

4. 문제를 둘러싼 모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후에 사회자는 토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 후에 교회 탈퇴의 문제를 비밀투표로 결정할 것이다. 계수 위원은 찬성표와 반대표, 그리고 기권 및 무효표들을 정확하게 계수하여 발표해야 한다. 이후 회장과 서기는 이러한 숫자를 회의석상에서 확인할 것이다. 확인 발표시에는 투표가 가능한 전체 교인의 수와 그 중 해당 회의에 출석한 교인수도 같이 발표해야 한다.

5. 모든 투표용지와 계수위원들의 사인이 담긴 투표결과서, 또한 소집공고의 사본과 교회 내 구두광고 및 우편발송에 대한 확인서, 그리고 투표 결과에 대한 확인서가 인편으로나 등기우편으로 노회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내져야 한다.

d. 상기 위원회는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로 그간의 결과와 건의안을 담은 보고서를 노회 서기에게 올릴 것이다. 그 보고서는 노회 서기에게 접수된지 60 일내로 정기 노회, 혹은 임시 노회에 보고 되어야 한다.

e. 위에 언급된 기간 제한은 위원회와 컨시스토리의 협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f. 만약 노회가 해당 교회가 교단으로부터 탈퇴하는 것과, 그 동산과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또한 교단 및 그 산하의 어떠한 기관 (assembly) 이나 이사회 (board) 나 대행기관 (agency) 의 권리 주장 없이 함께 이전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최선의 유익이 된다고 결정하였을 경우,

노회는 이 결정을 공표하고 해당 교회의 컨시스토리가 (1) 교회와 교단과의 결별문제와 (2) 교회의 모든 자산이 다른 교단으로 이전되는 문제를 즉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g. 만약 해당 교회의 교단 탈퇴를 노회가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개교회는 첫 청원의 승인 거부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h. 교단 탈퇴 청원에 관한 노회의 결정에 대해 교회 혹은 불만을 가진 어떤 종류의 단체라도 상회인 대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대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총회로 올릴 수 있다. 총회의 결정과 정한 기간 이내에 상소를 올리지 않은 하위 치리단체의 결정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위한 최종적이며 구속력있는 결정이 된다.

5 항: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단의 소유권은 다음의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완전히 양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a. 해당 교회는 교단 및 그 산하의 어떠한 기관 (assembly) 이나 이사회 (board) 나 대행기관 (agency) 으로부터 그 전에 융자한 금액, 또는 상환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다 갚아야 한다. 단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면제되었거나 타협된 경우는 제외된다.

b. 해당 교회는 교단 및 그 산하의 어떠한 기관 (assembly) 이나 이사회 (board) 나 대행기관 (agency) 이 2차적 혹은 우발적 부채나, 교회가 납부하기로 보증한 금액 등을 떠맡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교단 탈퇴 청원이 노회로부터 승인된 날짜로 지불기한이 되어있든 아니든 간에, 누적된 모든 상회비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RCA 은퇴제도가 요구하는 모든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d. 교단에 그대로 남기를 원하는 해당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는 6 개월분 이상의 퇴직금과 주택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그 목회자는 상기 기간 동안 다른 교회나 교단의 기관으로부터, 혹은 다른 직업으로부터 사례와 주택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e. 해당 교회는 더 이상 본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항: 그 어떤 경우에도 교단으로부터 탈퇴한 교회의 재산이나 그 판매 수익은

그 교회의 개 교인들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재산으로 인해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거나, 재산이나 그 판매 수익이 교회와 관련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교회의 교단 탈퇴 청원이 노회에 의해 승인된 이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교회가 해산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 또는 그러한 재산의 판매 수익은 탈퇴를 처리한 노회에게로 양도, 이전 혹은 인도될 것이다.

7 항: 노회는 한 회중을 미국개혁교회의 지역 교회로 받아들이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먼저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살필 것이다.

a. 그 회중이 미국개혁교회의 정치조례가 정한 규정대로 한 지역 교회로서 조직되고 기능할 뿐 아니라, 교단 헌법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b. 그 회중이 타교단 소속인 경우라면 이전 교단의 관할에서 탈퇴하기 위해 그 교단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조건들을 충족시켰는가.

c. 그 회중이 미국개혁교회의 지역 교회가 되었을 때 그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같은 노회 내 다른 교회들로부터도 그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d. 그 회중이 부록 15번 양식에 기본적으로 제시된 조항을 포함하는 조직관련 서류를 체택하였는가.

제 11 조: 목회 후보생의 감독 (Supervision of Candidates for Ministry)

1 항: 미국개혁교회에 속한 교회의 정교인으로서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목회자 후보생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서는 후보생이 속한 교회의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제출될 것이다.

2 항: 컨시스토리의 추천을 받으면, 그 지원자는 노회 혹은 노회 산하 위원회 앞에서 직접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노회나 위원회는 지원자의 성품과 품행, 그 신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 교육적 자질들, 그리고 목회의 소명을 갖게 된 동기 등을 철저히 살필 것이다. 이러한 시험에 노회가 만족할 경우, 그 지원자는 목회 후보생으로 등록이 되며 노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

3 항: 한 개인이 노회의 목회자 후보생으로 가입하게 되면, 즉시 노회는 노회서기를 통해 총회에 그 후보생을 대신하여 노회고시준비증명서 (Certificate of Readiness for Examination)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청원은 총회내 대행기관

(RCA 산하 신학교의 이사회 혹은 목회자격증명기관 [Ministerial Formation Certificate Agency]) 을 통해 총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적어도 24개월 전에는 접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구되는 24 개월의 기간 이전에 신학교육이 마쳐지는 경우, 노회는 후보생이 총회의 대행기관의 지도하에 사역하는 기간으로 하여금 그 24개월 전체 또는 일부 기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총회의 적절한 담당 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그 담당 기관은 다음 번 열리는 총회에 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4 항: 목회자 후보생은 신학교 재학 기간 동안 노회의 감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장로회를 통한 권징의 대상이 된다. 노회는 각 목회자 후보생을 위하여 위원회를 지명함으로써, 후보생의 학업과 목회 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5 항: 한 목회자 후보생이 다른 노회 산하의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회의 후보생으로 등록될 것이다. 그러나 신학교 공부를 다 마쳤을 때, 그 후보생은 자신이 신학교 입학시에 속해 있던 교회의 노회를 통해 강도권 인허 및 안수를 위한 노회고시를 치러야 한다. 단 상기한 본래 노회의 판단에 의해 그 후보생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회를 통해 강도권 인허 및 안수를 위한 노회고시를 치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후보생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회를 통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양측 노회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하다.

6 항: 목회자 후보생이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 노회는 후보생이 다음 분야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1) 목회에 적합한 성품과 말씀과 성례의 사역에 대한 소명, (2) 성경, 교회사, 신학 및 미국개혁교회 헌법에 대한 이해, (3) 성경 본문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헬라어와 히브리어 실력을 포함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 (4) 목회적 역량, (5) 교회의 연합과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역 및 복음 선포에 대한 헌신.

7 항: 목회자 후보생이 노회고시준비증명서를 받은 이후 노회는 후보생의 강도권 인허 및 안수를 위해 후보생이 다음 분야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1) 미국개혁교회의 헌법 (교리적 표준, 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범) 에 능통하며 헌신하는지, (2) 교리적으로 건전한지, (3) 성례에 대한 이해와 그 집전에 있어 건전한지, 그리고 (4) 개혁교회 역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이 있는지.

8 항: 노회는 목회자 후보생의 안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진보가 있을 때, 총회의 적절한 대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매년 임시 강도 허가를 후보생에게 부여할 수 있다. 후보생으로서의 준비 기간의 마지막 해에 주어지는 임시 강도 허가증은 후보생이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된다.

9 항: 후보생은 정규 신학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목회학석사 (M.Div) 학위나 학문적으로 그에 준하는 학위를 받게 될 것이다.

제 12 조: 노회고시준비증명서 (Certificates of Readiness for Examination)

1 항: 미국개혁교회 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학교 출신 후보생들

미국개혁교회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학교에서 취득한 목회학석사 (M.Div.) 학위는 노회고시준비증명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부 2장 11조 7 항에서 밝힌 바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로서의 자격에 필요한 과목들의 이수가 포함된 이와 같은 학위를 취득한 것이 성적표를 통해 확인된 목회자 후보생에게 강도권 인허와 안수를 위한 노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항: 미국개혁교회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신학교 출신 후보생들

a. 규정된 신학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여, 미국개혁교회와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는 신학교로부터 1부 2장 11조 7항에서 밝힌 바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로서의 자격에 필요한 과목들이 포함된 목회학 석사 (M.Div.) 학위나, 혹은 그와 동등한 학위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은MFCA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로부터 노회고시 준비 증명서를 받게 될 것이다.

b. 이 일을 위해 총회는 MFCA의 이사회를 통하여 신학 공부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지원자가 준비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나 목회자 양성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석사 학위, 지원자의 신학교 성적 증명서, 이 일을 신청하는 노회산하 개 교회로부터의 정 교인임을 확증하는 증명서 등이다.

3항: 신학 기관들 사이의 이명

만일 목회자 후보생이 총회 산하의 다른 신학 기관으로의 이명을 원할 시, 후보생의 소속 노회가 후보생을 대신하여 관련된 양 기관에 이를 알릴 것이다. 후보생의 추가적인 감독이나 시험은 후보생이 등록되어 있던 이전 신학 기관에 의해 혹은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4항: 규정에 준하는 대체 방법들

한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 과정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목회자 후보생이 나이의 문제나 필요한 학문적 준비의 결여, 또는 그 이외의 적합한 사유들로 인해

노회고시준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이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a. 지원자가 제시한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회는 노회고시준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요건들 가운데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방법에 대한 허가 신청을 적당한 총회의 대행기관 (RCA 신학교의 이사회나 목회자격증명기관) 에 하여야 한다.

b. 총회 대행기관은 그 지원자가 왜 노회고시준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가와 관련해 노회가 제출한 이유들을 자세히 살필 것이다. 그 이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은 충족되지 못한 요건들을 대신할 대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만일 상기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행기관은 거절의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지원자가 대행기관에 의해 제시된 대체 방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 대행기관은 그것으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c. 담당 대행기관은 다음 번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5 항: 대체 인준 과정 (The Approved Alternate Route)

신학교협의회 (ATS) 나 그에 준하는 신학교 평가 기준을 가진 인증기관이라고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이 정한 단체에 의해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M.Div) 학위나 그에 준하는 학위를 받지 못한 후보생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되었을 때 노회고시준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a. 컨시스토리가 한 개인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하고, 노회는 그 후보자의 소명과 은사와 경험이 말씀과 성례의 사역에 필요한 기준들에 충분하다는 것을 평가할 것이다.

b. 이 때 노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살펴야 한다: (1) 후보자가 최소한 5년의 목회 경험을 통해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추어 왔는가; (2) 후보자가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위한 소명, 은사, 경험의 증거들을 보였는가; 그리고 (3) 후보자가 정말로 어쩔수 없는 실제적 이유로 인해, 인가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마치지 못했는가.

c. 등록이 허락되는 경우, 노회는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과 함께 후보자가노회고시준비증명서를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d. 등록이 허락되는 경우, 노회는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과 함께 후보자가 노회고시준비증명서를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e. 후보생이 그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을 통해노회고시준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평가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f. 후보생이시험을통과하였을때,목회자격증명기관은노회고시준비증명서를 발부할 것이다.

제 13 조: 강도권 인허와 안수의 감독 (Supervision of Licensure and Ordination)

1 항: 강도권 인허와 안수를 위한 노회의 고시가 끝난 다음, 후보생은 "강도권 인허 목회자 후보생 선언서 (Declaration for Licensed Candidates)" (부록 양식 1번) 에 서명한 후,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면허증서를 받게 된다. 그 면허증서에는 고시를 치른 노회의 노회장과 서기가 서명을 하고, 5년 동안 유효하며, 필요시 노회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이 면허는 언제든지 지원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노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2 항: 강도권 인허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은 여전히 자신이 고시를 치룬 노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것이다. 후보생은 노회가 정해주는 교회를 방문하여 거기서 설교할 수 있다. 그러한 노회의 지도가 없는 경우, 후보생은 초청을 받은 어느 교회에서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성찬의 집례는 할 수 없다.

3 항: 강도권 인허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은 교단 내의 어떠한 종류의 기관이나 치리회이든지 목회자 총대로서는 참석할 수는 없으나, 장로 총대로서 참석할 수는 있다.

4 항: 강도권 인허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은 교회의 청빙이나 아래의 조건 모두에 부합하는 사역지의 초청을 받아 수락한 이후에만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a.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신학 교육 받은 사람이 필요한 사역지인 경우.

b. 미국개혁교회에 속한 노회의 치리 하에 있거나 그 허가를 받은 사역지인 경우.

c. 세상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세상 속에서의 섬김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의도로 세워진 사역지인 경우.

5 항: 노회는 그 후보생의 목사 안수를 위한 일시를 정할 것이다. 목사 안수식은 노회 고시를 치룬 후 적어도 10 일이 지나야만 한다. 안수식은 노회에 의해 정기 노회 혹은 특별 노회 기간 동안에 집행되며, 합당한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안수식에 맞는 설교가 선포되어야 하며, 예배모범에 기록된 안수 예식을 따라 서약과 권면, 목사직의 설명, 그리고 안수기도의 순서를 가질 것이다. 노회장과 노회 서기가 서명한 목사 안수증 (부록 양식 4번) 을 전달할 것이며, 이렇게 안수를 받은 목사는 노회원으로 등록될 것이다.

6 항: 강도권 인허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이 본인의 교회가 속한 노회가 아닌 다른 노회로부터 안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강도권 인허 목회자 후보생으로서의 전출을 요구하는 이명서 (양식 17번)를 요청할 것이다. 그 후보생이 노회 내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후보생이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 선언서 (Declaration for Licensed Candidates)에 서명함으로 이명 노회에 가입된 후, 전입을 받은 노회는 전출한 노회에 통보해야 한다.

7 항: 그 후보생이 청빙을 받을 교회가 속한 노회는 교회의 청빙을 허락하기 이전에 그 재량에 따라 후보생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

제 14 조: 타교단의 목회자나 강도권 인허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영입 (Reception of Ministers and Licensed Candidates from Other Denominations)

1 항: 노회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타교단에서 받은 안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다: 보편적인 교회 (the catholic or universal church) 내에서 사역을 위한 안수였는가; 안수식이 기독교회 내의 합법적 조직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조직 내에서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 기도와 안수를 받았는가.

2 항: 노회는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에 위배되는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 교단으로부터 강도권을 인허 받은 자나 목회자가 된 자를 허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기 개인들이 서면을 통해 분명하고 완전하게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에 위배되는 그러한 교리들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3 항: 다른 교단으로부터 강도권을 인허 받은 자나 목회자가 된 자가 노회 가입을 신청 할 때, 노회는 미국개혁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준하는 교육 조건들을 갖춘 지원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다. 지원자는 노회 앞에서 미국개혁교회의 신학, 역사, 정치, 권징조례에 관한 이해에 대해,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에 관한 이해와 지지 여부에 대해, 그리고 교단의 여러 기관들을 향한 헌신에 대해 시험을 치를 것이다.

1.II.14

4 항: 타교단 출신의 안수 받은 목회자가 노회 가입을 청원하는 경우, 그 목회자는 다음의 서류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a. 해당 목회자의 안수여부와 노회 내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현재 소속 노회의 진술서;
b. 목회자의 프로필;
c. 학위 증명서 사본;
d. 신학교 성적 증명서;
e. 지원자의 목회에 대하여 추천을 할 수 있는 5명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f. 미국개혁교회의 역사에 관한 지식, 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지지할 용의, 본 교단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기본 지식과 지지 용의 등을 밝힌 지원자의 진술서.

5항: 타교단 출신의 안수 받은 목회자가 RCA 교회의 목사 후보로 사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a. 미국개혁교회에 속한 교회로부터 목사청빙을 위한 본격적인 후보가 되기 전에, 타교단 소속의 안수 받은 목회자는 개혁교회에 속한 노회의 담당 위원회를 만나야한다. 그러한 모임을 통해 위원회는 해당 목회자가 상기 총회헌법 제 1부 2장 14조 1, 2, 3, 4항에서 밝힌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다. 가부간에 내린 이 위원회의 판단은 해당 지원자의 목회자 프로필에 첨부되어 필요에 따라 배포될 수 있도록 노회 서기를 통해 교단 인사위원회 (the Office of Ministry Services) 로 보내져야 한다.

b. 만일 위원회의 결정이 부정적일 경우, 노회는 소속 목회자 한 두 사람을 위원회에 더하여 지원자가 위원회와의 2차 모임을 준비하도록 도울 것이다. 2차 모임은 첫번 모임 후 적어도 6개월 이후에 가져야 한다. 위원회는 지원자로 하여금 2차 모임에 앞서 여러 주제들에 대한 필요한 공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c. 타교단 소속의 안수 받은 목회자가 개혁교회에 속한 교회의 청빙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와의 만남을 가진 뒤, 위원회가 해당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노회가 다른 노회에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동일한 목적의 후속 모임들은 같은 노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d. 타교단 소속 목회자의 청빙에 대한 승인을 요청받았을 때, 해당 노회는 그 지원자에 대한 시험에 앞서 상기 a, b, c 항에 명시된 대로 지원자의 자격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로부터 지원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6 항: 타교단에서 강도권 인허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은 최대 24개월 동안 본 교단에서 시행하는 사역지도 (supervised ministry) 를 받기 전에는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수 없다. 노회는 교단 신학교의 이사회나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에 그러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그 지도의 기간을 정할 것이다.

제 15 조: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에 대한 감독 (Supervision of 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

1 항: RCA 교회이든지 특수한 사역의 현장이든지, 한 목회자가 섬기는 사역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노회가 그 목회자의 소속 노회가 될 것이며, 따라서 해당 목회자의 취임 (installation) 혹은 위임 (commissioning) 및 감독 (supervision) 의 책임을 가질 것이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만일 어느 목회자가 다른 노회에 속해 있는 두 개 이상의 교회에서 시무하는 경우에는, 그 목사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노회가 그 목회자의 소속 노회가 될 것이다. 해당 목회자는 상기 노회에 속한 교회에서 취임할 것이며, 다른 교회(들)에서는 계약직 목사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 목회자는 계약을 허락한 노회를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b. 만일 어느 목회자가 현재 RCA 노회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 특수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노회가 그 목회자의 소속 노회가 될 것이다.

c. 만일 어느 목회자가 미국이나 캐나다 영토 밖에서 특수 목회를 한다면, 현재 속해 있는 노회가 그 목회자의 소속 노회가 될 것이다.

d. 만일 어느 목회자가 선교사나 특별한 임시목사로, 혹은 군부대나 퇴역장병 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군목이나 원목으로 섬기는 경우, 현재 속해 있는 노회가 그 목회자의 소속 노회가 될 것이다.

e. 만일 어느 목회자가 통합 교회 (united church) 에서 목회를 하는 경우, 그 목회자의 소속 노회는 헌법 제 1부 제 1장 7항 2k 조항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항: 한 목회자의 소속 노회만이 그가 복종할 책임이 있는 노회가 된다.

3 항: 노회는 회원 목회자와 직계 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목회적 돌봄은 노회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그 정당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노회 앞에 보고되어야 한다. 노회는 청빙 혹은 계약에 의하여 RCA 교회 혹은 교단의 기관들 (assembly, institution, or agency) 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교단 청빙 서류 (부록 양식 5번) 에 포함된 은퇴 연금이나 의료보험 규정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목회자가 후생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회 혹은 교단의 기관들 (assembly, institution, or agency) 에서 파트 타임으로 사역을 하며, 컨시스토리나 계약 기관 (assembly, institution, or agency) 이 이 요구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정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노회가 결정한 경우, 혹은 (b) 목회자가 후생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트 타임 이하로 사역하는 경우.

4 항: 노회는 청빙을 받아 섬기는 목회자만을 취임 (install) 시킬 것이다. 노회는 필요한 경우, 계약직 목회자나 특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위임 (commission) 할 수 있다.

a. 모든 목회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의 직분과 관련하여 그들을 감독하는 노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조 15조 2, 6항).

b. 목회자가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이명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가입하는 노회에서 "목회자 선언서 (Declaration for Ministers)" (부록 양식 3번) 에 서명을 해야 한다.

5 항:

a. 노회는 새로 안수를 받은 목회자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교단으로부터 영입된 목회자를 위해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회 소속 목회자 한 명을 지목하여 그들의 배움과 성장에 있어 지도와 상담과 모범을 제공할 것이다. 노회는 멘토를 지명함에 있어 새롭게 안수 받은 목회자와 상담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b. 노회는 해당 노회에 소속되어 섬기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로 하여금 도시, 교외, 지방, 그리고/혹은 부족 집단 거주 지역 등 그들이 멘토로 지정된 곳에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6 항: 한 교회의 목사로 취임한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정교인이 된다. 목사로 취임하여 사역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는 한 교회에 속한 정교인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장로 혹은 집사로 안수를 받아 취임한 경우에는 장로회 혹은 집사회의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 외에는 여전히 소속 노회에 복종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목회자는 노회, 대회 및 총회에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

7 항: 개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가 그 소속 목회자 한 명을 임명하여 청빙 서류 구비와 관련해 그 교회의 컨시스토리를 지도 관리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구비된 이후, 그 교회 컨시스토리는 노회에 청빙을 요청할 것이다. 해당 목회자에게 청빙이 가기 전에 노회의 허락이 먼저 있어야 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목회자는 노회나 해당 위원회에 의하여 목사로 취임하게 되며, 그 절차는 예배 모범에 기록된 취임 예식을 따를 것이다.

8 항: 취임하여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와 개교회 사이에 결별이 논의되어야 하는 경우, 교회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의 목회자 한 명을 컨시스토리 모임에 참석케 하여 그러한 결정의 과정을 지도 관리하게 할 것이다. 그 지도 목회자는 목회관계 결별을 신청함에 있어 증인이 되어 이를 해당 양식과 함께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록 양식 8번) 그러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노회는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시작할 것이다. 만약 목회자나 컨시스토리 중 한 쪽이 그러한 목회관계 결별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사실을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목회자와 컨시스토리 양 쪽 모두가 전체 노회 앞에서 청문회를 가지기 전까지는 목회관계의 결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노회장은 그러한 청문회에 대해 10일 전에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때 노회 지도 목회자의 보고서가 그러한 통지와 노회 회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된다. 목회자와 교회의 결별이 이루어지기 위한 투표에는 노회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9 항: 한 노회 관할 내에서 다른 노회 관할로 옮겨가는 목회자는 현재 소속된 노회에 이명서 (Certificate of Transfer: 양식 9번) 발급을 신청할 것이다. 새로운 노회가 해당 목회자의 영입을 처리하기 이전에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 목회자가 영입된 이후 새 노회는 그 사항을 이전 노회에 통보해야 한다.

10 항: 한 교회의 목회자의 나이가 칠십 세가 되면, 그 교회와의 사역관계는 종료된다. 노회는 적어도 다음 정기 노회 이전에 임시 노회를 열어 해당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관계 종료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노회는 그 교회를 위해 지도 목회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노회로부터 승인된 다른 계약직 관계가 수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칠십 세가 된 목회자라도 계약 (contract) 에 의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 이 때 그 계약 기간은 12개월을 넘어서는 안되며, 계약을 갱신할 때는 컨시스토리와 노회의 인준이 있어야 한다.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위임 (commission) 의 형식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11항:

a. “명예 목회자 (minister emeritus)” 라는 호칭은 영예스러운 직함이며, 호칭을 수여받은 이에게 특별한 의무나 권리나 특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b. 노회의 허락을 얻어서 컨시스토리는 그 교회에서 시무했던 목회자를 명예

목회자로 추대할 수 있다.

12 항: 노회는 강도권 인허 목회자 후보생 선언서 (Declaration for Licensed Candidates) 및 목회자 선언서 (Declaration of Ministers) 들이 명확하게 기록된 서류철을 항구적인 기록을 유지할 것이다. 시험을 치르거나 증명서를 제출함으로 노회 소속의 강도권 인허를 받은 목회자 후보생이 되거나 목회자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노회 앞에서 해당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13 항:

a. 목회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힘으로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그 목회자의 소속 노회에 청원을 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회는 할 수 있는 그 목회적 책임을 다한 뒤, 해당 개인이 목회자의 직분으로부터 사직하였음을 선언할 것이다. 그러한 공적인 선언 후에는 그 이름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할 것이다.

b. 건강상의 이유나, 무능력, 목회 기회의 부족, 혹은 노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여타 이유로 한 목회자가 그 직분을 6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때, 노회는 그 목회자를 비활동 목회자 (inactive minister) 로 선언할 것이다. 만일 목회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목회자가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비활동 목회자로 선언하기 이전에 노회는 먼저 그에게 말씀 선포 및 가르침의 기회와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회는 한 목회자를 비활동 목회자로 선언한 뒤 이를 반년마다 재심사해야 한다. 비활동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의무와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만족할만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거부하고,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힘으로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도 거부할 경우, 노회는 이 사실을 발표하고 목회자직 유기의 혐의 여부에 대한 재판을 통해 정직 (suspension) 혹은 면직 (deposition) 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c. 육십 세가 된 목회자는 노회의 허락에 의해 은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은퇴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의무와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 안수받은 목회자로서의 직분은 유지하며 노회의 지도와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14 항: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직으로부터 사직된 사람은 상기 제 1부 2장 13조 4항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재안수 요청은 사직할 당시 소속되어 있던 노회에 할 것이며, 노회는 그러한 재안수 요청의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재안수 요청을 허락하기로 동의할 시, 그 노회가 시험을 주관한다.

15 항: 타교단에서 제 1부 2장 14조 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안수를 받고, 그 교단의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목회자가, RCA 노회의 허락에 의해 계약직 목회자로, 부목회자로, 노회가 공동 후원하는 특수목회지에서의 사역자로, 구성상 여러교단에 속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중 적어도 한 편은 해당 노회와 관련이 있는 회중의 목회자로, 또는 취임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 해당 노회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음으로써 그 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회자는 그 섬기는 기간 동안 노회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가지지만, 미국개혁교회의 상부 치리회, 회의, 기관, 위원회에 노회 대표로 참여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목회자 회원은 목회자 선언서에 서명하지는 않지만, 그 회원직을 수락함에 있어 노회에 의하여 제시된 임무를 수행할 때 목회자 선언서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며 노회의 권고와 상담을 받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제 16 조: 설교 장로의 위임과 감독 (Commissioning and Supervision of Preaching Elders)

1 항: 컨시스토리나 치리 기관은 노회에 그 교회를 위한 설교 장로를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취임된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 설교 장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컨시스토리는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2 항: 위임받은 설교 장로는 설교의 은사를 가진 미국개혁교회의 안수받은 장로여야 한다. 그 장로가 컨시스토리 회원이 아니며, 취임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정기적인 설교사역을 위해 위임된 경우라면, 그 위임받은 사역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컨시스토리와의 만남을 가질 것이다.

3 항: 노회는 설교 장로로 위임하기 전에 그 후보자에게 필요한 은사, 지식, 기술 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 시험은 다음의 분야들에 대한 학업 계획에 근거해 치러진다: (1) 신약개론과 역사, (2) 구약개론과 역사, (3) 성경주석과 해석, (4) 설교작성과 전달, (5) 조직신학, (6) RCA 교리적 표준. 이러한 학업 계획의 형식과 내용은 노회에 의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 장로가 이러한 학업 또는 그에 준하는 과정을 이미 수료했음을 증명하나 경우 노회가 정한 학업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노회의 시험을 면제할 수는 없다.

4 항: 설교 장로는 최대 2년까지 위임을 받을 수 있다. 그 위임식은 한 장로가 설교 사역의 위임을 받는 교회에서 노회의 대표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위임은 지역교회의 컨시스토리와 노회의 평가 이후에 갱신될 수 있다. 취임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설교 장로가 사역하는 경우,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계속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위임이 갱신될 수 있다. 노회는 정기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위임받은 설교 장로를 감독할 것이다. 노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설교 장로의 위임을 파기하거나 그 갱신을 거부할 것이다.

5 항: 위임된 사항은 오직 설교에 관한 것인데, 설교 장로는 노회가 정한 특정한 장소에서, 지역교회의 컨시스토리와 노회의 감독 하에서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설교 장로는 노회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설교할 수 없으며, 설교 외의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의 직분에 요구되는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는다. 설교 장로는 컨시스토리의 임명에 의해 일반 장로 총대로 섬기거나, 노회의 판단에 의해 투표권 없는 노회의 총대로 섬길 수 있다. 그 설교의 사역에 있어 설교 장로는 위임과 감독의 과정을 통해 노회에 대한 복종의 책임을 갖게 되며, 그 이외의 사항들에 있어서는 모든 장로들이 그러한 것처럼 지역 교회 콘시스토리와의 상호 감독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제 17 조: 평신도 목회자의 위임과 감독 (Commissioning and Supervision of Commissioned Pastors)

1 항: 평신도 목회자는 한 교회 또는 회중의 후원 아래 한 노회 안에서의 특정한 사역을 위해 그 노회에 의해 교육과 위임과 감독을 받는 장로를 말하며, 그 사역은 말씀 설교 및 성례 집전을 포함한다. 그 위임된 사항은 주어진 사역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이다.

2 항: 위임의 준비

a. 한 교회의 컨시스토리나 치리 기관은 개혁교회의 정회원 (confessing member)을 평신도 목회자 후보로 노회에 추천할 수 있다.

b. 후보자를 위한 컨시스토리의 신청이 접수된 후에 노회는 그 사람의 훈련를 위한 계획을 승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노회는 후보자가 다음의 영역들에서 만족할만한 목회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1) 신앙의 성숙성, 2) 개인적인 성실성, 3) 신구약 성경의 이해와 해석, 4) 개혁신학, 5) 교회사, 6) 미국개혁교회의 헌법 (정치, 교리적 표준, 예배모범)에 대한 지식과 헌신, 7) 성례의 의미와 집행, 8) 설교능력, 9) 교회내에서의 사역능력, 10) 목회윤리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헌신.

c. 노회는 후보자의 사역능력이 만족스러운지를 판단함에 있어, 총회중앙위원회 (General Synod Council)에서 만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d. 노회는 해당 노회에 소속되어 섬기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로 하여금 도시,

교외, 지방, 그리고/혹은 부족 집단 거주 지역 등 그들이 멘토로 지정된 곳에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항: 사역에의 청원 확인하기

a. 후보자의 사역능력에 대한 평가에 만족한다면, 노회는 후보자의 은사와 훈련에 적합한 특별한 사역의 분야를 확인해야 한다. 한 지역 교회 또는 회중으로부터 후보자에게 적당한 사역 분야가 청원되고 후보자가 그 사역 청원을 받아들였을 때, 노회는 1) 그 사역을 승인하고, 2) 계약을 인준하며, 3) 후보자를 그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된 사역으로 위임할 것이다. 교회 또는 회중이 노회의 인준 없이 평신도 목회자와의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

b. 한 노회가 한 후보자를 승인된 사역으로의 위임을 인준한 이후에, 그 노회는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위임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이다. 위임 예배에서는 총회가 승인한 예배모범을 사용해야 한다. 평신도 목회자는 위임 의식의 일부로서 노회 앞에서 평신도 목회자를 위한 선언서 (Declaration for Commissioned Pastors, 부록, 양식 16번)를 낭독해야 한다. (1부 2장 15조 12항 참조)

c. 노회는 각 평신도 목회자의 훈련과 사역의 기간 동안 멘토를 지정해 줄 것이다.

4 항: 평신도 목회자

a. 평신도 목회자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노회는 평신도 목회자에게 다음 사항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컨시스토리의 회원으로 섬길 수 있는 권한.

   2. 컨시스토리의 요청에 의해 컨시스토리의 사회자가 되며, 그 컨시스토리의 감독자로 지명될 수 있는 권한.

   3. 장로와 집사의 안수와 취임식의 사회자가 될 수 있는 권한.

   4. 컨시스토리의 승인과 주정부법/지방법의 허락하에 성도의 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

b. 평신도 목회자는 위임된 기간 동안 노회의 회원이 될 것이며, 한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총대는 될 수 없다. 평신도 목회자가 대회나 총회에 장로 총대로 파송될 수는 있다.

c. 노회는 일년에 한번은 평신도 목회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d. 평신도 목회자가 그 승인된 사역을 완수하였을 때, 노회는 그 사람에게 그가 받은 훈련과 감당한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진술서를 전해주어야 한다.

e. 평신도 목회자는 한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 사역기간 동안에는 총회헌법 제 2부 1장 3조에 밝힌 바와 같이 노회의 치리에 온전히 복종할 책임이 있다.

f. 평신도 목회자가 그 치리에 복종할 책임을 가진 노회는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노회뿐이다.

g. 대회의 요청에 의해 노회는 평신도 목회자의 선택, 준비, 위임, 지원, 감독과 관련하여 그 노회가 행한 절차들을 보고서로 제출하여 검토케 할 것이다.

제 18 조: 부목회자의 자격인준과 감독 (Certification and Supervision of Associates in Ministry)

노회는 총회가 인정하는 부목회자의 기준에 합당한 이들을 인준할 책임과, 그들을 감독할 책임을 가질 것이다.

제 19 조: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 (Relation to Regional Synod and General Synod)

1 항: 노회는 노회가 속한 지역 내의 종교 현황에 대하여 매년 대회와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총회가 때때로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통계는 도표의 그러한 통계를 위한 보고의 형태는 때때로 도표를 통해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2 항: 노회는 매년 대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지난 회기 동안에 있었던 강도권 인허 고시 혹은 목사 고시자들의 이름과, 목회자의 전입과 출입에 관한 모든 사항들, 목회관계의 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들, 목회지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들, 지난 대회 모임 이후 그 지역 내에서 사망한 목회자들의 명단 등이다.

3 항: 노회는 대회나 총회에 파송할 총대들을 지명할 것이다.

제 3 장: 대 회
(Part III: The Regional Synod)

제 1 조: 대회의 정의 (Regional Synod Defined)

1 항: 대회란 총회에 의해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각 노회들로부터 파송된 목회자와 장로 총대들로 구성된 기관이자 치리회이다. 투표권은 장로 총대 및 노회의 관할이나 허가를 받아 시무중인 등록된 목사들에게 국한된다.

2 항: 각 대회는 소속된 각각의 노회로부터 파송될 총대의 수와 선택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3 항: 대회는 영구적이며 항속적인 기관으로, 정기 대회 회의들 사이에는 위원회들을 통해 활동한다.

4 항: 하나의 대회는 그 법적 서류들을 위해 특정한 대회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제 2 조: 대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Regional Synod)

1 항: 대회는 그 지역 경계 내 노회들의 관심사와 염려들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행사할 것이다.

2 항: 대회는 그 소속 노회들의 활동과 회의와 결의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다.

3 항: 대회는 해당 노회 및 컨시스토리와의 협의 후 노회를 조직하거나, 합치거나, 해산할 수 있다. 본 항이 요구하는 모든 협의는 각 컨시스토리의 정기 회의나 (*BCO* 1부 1장 4조 2항), 정기 노회 혹은 특별 노회에서 이루어질 것이 며, 이 때 성수 인원은 정기 노회 개회 성수에 필요한 인원이 되어야 한다 (*BCO* 1부 2장 4조 1항).

4 항: 대회는 해당 노회 및 컨시스토리와의 협의 후 소속된 한 노회 내의 교회를 그 지역 경계 내에 있는 다른 노회로 전출시킬 수 있다. 본 항이 요구하는 모든 협의는 각 컨시스토리의 정기 회의나 (*BCO* 1부 1장 4조 2항), 정기 노회 혹은 특별 노회에서 이루어질 것이 며, 이 때 성수 인원은 정기 노회 개회 성수에 필요한 인원이 되어야 한다 (*BCO* 1부 2장 4조 1항).

5 항: 대회는 그 지역 경계 내에서 복음 사역의 진보를 위한 필요한 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단 이때 그러한 기관이 소속 노회나 교회들이 가진 특권들을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

제 3 조: 총 대 (Delegates)

1 항: 대회의 총대는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시점으로부터 대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임기의 종료나 다음 총대 후계자의 선출 혹은 임명까지는 총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 총대의 경우 임기 중 그가 대표하는 노회의 회원권이 박탈되거나, 장로 총대의 경우 그가 속한 교회에서의 정교인 자격이 박탈될 경우, 대회 회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중지될 것이다.

2 항: 대회에 파송되는 장로 총대는 한 교회의 전체 장로들 중에서 선출되며, 따라서 현재 장로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제 4 조: 대회의 회의 (Sessions of Regional Synod)

1 항: 정기 대회는 일년에 한 차례 그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 모든 대회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

2 항: 대회장은 그 지역 경계 내의 각 노회의 목회자 총대 1인과 장로 총대 1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특별 회의의 소집 공고는 적어도 3주 전에 되어야 하며, 이 때 회무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3 항: 대회의 어떤 회의든지 성원을 위해서는 목회자 총대 과반수와 장로 총대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 대회의 임원 (Officers of Regional Synod)

1 항: 대회의 회의들을 주재하기 위하여 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회장의 의무는 다루어야 할 안건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과, 의사 진행 규정들이 준행되도록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합한 예의범절과 품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2 항: 이전 정기 대회 이후에 가진 모든 대회 회의들의 회의록을 사본으로 남겨, 다음 연례 정기 대회 모임에서 감사(監査)할 것이다.

3 항: 대회장은 대회 내의 종교 현황에 관한 보고를 준비하여 연례 대회 정기 모임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는 대회 내 몇몇 노회장들이 제출한 노회 지역 내 종교 현황 보고를 근거로 준비되어야 한다.

4 항: 대회는 서기 한 명을 두어, 그 모든 회의록을 성실하게 기록 보존하게 하며, 대회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공식적인 서면 통보를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서기는 대회 및 그 하위 기관의 모든 회의록을 교단의 서류 보관서로 송부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업무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1 항: 대회는 그 회의 진행에 있어 때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채택된 의사 진행 규정을 따를 것이다. 단 이런 규정은 미국개혁교회 헌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州)법이 허락한다면, 대회는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2 항: 대회의 총대는 그 대회의 어떠한 판정이나 결정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상소 혹은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대회의 총대는 추후 필요한 경우를 위해 그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진 다른 대회 회원들의 명단을 회의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대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통해 거부될 수 있다.

3 항: 오직 정식으로 인증 받은 대회의 총대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항: 대회는 선출 혹은 여타 방법을 통해 치리 업무를 위한 영속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항: 총회헌법이 다르게 기록하지 않는 한, 대회의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원은 대회에 속한 교회의 정교인이어야 한다.

제 7 조: 총회와의 관계 (Relation to the General Synod)

1 항: 대회는 대회가 속한 지역 내의 종교 현황에 대하여 매년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2 항: 총회는 대회가 선교와 사역의 공동 사명을 이루는 일을 도울 수 있다. 단 이 때 대회의 특권을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

3 항: 대회는 총회에 파송할 총대들을 지명할 것이다.

제 4 장: 총 회
(Part IV: The General Synod)

제 1 조: 총회의 정의 (General Synod Defined)

총회는 미국개혁교회 최고의 기관이자 치리회이다. 총회의 총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매 2,000명 마다 목사 1명과 장로 1명씩으로 계산하여 파견된 총대들 (이때 정교인의 계수는 총회 내규 [Bylaws of the General Synod] 를 따른다); 대회에서 파견되는; 본 교단 신학교들 및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에서 선출된 최대 5명의 총회임명교수 총대; 다수의 원목/군목 총대들; 그리고 총회 내규가 정한 준회원 총대들. 투표권은 장로 총대 및 총회 산하 회의의 관할이나 허가를 받아 시무 중인 목회자 총대들에게 국한된다. 총회는 영구적이고 항속적인 기관으로, 정기적인 총회 회의들 사이에는 총회중앙위원회 (General Synod Council) 및 각종 위원회 (commissions), 그리고 대행기관들 (agencies)을 통해 활동한다.

제 2 조: 총회의 임무 (Responsibilities of the General Synod)

1 항: 총회는 소속된 모든 교회들의 관심사와 염려들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행사할 것이다.

2 항: 총회는 하위 회의들의 활동과 회의와 결의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다.

3 항: 총회는 대회를 창설한다. 또한 총회는 각 대회들의 경계선을 재조정하며, 한 대회 소속의 노회나 교회를 다른 대회로 전출시킬 수 있다.

4 항: 총회만이 교단의 정책을 결정한다. 총회는 그러한 정책의 구상을 산하의 위원회나 이사회, 또는 다른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5 항: 총회는 하나님의 왕국 확장에 관계된 모든 사안에서 다른 기독교 교단들의 최고 치리회나 총회들, 또는 초교파적인 기관들과 친밀한 연결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6 항: 총회는 증여 및 유증 등의 방법으로 본 교단 총회에 직접 주어졌거나, 총회의 다양한 비법인체를 위한 기금의 목적으로 주어진 모든 기금과 유증과 기타 재산에 대한 법적 관리인이 된다.

7 항: 총회는 본 교단 소속의 신학교들과 관계되는 교리와 교단의 정책들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8 항: 총회는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 후보생들의 준비에 필요한 교리적 표준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9 항: 총회는 교회가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며, 또 그 선교, 교육, 구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대행기관이나 이사회를 때때로 설립하고, 조직하고, 지도해야 한다.

10 항: 총회는 효과적으로 교단적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교단의 정기 간행물, 그리고 복음을 가장 넓게 퍼트릴 수 방법들을 교회에 추천할 것이다.

11 항: 총회는, 교단 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권위를 유지하면서, 그 치리 하에 있는 이사회나 단체나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법인체를 조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체는 그들이 속해 있는 주(州)의 법을 따름으로, 재산을 수여받거나, 유지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제 3 조: 총 대 (Delegates)

1 항: 총회의 총대는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시점으로부터 총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임기의 종료나 다음 총대 후계자의 선출 혹은 임명까지는 총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 총대의 경우 임기 중 그가 대표하는 노회의 회원권이 박탈되거나, 장로 총대의 경우 그가 속한 교회에서의 정교인 자격이 박탈될 경우, 총회 회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중지될 것이다.

2 항: 총회에 총대로 파송되거나, 총회 산하의 위원회나 이사회 등에서 섬기는 장로는 한 교회의 전체 장로들 중에서 선출되며, 따라서 현재 장로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3 항: 만약 총대로 파송을 받은 이가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해당된 치리회의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기의 연락에 의해, 대리 총대 (alternate delegate) 가 파송을 받을 권리와 책임을 맡게 된다.

4 항: 미국개혁교회 교수회의 총대들은 총회 임명 교수들에 의하여 정해지는 인원으로 선발된다.

5 항: 노회는 소속 선교사 회원 가운데 총회의 회기 중 본국을 방문한 선교사를 총회의 총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 총대는 그 노회의 일반 총대 숫자로 계산되지는 않으며, 5년에 한번 씩만 선교사 총대로 섬길 수 있다.

6 항: 군대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군목으로 활동한 목회자는 그 소속 노회에서 총회의 총대로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군목 총대는 매 5 년마다 한 번씩 총대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렇게 파송된 군목 총대는 그 노회의 일반 총대 숫자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7 항: 총회는 총회 장소까지 왕래하는 모든 교통비를 총회중앙위원회 여행 정책에 따라 제공할 것이다.

제 4 조: 총회의 회무와 회의 (Sessions and Meetings of General Synod)

1 항: 매년 열리는 정기 총회는 그 이전 정기 회의 시 임원회에서 보고하거나 비상 위원회에서 결정된 장소와 기간 동안에 개최된다. 회의는 화상으로 또는 대면으로 개최되되, 최소한 매 3년마다 한 번은 대면으로 열려야 하며, 총회의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것이다.

2 항: 특별 총회는 총회장에 의하여 소집이 되는데, 시기와 장소는 총회장, 부총회장과 교단 총무가 각 대회의 3인의 목회자 총대와 3인의 장로 총대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들은 모두 현재 인준된 총대로서 총회를 섬기고 있어야 한다. 특별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3 주일 전에 총회의 회원들에게 연락되어야 하며, 이 때 회무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3 항: 총회의 어떤 회의든지 성원을 위해서는 목회자 총대 과반수와 장로 총대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4 항: 특별히 공고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정기 총회시 성찬식을 거행할 것이다. 나아가 총회 첫날에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총회 기간 중 매일 아침 모임서도 30분 정도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제 5 조: 총회의 임원 (Officers of the General Synod)

1 항: 총회장은 총대들 가운데서 선출되는데, 다음 정기 총회를 주재하는 일과 총회에서 부여된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총회장에게 부여된 임무는 다루어야 할 안건을 밝히고 설명하는 것과, 의사 진행 규정들이 준행되도록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합한 예의범절과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또한 총회장은 노회들의 종교 현황을 보고하며, 미래의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총회장은 다음 정기 총회가 마칠 때까지 총회의 회원이 된다.

2 항: 총회장 선출후, 총회는 총대들 가운에서 부총회장의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부총회장 역시 다음 정기 총회가 마칠 때까지 총회의 회원이 된다.

3 항: 총회에는 교단 총무 (general secretary) 를 둘 것이다. 그 임무는 매 총회에 참석하여 미래를 위한 제안을 포함한 교회의 비전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과, 총회의 모든 회의록을 성실하게 기록 보존하는 것, 그리고 총회의 법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공식적인 서면통보를 하는 것이다. 또한 총무는 총회 회의록과 기타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들을 교단의 서류 보관서로 송부하며, 총회가 맡긴 다른 임무들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업무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총회는 그 회의 진행에 있어 때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채택된 의사 진행 규정을 따를 것이다. 단 이런 규정은 미국개혁교회 헌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총회는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제 7 조: 총회의 각종 위원회, 이사회 및 대행기관 (Committees, Boards, and Agencies of the General Synod)

1 항: 총회 중앙 위원회 (The General Synod Council)는 총회에 의해 구성되고 총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총회의 행정위원회로서 정기 총회 사이에 일어나는 교단의 업무를 주관하며, 적절한 통로와 대행 기관들을 통해 총회의 결정, 정책, 사업들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개혁교회 산하의 여러 위원회나, 이사회나, 기관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조정함으로써 교단이 그 사명과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케 한다.

2 항: 총회의 기금, 유증 및 기타 자산에 대한 관리는 총회를 대신하여 이사회가 관장하는데, 그 회를 법인체 이사회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라 부를 것이다. 기금 수입이나 이자는 법인체 이사회, 혹은 총회가 수시로 지도하는 행정 기관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로써 교단의 다른 이사회나 위원회들이, 그들에게 직접 주어진 기금, 유증 및 기타 자산을 총회의 일반적 감독 하에 받거나, 관리하거나, 운용할 권리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3 항: 미국개혁교회의 총회와 공식적으로 관련된 모든 위원회, 이사회, 기관등의 규정이나 운영관련 서류는, 그 개정 사항을 포함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항: 대학교들을 제외한, 모든 법인체로 등록된 기관의 회원들은 총회나 총회에 의해 추천된 기관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5 항: 미국개혁교회와 공식적으로 관계된 미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적어도 3명의 이사진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총회 임명 교수의 직위 (The Office of General Synod Professor)

1 항: 총회 임명 교수의 직위는, 단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RCA 내의 교육 사역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사역 후보생들의 준비와 인증에 있어 교단의 살아있는 전통을 대변하는 것이다.

2 항: 활동 중인 모든 총회 임명 교수들은 교수회를 구성한다.

3 항: 총회 임명 교수는 모범적인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로서 신학의 건전함과 인정된 교수능력이 있어야 하며, 교회들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교회와 학문에 대한 인정된 공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개혁교회 목회자가 교단 신학교나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이사회의 권위 하에서 교단의 목사 안수를 위한 후보생을 준비시키는 사역과노회고시준비증명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할 때, 교단 신학교 이사회나 목회자격증명기관 이사회는 그 목사를 총회임명교수 직분의 후보자로 총회에 지명할 수 있다.총회 임명 교수는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4 항: 총회 임명 교수의 선출이 확정될 때, 총회장은 새로 선출된 교수의 취임예배를 인준한다. 취임식에서 총회 임명 교수는 총회 임명 교수의 선서 (Declaration for a General Synod Professor) 에 서명하게 된다 (부록 양식 7번).

5 항: 총회 임명 교수는 교리 문제에 대하여는 오로지 총회에만 복종할 책임이 있으나, 그 임용과 사역에 관하여는 각 신학교 이사회나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이사회에 의해 규정된 모든 법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6 항: 총회 임명 교수는 거주지 노회의 노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교수는 교리 문제에 대하여는 오로지 총회에만 복종할 책임이 있으나, 그 외 모든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는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로서 노회를 따를 것이다.

7 항: 총회 임명 교수의 직분은 교단 신학교나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이사회의 권위 아래 교단 목회자 후보생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이나노회고시준비증명서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계속하는 한, 또한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신학교나 MFCA 에 의해 해임되거나, 총회에서 명예교수로 선포되거나, 또 총회에 의하여 그 직분이 박탈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8 항: 총회 임명 교수가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그 직분을 사임하거나, 교단 신학교나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이사회의 권위 아래 교단 목회자 후보생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이나 노회고시준비증명서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교수는 총회의 선언으로 그 직분에서

면직되거나 총회에서 명예교수로 선포되어야 한다. 해당 노회에 이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9 항: 총회 임명 교수가 총회 혹은 노회의 적법한 절차와 재판을 거쳐, 더 이상 소속 노회의 성실한 목회자 회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나, 총회에 의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총회는 그 교수의 직분을 박탈할 수 있다. 추가적인 권징에 대한 책임은 오직 노회가 가진다. 노회는 그 총회 교수에 대한 권징 내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개혁교회 정치와 권징조례의 규칙 및 수정
(Rules and Amendments of The Government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and Disciplinary Procedures)

1 항: 총회는 정치 (Government), 권징조례 (Disciplinary Procedures), 양식 (Formularies), 그리고 미국개혁교회 예배모범 (Liturgy of the Refomed Church in America) 에 기록된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이 효과적으로 지켜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칙과 규정 (rules and regulations) 을 만들 권한을 가진다.

2 항:

a. 정치, 권징조례, 양식, 예배모범 등에 대한 수정 (amendments) 은 정기 총회 정기 회무(session)에서 채택 (adoption) 된 후, 노회의 승인 (approval) 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b. 제출된 수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3분의 2 이상 되는 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정안이 채택될 당시 총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던 노회들만이 수정안 승인 투표를 할 수 있다.

c. 수정안이 노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 총회는 그 판단에 따라 수정안의 최종 선포에 대한 결의를 다음 정기 회무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총회의 선포 직후, 수정안은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2 부
권징 조례
CHAPTER 2
THE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제 1 장: 권징
(Part I: Discipline)

제 1 조 권징의 의미 (Nature of Discipline)

1 항: 권징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며, 범죄자를 고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함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2 항: 권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기관이나 치리회의 의결에 따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훈계 (admonition), 견책 (rebuke), 교회의 회원이나 직분의 정직 (suspension), 직분의 박탈 (deposition) 또는 출교 (excommunication) 등의 형식을 따랄 수 있다. 훈계나 견책은 그 성격상 목회적이며, 치리회에서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다루어 진다. 다른 모든 권징 즉 정직, 면직, 그리고 출교는 그 성격상 재판을 함의하므로, 치리회에 공식적인 고소장이 제출되어야만 한다.[1] 치리회는 그 재판의 과정에서 권징의 형태로 훈계나 견책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 조: 위법 행위의 의미 (Nature of Offenses)

1 항: 기소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성경이나, 미국개혁교회의 헌법이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한한다.[2]

2 항: 범죄가 몇 사람에게만 알려졌을 경우에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15-17에서 지적한 대로 그 문제를 다룰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절차가 실패하였을 때는 그 사건은 범죄자를 다루게 될 기관에 회부될 것이다.

3 항: 헌법 제 2부 1장 1조 2항이 정한 바에 상관없이, 사안이 중대한 (notorious and scandalous)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관계된 상회나 치리회가 사안을 살피는 동안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 혹은 치리회의 결정에 의해 정직 등과 같은 긴급한 행동이 요구된다.

제 3 조: 권징의 책임 (Responsibilities for Discipline)

1 항: 교인의 권징

모든 지역 교회의 교인들은 장로회에 의해 교회의 돌봄을 받으며 그 통치나 권징 아래 놓이게 된다. 장로회는 교인이 훈계나 견책을 계속하여 무시할 때에는, 공식적 제출과 고소건의 재판으로, 그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장로회는 교인 자격이 정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함이 없을 때는 노회의

승인하에 출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로회는 출교 조치에 대한 결정을 먼저 공개적으로 교회에 공고할 것이며, 출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청문회 후에, 공고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개적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을 손상시키지 않고 교회의 영적인 유익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장로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생략은 장로회의 3분의 2의 투표로 결정한다.[3]

2 항: 장로와 집사의 권징

장로회는 장로나 집사를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 고소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로나 집사는 헌법 제 2부 1장 3조 1항에서 밝힌 다른 권징 등과 더불어 그 직분에서 면직될 수 있다.[4]

3 항: 평신도 목회자 (Commissioned Pastor)에 대한 권징

노회 내에서 위임되어 평신도 목회자로 섬기는 장로들은 오직 노회의 통치와 권징의 대상이 된다. 평신도 목회자는 2부 1장 내의 목회자의 권징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 아래 놓인다.

4 항: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에 대한 권징

a. 목회자는 노회의 관할 하에 있으며 노회의 통치나 권징의 대상이 된다.

b. 한 목회자가 강단에 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notorious or scandalous) 범죄사건으로 고소된 경우, 컨시스토리는 그 목사의 설교를 중단 시킬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컨시시토리의 결정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정 자체를 재판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컨시스토리는 노회에 이 결정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5]

c. 아래에 명시된 단 하나의 예외 조항 이외에, 목회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유일한 치리권은 노회가 가진다. 만일 그 고소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 목사는 직분에서 정직되거나 면직될 수 있고, 또한 교회의 교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출교될 수 있다.[6]

d. 총회 임명 교수로 임직된 목회자에 대한 고소의 경우, 교리에 관계된 고소는 총회에서 먼저 심사 되어야 한다. 이 고소건이 교리에 관한 것이어서 총회 앞에서 청문회를 열어야만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노회는 이 고소건에 대한 검토를 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노회는 총회가 그 사법권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와 관계된 다른 적절한 사법적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추가적인 사법적 조치를 멈추어야 한다. 사법권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일단 총회가 그 사법적 조치를 완료하면, 추가적인 고소건이나 남은 고소건은 노회의 책무에 속한다.

5 항: 총회 임명 교수의 권징

a. 총회 임명 교수는 교수 사역과 목회자 후보생의 목회적격증명 관련 사역에 대해서는 총회에 복종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는 총회의 통치와 권징의 대상이 된다. 총회는 총회 임명 교수에 대한 고소건이 교리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그 치리권을 가진다. 만일 법사위원회 (Commission on Judicial Business)에서 이 건이 교리와 관련이 있고, 또 그 고소건에 타당성이 있음이 결정되면, 총회는 그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교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한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총회는 그 건을 폐지시키거나, 필요하다면, 그 총회 임명 교수가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로서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는 노회에서의 재심사를 위해 반송할 것이다.

b. 총회가 이 고소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게 되면, 부총회장은 참여할 수 없다. 만일 그 고소건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총회 임명 교수는 훈계나 경고를 받거나, 총회 임명 교수 직분에서 파면될 수 있다. 다른 모든 권징은 그 총회 교수가 회원으로 있는 노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c. 만일 총회 교수에 대한 고소건이 사실로 밝혀져서 총회에 의한 권징이 시행되면, 그 교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원 재판의 결정 60일 이내에 차기 정기 총회로 상소할 수 있다.[7] 총회 임원회 (General Synod Executive Committee) 는 그 상소건을 심사할 위원회를 지명하여 총회에 그 권고안을 보고하게 한다. 1차 재판에 참여한 총회 회원들은 상소건의 심사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6 항: 컨시스토리의 권징

컨시스토리는 노회의 돌봄 아래 있으며 그 통치와 권징의 대상이 된다. 노회는 재판을 통하여 그 임무에 불성실하였거나, 노회에 불복종했거나, 미국개혁교회 헌법을 위반했거나, 교단의 법칙과 규율을 범한 이유로 고소를 당한 컨시스토리를 중지시킬 권한이 있다. 만일 컨시스토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 모든 회원들은 노회가 그 자격을 회복시킬 때까지 재선의 자격이 박탈된다. 노회는 새로운 컨시스토리가 법적으로 조직될 때까지 중지된 컨시스토리의 책임을 (장로회와 집사회의 책임을 포함하여) 감당하게 된다.[8]

제 4 조: 고소의 처리절차[9] (Procedure for Bringing a Charge)

1 항: 고소 (charge) 는 해당되는 치리회의 서기에게 범죄의 사건에 대하여 서류로 기소하는 것인데, 그 서류에는 피고인의 성명, 범죄 내용, 시간, 장소, 범죄의 상황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고소장 양식을 위해서는 부록 양식 12번을 참조하라). 치리회의 서기는 접수된 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고소장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10]

2 항: 고소는 해당 치리회에 속한 개인에 의해서도 제출될 수 있다. 개인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의 전체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그 고소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에 의해 그 서명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1]

3 항: 해당되는 치리회에서 지명된 위원회 고소를 제출할 수도 있다.

4 항: 만일 개인에 의해 고소된 안건이라면, 해당되는 치리회에서 임명된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것이 계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합당한 건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치리회에서 지명한 위원회에 의하여 고소가 이루어 졌을 때는 그 위원회가 계속하여 그것이 계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합당한 건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그러한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

a. 고소인, 피고인, 또는 증인들을 인터뷰할 수 있다.

b. 증인의 숫자나 그 신빙성, 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된 범죄가 일어난 시간과 혐의가 제기된 날짜 사이의 시간 등에 대해 숙고할 것이다.

c. 혐의가 있다고 주장된 범죄가 고소일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위원회에 의해 취하될 것이다. 단 위원회가 보다 이른 시기에 고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데, 이 때 그러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보다 이른 시기에 고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가 그러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위원회가 치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그렇게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치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치리회는 그 건을 취하할 것이다.

d. 재판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에는 중재, 고소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및 적절한 처벌에 대한 수용, 혹은 위원회와 피고인가 쌍방간에 동의하는 다른 처분 등을 포함한다. 사직, 정직, 면직, 또는 출교 등의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되는 치리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13]

5 항: 위원회는 그 고소건이 계속 진행될 동안, 관계된 모든 사람의 명예 보호와 치리회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그 모든 일에 비밀을 지켜야 한다.

6 항: 고소건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위원회가 고소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치리회는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고소건을 취하할 수 있다. 이러한 취하는 그 고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된다.[14]

7 항: 위원회의 결정은 치리회에 보고 되어야 한다.[15]

제 5 조: 고소건의 재판 (Trying a Charge) [16]

1 항: 치리회의 서기는 피고인에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치리회 앞에 출두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다. 이 소환장에는 치리회의 회장과 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고소된 개인이나 컨시스토리를 위한 소환장 양식을 위해서는 부록 양식 13번을 참조하라). 소환장과 고소장의 사본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17]

2 항: 피고인은 소환장과 고소장 사본을 접수한 뒤 20일 내로 고소의 건에 대한 서면 회답을 보내야 한다. 피고인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고소장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치리회는 적절한 권징을 행사할 것이다.[18]

3 항: 치리회는 고소인의 회답이 있은 뒤 30일 이내에 사건을 재판하여야 한다. 단, 고소 당사자들과 치리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날짜로 연기할 수 있다.

4 항: 치리회는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적절한 통보가 있어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 판을 진행할 수 있다.

5 항: 치리회의 서기는 피고인 측 혹은 고소인 측 증인으로 요구된 개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하며, 동시에 피고인과 고소인 쌍방에게도 그 증인들의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증언이 근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그 재판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6 항: 고소인, 피고인, 쌍방의 변호인, 증인, 치리회의 서기, 제 2부 1장 4조에 기술된 위원회의 회원이나 또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떠한 심의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19]

7 항: 피고인이 정당한 통지 후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증인들은 피고인의 입회 하에 심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증인들에게 반대 심문할 것이 허락된다. 진술서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20]

8 항: 치리회는 고소인이나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재판정 외의 다른 장소에서 한 쪽 관계자 혹은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명과 그 회원 명단,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모임 10일 이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쌍방은 증인들을 심문할 것이며, 반대 심문의 권리 또한 가진다.[21]

9 항: 판결을 포함한 재판의 내용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기록되어 치리회의 서류로 보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계된 양측은 이 기록을 정당하게 열람할 수 있다.

10 항: 고소의 관계자들이나 치리회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변호인은 미국개혁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정교인이어야 한다. 변호인은 그들의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다.[22]

11 항: 절차상 규정[23]

a. 치리회는 적절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b. 미국개혁교회의 교인이나 단체, 또 그 고소건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상소를 포함하여, 어떤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전에 어떤 종류의 문서화된 주장이나 변론을 배포할 수 없다.

c. 재판을 하기 위한 치리회의 성원은 해당 치리회의 정기 회의의 경우와 같다.

d. 고소인은 증거 제출의 책임을 가진다.

e. 고소(들)는 고도의 개연성 (high degree of probability) 을 가진 증거들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24]

f. 증거의 접수에 대해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어떤 증거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

g.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고소와 관계된 양측과 변호인들, 그리고 치리회 회원들과 그 이외에 치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다.[25]

h. 증거를 심의하는데는 치리회의 회원들만이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치리회의 변호인이 있다면 함께 대동할 수 있다.[26]

12 항: 총회 임명 교수에 대한 고소건의 재판 절차

a. 총회 임명 교수가 성경이나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내용의 고소는 총회 회원에 의해서 총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만일 교수에 대한 고소가 노회 차원에서 제출되었다면, 그 교수나 노회는 해당 고소건에 대한 공청회를 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b. 그 고소건은 총회에서 법사위원회 (Commission on Judicial Business) 로 이송될 것이다. 법사위원회는 이 기소가 전체 총회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 고소건을 계속해서 다루어야 한다면, 총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d. 총회 임원회 (Executive Committee) 는 공청회를 위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 해당 고소의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고소건을 계속할 책임이 있는 고소인 쪽에 있다.

f. 피고인은 고소인 측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의 권리를 가진다.

g. 진술서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적절한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된 증거는 도입될 수 있다. 서면으로 된 증거는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 뿐 아니라 피고인 쪽의 주장도 포함할 수 있다.

h.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전문인 증인들을 초청할 수 있다. 양측은 어떤 전문인 증인에게나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i. 고소건의 승인은 총회의 2/3의 득표로 결정된다. 이러한 투표를 위해서는 투표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j. 총회는 이 결정에 대한 근거를 진술해야 한다.

k. 고소건이 승인되면, 총회는 권징을 부과한다. 권징의 결정은 그 고소건에 대한 승인 결정 이후 적어도 하루의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내려질 것이다.

13 항: 판결

a. 고소(들)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결정을 위해서는 출석자와 투표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b. 치리회는 그 결정과 이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양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항: 항: 권징의 집행

a. 치리회는 그 범죄 사항에 적절하고, 성경 및 미국개혁교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권징을 집행할 것이다.[27]

b. 치리회는 그 결정과 이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양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항: 고소의 건에 대한 결정과 그 권징 사항에 대한 기록은 미국개혁교회의 다른 치리회나 해당 교회 기관의 요구에 따라 열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치리회는 그 판단에 따라 고소의 건에 대한 결정과 그 권징 사항에 대한 기록을 미국개혁교회 내의 치리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28]

제 6 조: 해벌과 복직 (Restoration and Reinstatement)

1 항: 정직이나 출교된 교인은 그 정직이나 출교를 결정한 치리회 앞에서 회개를 표현함으로써 교회의 회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만일 출교의 판결이 공적으로 되어졌다면, 그 복직과 관련한 적절한 공적인 선포가 교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항: 직위가 정직되거나 면직된 사람은 그 정직이나 면직을 결정한 치리회 앞에서 회개와 재선언을 함으로 본래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치리회는 그러한 회복을 통해 직위의 위엄성이 훼손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회복의 결정은 치리회 회의 참석 인원의 2/3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면직 이후의 복직은 그 직위에 대한 재안수를 포함한다.[29]

제 2 장: 이의신청 (Part II: Complaints)

제 1 조: 이의신청의 의미 (Nature of Complaints)

1 항: 이의신청은 어떤 기관이나 그 직원이 내린 판결이나 결정이 미국개혁교회의 헌법이나, 교단의 다른 법규들을 범하였다고 하는 혐의 내용을 서류로 기소하는 것이다.

2 항: 이의신청의 근거는 다음의 경우들을 포함한다: 기관이나 그 직원이 내린 판결이나 결정이 절차상의 문제이든 결과상의 문제이든 교회에 해가 되는 경우, 그리고 특별히 변칙적인 의사 진행 상황이 있는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에 연관되었거나 혹은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 및 단체에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 판결 또는 결정에 있어 선입견이나 편견이 드러난 경우; 불공정이 드러난 경우.

3 항: 이의신청은 한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가진 치리회에만 접수시킬 수 있다.

4 항: 이의신청은 다음의 경우에만 접수시킬 수 있다.

a. 한 명 이상의 성실한 정교인이 그들의 감독기관인 컨시스토리나 장로회를 상대로.

b. 한 명 이상의 회원이 자신이 속한 기관을 상대로.

c. 한 기관이 그 직속 상위 감독기관을 상대로.

5 항: 이의신청 의도의 통보나 이의신청 자체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판결을 보류시키는 효과를 가지지는 못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당한 기관의 회원들 중 문제가 된 판결이 결정될 당시 참여했던 회원 3분의 1이 상위 치리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 판결을 유보하기 원하는 요청을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치리회의 서기에게 제출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서기는 유보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이의신청을 당한 기관의 서기에게 서면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그 서기에게 문제가 된 판결이 결정될 당시 참여했던 회원들의 명단 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2.II.2

제 2 조: 이의신청의 과정 (Process for Complaints)

1 항: 이의신청 의도 통지서가 문제가 된 판결을 내린 기관의 직원이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서의 접수는 내려진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건은 취하될 것이다.

2 항: 이의신청과 그 이유는 이의신청 의도 통지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상위 치리회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이의신청의 건은 취하될 것이며, 상위 치리회의 서기는 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이다.

3 항: 이의신청 서류 사본을 접수한지 20일 이내에 하위 기관의 서기는 상위 치리회의 서기에게 이의신청에 관련된 모든 과정의 원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의신청 의도 통지서 및 이의신청과 관계가 있는 모든 다른 서류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류들이 사건기록 (the record of the case) 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서류들을 받은 뒤, 상위 치리회의 서기는 그 사건기록 및 추후로 그 치리회에 제출되는 모든 문서들의 사본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4 항: 상위 치리회의 서기는 사건기록이 접수된 즉시 사법업무를 다룰 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되,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할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그 회의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및 그 관련 서류들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심사할 것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즉시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20일 이내로 그러한 미비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그 20일의 기간 동안 위원회는 추가로 보충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치리회의 정기회의가 30일이 채 남지 않고 그 이전까지 위원회가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치리회의 서기에서 그러한 판단와 이유를 통보하고 다음 정기회의까지 보고의 연기를 허락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기는 이러한 요청을 즉시 치리회의 임원회와 상의할 것이며, 임원회는 즉시 그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5 항: 만일 그 사건이 규정대로 접수되었다면, 위원회는 그 당위성을 검토해야한다. 만일 이의신청이 너무 사소한 건에 관한 것이거나 진척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라 판단된다면, 위원회는 청문회 없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원회는 그 사건기록과 제출된 추가 논지를 검토하고, 양측과 함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 때 양자에 의해 요청된 변호인이 동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호인은 헌법 제 2부 1장 5조 10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문회는 참석한 양자에게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이의신청자가 직접 혹은 변호인이 대신하여

그 공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그 사건을 결석에 의한 패소로 선언할 수 있다.

6 항: 위원회는 치리회의 정기 회의나 특별 회의 전에 정해진 날짜까지 결정 사항과 제안을 해당되는 치리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사본을 각 당사자들에게도 보내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그 치리회는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치리회는 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거나, 개정하거나, 또는 위원회로 돌려 보낼 수 있다. 치리회는 하위 기관의 판결에 대하여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승인 하거나 뒤집을 수 있으며, 또는 적절한 지도사항과 함께 반송하여 재고토록 할 수 있다.

7 항: 하위 기관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거나 그 사건에 대해 이해의 대립이 있는 사람은 상위 치리회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없다.

8 항: 치리회는 결정과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9 항: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의신청 대상이 미국개혁교회의 헌법이나 교단의 다른 법규들을 범하였거나 규정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증거 우세의 원칙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증명해야 하는 이의신청자에게 있다.[30]

10 항: 미국개혁교회의 교인이나 단체, 또 해당 건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상소를 포함하여, 어떤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전에 어떤 종류의 문서화된 주장이나 변론을 배포할 수 없다.

11 항: 총회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제 3 장: 상소 (Part III: Appeals)

제 1 조: 상소의 의미 (Nature of an Appeal)

1 항: 상소란 하위 치리회가 결정을 내린 이의신청, 고소, 상소의 건을 상위 치리회로 이송하는 것이다. 사건에 결부된 당사자는 누구라도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한 측이 치리회의 판결로 인해 명예 혹은 권리 등이 훼손되었다고 여길 때 행사될 수 있다.

2 항: 판결이 내려진 총회 임명 교수에 대한 고소건 또한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소는 원판결이 내려진 다음 차기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총회 임명 교수와 관련된 상소의 건에 있어서, 본 장 (Part 3)에 기록된 "하위 치리회"는 원판결을 내렸던 총회를, "상위 치리회"는 상소가 접수된 총회를 의미한다.

3 항: 상소의 근거는 다음의 경우들을 포함한다: 하위 치리회의 변칙적인 의사 진행이 있는 경유; 재판에 관계된 어느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부적절한 증거가 채택 되었거나, 적절한 증거 채택이 거부된 경우; 모든 증언을 듣기 이전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의 결정에 있어 선입견이나 편견이 드러난 경우; 판결에 있어 불공정이 드러난 경우.

4 항: 상소 의도의 통보가 있으면 그 상소의 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하위 치리회의 결정은 보류된다. 그러나 상소된 판결의 결과로 직분의 정지나 파면, 또는 출교가 이루어졌다면, 판결을 통보받은 개인은, 하위 치리회의 판단에 의해 예외조건을 두지 않는 한, 그 상소의 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거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

5 항: 장로회에서 시작된 모든 사건에 대한 상소의 최종 법정은 대회 (regional synod)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상소건이 시작된 노회를 제외한 그 대회의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총대가 대회 종료 30일안에 그 상소 건을 총회에 올릴 정당한 이류를 서면으로 대회 서기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 총회는 그 상소를 심리할 수 있다.

제 2 조: 상소의 과정 (Process for Appeals)

1 항: 상소 의도 통지서가 문제가 된 판결을 내린 치리회의 직원이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서의 접수는 내려진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건은 취하될 것이다.

2 항: 상소와 그 이유는 상소 의도 통지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상위 치리회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상소의 건은 취하될 것이며, 상위 치리회의 서기는 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이다.

3 항: 상소 서류 사본을 접수한지 20일 이내에 하위 기관의 서기는 상위 치리회의 서기에게 상소에 관련된 모든 과정의 원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상소 의도 통지서 및 상소와 관계가 있는 모든 다른 서류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류들이 사건기록 (the record of the case) 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서류들을 받은 뒤, 상위 치리회의 서기는 그 사건기록 및 추후로 그 치리회에 제출되는 모든 문서들의 사본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4 항: 상위 치리회의 서기는 사건기록이 접수된 즉시 사법업무를 다룰 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되,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할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그 회의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및 그 관련 서류들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심사할 것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즉시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20일 이내로 그러한 미비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가로 보충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치리회의 정기회의가 30일이 채 남지 않고 그 이전까지 위원회가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치리회의 서기에서 그러한 판단와 이유를 통보하고 다음 정기회의까지 보고의 연기를 허락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기는 이러한 요청을 즉시 치리회의 임원회와 상의할 것이며, 임원회는 즉시 그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5 항: 총회 임명 교수의 상소인 경우, 총회의 서기는 총회 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임원회는 그 상소를 심사할 새로운 위원회를 즉각 지명할 것이다. 그 위원회는 적당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및 그 관련 서류들이 규정되로 되었는지를 심사할 것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즉시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20일 이내로 그러한 미비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가로 보충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6 항: 만일 그 사건이 규정대로 접수되었다면, 위원회는 그 당위성을 검토해야한다. 만일 상소가 너무 사소한 건에 관한 것이거나 진척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라 판단된다면, 위원회는 청문회 없이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상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위원회는 그 사건기록과 제출된 추가 논지를 검토하고, 양측과 함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 때 양자에 의해 요청된 변호인이 동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호인은 헌법 제 2부 1장 5조 10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문회는 참석한 양자에게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양측은 직접이든 변호사가 대신해서이든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7 항: 위원회는 치리회의 정기 회의나 특별 회의 전에 정해진 날짜까지 결정 사항과 제안을 해당되는 치리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사본을 각 당사자들에게도 보내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그 치리회는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치리회는 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거나, 개정하거나, 또는 위원회로 돌려 보낼 수 있다. 치리회는 하위 치리회나 기관의 판결에 대하여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승인 하거나 뒤집을 수 있으며, 또는 적절한 지도사항과 함께 반송하여 재고토록 할 수 있다.

8 항: 하위 기관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거나 그 사건에 대해 이해의 대립이 있는 사람은 상위 치리회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없다.

9 항: 치리회는 결정과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0 항: 상소가 접수되었을 때, 상소인은 하위 치리회가 잘못된 판결을 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11 항: 상소를 심의하는 치리회는 특히 증거의 신빙성의 문제와 관련해 하위 치리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며, 모든 기록을 심사한 결과 서류들에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 될 때는 하위 치리회의 판결을 지지할 것이다.[31]

12 항: 미국개혁교회의 교인이나 단체, 또 해당 건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어떤 상소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전에 어떤 종류의 문서화된 주장이나 변론을 배포할 수 없다.

13 항: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2부 권징 조례에 관한 주해서
EXPLANATORY NOTES ON CHAPTER 2:
THE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본 주해서는 권징 절차의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되는 것으로서 단지 해설의 기능을 할 뿐, 헌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1장 (Part I)

1 1조는 "권징 (discipline)"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어떠한 치리회에 의해 행사되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치리회는 기소자, 피기소자,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권징의 행사는 비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비공식적인 권징을 행사하는 주체는 총회헌법 제 2부의 내용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하나의 기관 (assembly)은 임원회나 목회관계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등을 통해 권징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하지만 공식적인 치리기관으로서 총회헌법 제 2부 1장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오직 훈계 (admonition) 와 견책 (rebuke) 만을 부과할 수 있다. (하나의 단체는 사법적 절차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기관 (assembly)"으로 부른다. 한 "기관"은 사법적인 절차와 관계될 때 "치리회 (judicatory)"가 된다.)

치리회가 재판을 할 때는, 로버트 규칙 (Robert's Rule: 미 의회가 주로 따르는 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 총회헌법 제 2부 1장 5조 11a항과 제 2부 1장 전체에 규정된 운영 규칙이 모든 법적 절차의 기준이 된다.

공식적인 재판까지 갈 필요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허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재판 (and trial)"이라는 어구가 삭제되었다.

2 2조는 권징이 필요한 범죄에 대하여 정의한다. "공적 (public)" 범죄와 "사적 (private)" 범죄의 구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공적" 혹은 "사적" 범죄가 반드시 다른 형태의 권징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용어들은 삭제되었다. "사안이 중대한 (notorious 혹은 scandalous)" 범죄를 정의하는 것은 치리회의 책임이다. 어떤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설교권 박탈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제 2부 1장 3조 4b항의 미주 5번을 참조하라), 또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추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치리기관이 그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음이 가정되어 있다.

마태복음 18:15-17에 요약되어 있는 절차는 모든 범죄에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2부 1장 5조 7항의 미주 20번을 보라). 마태복음 18:15-17에 나오는 절차에 잘 부합되지 않는 다른 범죄들과 더불어, 그러한 범죄의 경우는 2조를 적용해야 한다.

"세상 앞의 명예 훼손 (dishonorable in reputation before the world)"이라는 구절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본문에서 삭제되었다. 성경이나 미국개혁교회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으로도 치리회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3 "견책 (rebukes)"이라는 단어가 제 2부 1조 2항에 호응하도록 첨가되었다. 공고의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 2부 1장 5조 14항의 미주 28번을 보라). 일반적으로 세상법정 (civil courts)은 교회법정 (ecclesiastical courts)이 그들이 정한 교회 질서를 지키는 한 교회법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본 1항은 장로회 (Board of Elders)가 교인과 교회 모두의 복지에 관심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4 본 2항에 나타나는 장로와 집사의 권징은 장로와 집사의 "직분 (office)"에 대한 것이다. 만일 목사가 장로나 집사로 봉사하고 있어도, 목사는 노회에 의해서만 권징될 수 있다 (제 2부 1장 3조, 4a항과 2부 1장 3조 4c항의 미주 6번을 보라).

5 "공적인 죄나 총체적인 (public sin or gross)"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사안이 중대한 (notorious or scandalous)"이라는 용어들은 제 2부 1장 2조에 있는 범죄의 정의에 호응하기 위하여 첨가되었다.

컨시스토리가 "설교를 중단 (closes a pulpit)"하는 일은 단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행동에 국한된다 (제 2부 1장 1조의 미주 1번을 보라).

6 "유일한 (exclusive)" 이란 단어는 목사의 권징에 대한 권위가 노회에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하였다 (제 2부 1장 3조 4a항을 보라). 또한 2부 1장 3조 2항의 미주 4번에 나타나 있듯이, 노회만이 장로나 집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목사의 권징을 행할 수 있다.

목사는 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부 2장 15조 13항을 보라). 하지만 사직은 권징의 행사가 아니다. 사직이 생기면, 노회는 사직에 관련된 배경과 사실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2부 1장 4조 4d항의 미주 13번을 보라).

7 이런 형식의 상소는 제 2부 3장 1조 1항 ("상소의 의미") 에서 통상 요구되는 "상위 치리회"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회 임명 교수의 재판은 총회가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한 유일한 재판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가 필요한 것이다. 더 이상의 "상위 치리회"가 없기 때문에 상소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제 2부 3장 1조 2항을 보라). 이는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밝힌 제 2부 3장 2조 13항과 관련해 총회헌법 내에서 허락된 예외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 2부 3장이 말하는 "하위 치리회"는 원 총회의 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 2부 3장 1조 2항을 보라). 또한 이런 경우에, 총회 임원회는 다른 상소들을 처리하는 일반 "법사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조사 위원회를 지명하는 것도 주목해야한다 (제 2부 3장 2조 5항을 보라).

8 적법한 절차 (due process)"란 어구의 삭제는 (제 2부 전체를 통해) 일반 민사법 표현이나 법률 언어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한 기획팀의 시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삭제는 또한 이 6항을 본 3조에 있는 다른 1-5항들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준다 (제 2부 1장 5조 11e항의 미주 24번 참조).

"컨시스토리 (consistory)"는 직분 (office)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는 컨시스토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지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9 본 4조에서는 고소를 다루는 절차가 요약되어 있다. 교단 양식 12번 (부록 양식 12번을 보라)이

고소에 사용되는 양식이다. 기소나 주장이 본 4조에 부응해야만 고소가 성립될 수 있다.

[10] "송부 (provide)"는 인편, 등기우편, 이메일 등의 합리적인 전달 노력을 의미한다.

[11] 한 치리회의 권징 하에 있지 않는 개인이 해당 치리회에 "기소 (accusation)"할 수 있다. 기소는 본 4조 1항에 기록된 고소 (charge)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당 치리회는 접수된 기소 사항을 치리회 내의 적합한 위원회로 넘길 것이며 그 위원회는 본 4조 4항에 기록된 대로 그 기소 내용을 평가할 것이다. 위원회는 해당 기소가 고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고소의 실제적인 근거는 그것이 개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던지 치리회의 위원회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던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2] 위원회의 위원들은 재판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부 1장 5조 6항을 보라). 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거나 특별위원회 혹은 일인위원회이다.

본 4항에서는 고소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요약되어 있다. 치리회의 위원회는 비록 그 고소가 참되다고 해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내릴 수 있다.

[13] 중재 (mediation)은 기소자와 피고자가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고소건의 조사가 직위 해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 왜 직위 해제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내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 1부 1장 3조 3c항의 미주 6번을 보라) 기록 속에는 그 고소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14] 6항은 치리회의 위원회에게 고소 취하, 협상 합의 중재, 재판이 필요한 적합한 근거의 판단을 포함하는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치리회 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치리회의 객관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전체 치리회가 아닌 위원회가 하나의 사안이 재판이 필요한 충분한 근거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차후에 실재 재판에서 그 증거를 심사해야 하는 치리회가 그런 증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 이전에 이러한 증거에 대해 알게 되면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치리회의 결정에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치리회 위원회의 위원들은 심사나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 2부 1장 5조 6 항을 보라). 위원회와 치리회의 기능을 이처럼 분리시키는 것은 절차에 있어 근본적인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일 치리회의 회원이나 기소자가 치리회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고소를 접수하거나, 조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신청의 근거가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상소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15] 치리회의 위원회가 고소건을 조사하여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위원회는 치리회에 상세한 내용의 보고 없이 조사여부와 타당성 결여의 내용만을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6] 재판 중 당사자들을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17] 치리회의 서기는 소환장을 발행해야하고, 그 소환장의 복사본을 피고자에게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18] 본 2항에서는 피고자에게 10일이 아닌 20일의 응답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고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생략하고, 치리회의 권징을 수용하기 원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19] 본 6항에 수록된 사람들은 재판시 치리회의 심사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권징의 부여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 (제 2부 1장 4조 4항의 미주 12번과 제 2부 1장 5조 14항의 28번을 보라).

[20] 공정성을 위해 피고자의 면전에서 증인이 심사되어야 한다. 새로운 8항에서는 재판정 밖에서의 증인의 증언을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 어린이가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리기관이 피고자와 증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면전에서 (in the presence)"라는 말은 화면의 사용, 화상 증언, 또는 피고자와 증인들 모두에게 공정한 다른 수단들을 포함한다 (제 2부 1장 2조의 미주 2번을 보라).

[21] (제 2부 1장 5조 7항의 미주 21번과, 제2부 1장 2조의 미주 2번을 보라.)

[22] 변호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는 것이다. 목사나 장로에게만 변호인을 제한하기보다는 개혁교회의 정교인을 변호인으로 허용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변호인 확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사용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허락한 것은 변호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된 사항이다.

[23] 본 11항은 재판에 따르는 절차에 관한 지시사항이다. 비록 피고자가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치리회는 여전히 해당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권징을 부과해야 한다 (제 2부 1장 5조 12항과 13항을 보라). (본 11항과 12-13항에서는 징계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 진행의 견본은 총회 사무실로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24] 현재 총회헌법에는 증거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도의 개연성 (high degree of probability)" 이라는 말은 증거의 기준에 대한 정의와 통일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기준은 제 2부 1장 5조에 의거한 재판이 형사 혹은 민사 재판 절차가 아니라 교회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의 사용을 지양한다고 하는 기획팀의 의도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제 2부 1장 3조 5항의 미주 8번을 보라). "고도의 개연성"은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의 기본 정의이다.

[25] "그 이외에 [치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 (such other persons)"에는 치리회의 변호인이 포함될 수 있다.

[26] 치리회의 변호인은 자문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피고자나 기소자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27] (제 2부 1장 5조 6항의 미주 20번을 보라.)

[28] 본 15항은 치리기관의 결정에 대한 배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이다. 15항이 없다면, 치리기관은 징계받은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소송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을 숨기는 것은 교회에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15항에 기준하여, 치리기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치유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여여 한다 (제 2부 1장 3조 1항과 그 미주를 보라).

[29] 해벌과 복직은 단지 그 징계를 부과했던 치리회를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다.

2장 (Part II)

[30] 검토에 있어 통일성과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증거 우세의 원칙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이라는 기준이 첨가되었다. 이는 총회 법사위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3장 (Part III)

[31] 검토에 있어 통일성과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여 "충분한 증거 (substantial evidence)" 라는 기준이 첨가되었다. 이는 총회 법사위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제 3 부
내규 및 특별규칙
(CHAPTER 3
THE BYLAWS AND
SPECIAL RULES OF
ORDER)

제 1 장: 총회 내규
(Part I: The Bylaws of the General Synod)

제 1 조: 총대의 권리와 의무
(Privileges and Duties of Delegates)

1 항: 총대의 의석

a. 노회의 총대들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노회는 총회 상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b. 총회의 총대수를 결정하는 교인 통계는 총회가 열리기 2년 전의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한다.

c. 총회의 총대를 결정하는 노회나 대회의 현황은 총회가 열리기 직전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항: 출석

총대들은 문의 위원회 (Committee of Reference) 의 허락이 없는 한 총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제 2 조: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선출
(Election of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1 항: 선출 방법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선출은 보통 투표에 의하여 된다. 총회 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이 된다.

2 항: 총회장의 선출

a. 현 부총회장이 첫 번 투표의 단독 후보자가 될 것이다. 투표로 결정이 되면 현재의 부총회장의 총회장 당선이 선포될 것이다.

b.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총회장의 선출은 다음 3항의 절차를 따라 집행이 된다.

3 항: 부총회장의 선출

a. 먼저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어떤 총대가 투표수의 2/3 이상을 득표한다면, 그 총대의 당선이 선포될 것이다.

b. 후보자 추천 투표에서 선출이 되지 않는다면, 10표 이상 얻은 모든 총대가 후보자가 될 것이고 총회 앞에 소개될 것이다. 총회는 투표로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 투표에서 선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수 득표자 중 두 명을 두고 2차 투표를 할 것이다.

제 3 조: 총회중앙위원회 (General Synod Council)

1 항: 회원

총회중앙위원회 회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총회장, 부총회장, 직전 총회장.

b. 바로 이전 총회에 참석한 일반 노회 총대들 가운데 각 대회에서 추천하고 또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총회가 선출한 1 명.

c. 바로 이전 총회에 참석한 일반 노회 총대들 가운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총회가 선출한 10 명.

d. 미국개혁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 총회중앙위원회에 필요한 은사, 특기, 다양성을 참고하여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가 선출한 3명.

e. 각 소수민족 위원회가 추천한 회원들 가운데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가 선출한 1명.

f. RCA 교단 총무의 추천으로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ELCA) 에서 파송한 1명 (투표권 없음)

g. 직권상의 자격으로 (ex-officio) 참여하는 교단 총무 (투표권 없음).

2 항: 구성

a. 총회중앙위원회 회원의 반은 장로, 다른 반은 목사로 하며, 적어도 전체의 1/3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데 있어, 부총회장, 투표권이 없는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ELCA) 파송 회원, 총회 교단

총무는 제외로 할 것이다. 공천위원회는 총회중앙위원회의 구성이 교단의 총체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소수민족 위원회의 대표가 총회중앙위원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b. 총회중앙위원회는 소수민족 위원회들을 둘 것이다. 그러한 소수민족 위원회는 미국개혁교회 안에서와 전세계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을 발전시킴에 있어 소수민족 교인들과 교회의 집합적 비전과 의견을 표현하며,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정책과 경제, 사회, 인종적 정의 등을 대변한다.

3 항: 임기

선출된 회원의 임기는 4년이다. 임기를 마친 회원은 임기 이후 2년간 회원 선출의 자격이 없다. 4년 임기 중 2년 이하만을 봉사한 회원은 4년임기로 한번 더 선출될 자격이 있다. 임기는 선출된 해의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6월 30일로 끝난다. 총회중앙위원회, 대회, 노회의 유급직원은 총회중앙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지 못한다. 총회의 임원은 총회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 후 1년을 더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4 항: 임원

총회중앙위원회의 임원은 의장 (moderator)과 제1부의장 (first vice-moderator), 제2부의장 (second vice-moderator) 그리고 서기 (secretory)로 한다.

a. 의장은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 가운데서 매년 중앙위원회가 선출할 것이다.

b. 총회의 직전 총회장이 제1부의장이 될 것이다. 직전 총회장이 이미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중앙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할 것이다.

c. 총회의 부총회장이 제2부의장이 될 것이다. 부총회장이 이미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중앙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할 것이다.

d. 교단 총무가 서기가 될 것이다.

5 항: 회의

a. 위원회는 매년 3번의 정기회의가 있다.

b.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특별회의를 가질 수 있다.

3.I.3

6 항: 임무

위원회의 임무은 다음과 같다:

a. 미국개혁교회의 운영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로서, 총회 때에 문의위원회 (Committee of Reference) 로서, 또 법이 요구하는 바 총회의 재단이사회 (Board of Trustees) 로서 봉사한다.

b. 미국개혁교회 총회의 대행기관 (agent) 으로서 교단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하며, 또한 소속 교회들과 기관들이 그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총회중앙위원회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가할 것이며, 그 직원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시행할 것이다. 총회중앙위원회는 총회가 특별한 임무를 맡긴 다른 여러 위원회나 기관이나 교단 임원들과 함께 일하되, 총회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c. 미국개혁교회의 기존 우선사업이나, 사역이나, 선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며 총회에 대한 상납금의 액수를 제안한다. 상납금은 총회의 투표로 책정된 의무지원금의 예산 특정 비율로 한다.

d. 총회와 다음 총회 사이에 미국개혁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e. 미국개혁교회 총회의 재산, 사업, 재정, 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기타 업무 및 관심사를 관장한다.

f. 미국개혁교회의 여러 위원회, 이사회, 기구, 대행기관 등의 사역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사역과 증거의 효과를 증대케 한다.

g. 모든 총회 위원회 (General Synod commissions) 를 5년에 한번씩 평가하여 총회에 그 존속, 재편성, 철폐 등의 여부를 제안한다. 이는 모든 위원회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h. 교단 총무를 인선하고 감독하며, 또 교단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만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수립한다.

i. 총회가 위임하거나 이관한 다른 임무들도 감당하여야 하며, 총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총회의 대행기관과 위원회의 구성 (Membership on General Synod Agencies and Commissions)

1 항: 임기

다음 사항은 어떤 대행기관이나 위원회의 정관이나 기타 수권 (授權) 문서들 (enabling documents) 에 의해 정해진 것이 없는 한, 총회의 모든 대행기관과 위원회에 해당이 된다.

a. 회원의 임기는 3년이다.

b. 회원들은 두 번 연속으로 선출될 수 있다.

c. 모든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마친다.

d.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임기를 봉사한 경우, 다음 임기 선출의 자격을 논함에 있어서는 3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2 항: 회원 자격

총회의 대행기관이나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미국개혁교회의 모든 정교인들에게 열려 있다. 한 대행기관이나 위원회의 유급직원은 특별히 그 기관의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기관이나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총회나 대회의 유급 운영진 또한 직권상 (ex-officio) 총회중앙위원회의 회원이 되는 것 이외에는 총회 대행기관이나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직권상의 회원권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다음 그룹에 속한 하나 이상의 기관이나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a. 총회의 위원회(Commissions).

b. 교회연합 기관에 파송되는 총대.

3 항: 결원

모든 결원사항은 내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총회중앙위원회가 충원한다. 그러한 모든 임명은 차기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3.I.4

4 항: 소수민족의 참여

총회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소수민족위원회는 총회의 대행기관이나 위원회에 소수민족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총회중앙위원회로 할 것이며, 그 위원회는 관계된 대행기관이나 위원회에 연락하고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이 요구가 총회에 의해 허락이 된다면, 공천위원회에 의하여 시행될 것이다.

제 5 조: 위원회 (Commissions)

1 항: 일반 규정

a. 회원

총회위원회의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임명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총회전 열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b. 임무

위원회는 총회에 유익한 사항이나 총회가 지시한 것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제안한다. 그들은 또 총회의 내규나 법적으로 규정된 특별한 책임도 감당하여야 한다.

c. 고문

법사위원회와 공천위원회를 제외한 총회의 모든 위원회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분야들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세 사람의 고문을 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한 고문들은 1년이 넘지 않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섬기되, 3년 연속으로 봉사할 수 없다. 그들에게 보수가 지불되지는 않지만, 사용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d. 소수민족 위원회 보고 (Racial/Ethnic Council Reports)

직전 총회가 폐회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각 위원회는 총회중앙위원회(General Synod Council)가 설치한 각 소수민족 위원회에 다음 해에 예정된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소수민족 위원회가 다음 해의 위원회 사역에 대하여 조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 항: 크리스찬 활동 위원회 (*Commission on Christian Action*)

a. 회원

위원회는 9명으로 한다. 위원회는 2명의 에큐메니칼 방청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명은 다른 개혁교회에서 또 1명은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에서 할 것이다. 에큐메니칼 방청인으로 임명된 자의 임기 역시 3년이다. 그들은 한번 더 재임명 될 수 있다. 모든 회원에게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복음이나 크리스챤의 생활방식을 현재 처한 사회적인 문제에 적용하려는 강렬한 소망과 그에 적합한 능력의 소유가 요구된다.

b. 임무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와 또 그것에 대하여 성경과 기독교 원리로 평가하여 교회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알리고 충고하는 일을 한다.

3 항: 크리스찬 연합 위원회 (*Commission on Christian Unity*)

a. 회원

위원회는 9명으로 한다. 회원 중 1명은 타교단 사람으로 위원회가 지명을 하고 총회가 승인하여야 한다. 교단 총무는 직권상 본 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며 투표권은 없다.

b. 임무

1. 위원회는 미국개혁교회가 가입하거나 관계된 에큐메니칼 기관에 존중하는 활동을 주관한다.

2. 초교파적인 대화에 관여하고 다른 교단에 에큐메니칼 총대를 임명한다.

3. 교회로 하여금 현재의 교회연합의 발전을 통지하고 교회에 교회 연합의 참여와 관계를 제안한다.

4 항: 총회헌법 위원회 (*Commission on Church Order*)

a. 회원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그 중 2명은 법적인 훈련과 경험을 가진 평신도라야 한다. 모든 회원에게는 교단의 조직과 정치 및 기능에 대하여

3.I.5

일반적인 지식과 관심이 요구된다.

b. 임무

1. 위원회는 총회헌법 (*BCO*)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스타일에 대하여 제안을 할 책임이 있다.

2. 위원회는 총회헌법의 해석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5 항: 역사 위원회 (*Commission on History*)

a. 회원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한다. 기록보관인이나 역사적 기록의 편집인은 지속적으로 고문으로 섬길 것이다. 모든 회원에게는 미국개혁교회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요구된다. 이 분야에 전문가적인 능력이 선호된다.

b. 임무

1. 위원회는 RCA의 기록보관인의 제안을 따라 선택된 2, 3명의 하위 위원회를 통하여 총회에 미국개혁교회나 산하 교회들, 치리회 및 기관들의 공적인 서류들을 수집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개혁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평가하는 일을 촉진시켜야 한다.

3. 위원회는 역사 기록물 간행에 대한 전적인 감독의 책임이 있다.

i. 역사 기록물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ii. 역사 기록물의 편집인을 임명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iii. 출판될 역사 기록을 공모하며, 편집인의 추천을 받은 원고들을 평가하여 출판의 여부를 결정하며, 이미 출판된 서적의 재 출판 여부를 결정한다.

iv. 저자와 편집인의 보수, 인세, 출판 보조금, 발행과 배부의 방법, 진행과정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v. 역사 기록물의 편집인으로부터 재정보고서 전부를 매년 보고 받고 평가한다.

4. 위원회는 미국개혁교회의 프로그램에 그 역사와 전통이 적실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교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교단의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위원회는 교단의 역사와 전통과 관계된 미국개혁교회 내 교육기관들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함으로 "역사 중심부 (history center)" 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6 항: 법사 위원회 (*Commission on Judicial Business*)

a. 회원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되, 각 대회에서 1명의 대표를 둔다. 각 대회는 평신도와 목회자 1명씩을 6년의 임기로 돌아가며 추천을 하여, 위원회가 적어도 3명의 평신도와 3명의 목사로 구성되록 해야 한다. 평신도 회원에게는 법적 훈련과 경험이 요구된다. 모든 회원에게는 교단의 조직이나, 정치, 또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배경이 요구된다.

b. 임무

위원회는 권징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7 항: 소수민족 위원회 (*Commission on Race and Ethnicity*)

a. 회원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미국개혁교회의 중앙위원회 내의 각 소수민족위원회에서 추천된 1명을 포함한다. 적어도 회원의 절반은 평신도여야 한다.

b. 임무

1. 위원회는 교회로 하여금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이나 문제점을 알게하고, 미국개혁교회가 온전히 다문화와 다민족적인 성격을 지닌 교단이 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돕는다.

2. 위원회는 미국개혁교회가 다문화와 다민족적인 삶을 수용함에 있어 변화를 경험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3. 위원회는 미국개혁교회가 그 속한 대행기관과 위원회 및 기타 관계된 단체들을 통하여 전적으로 다문화와 다민족적인 성격을 지는 교단이 되는 일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지침이나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4. 위원회는 미국개혁교회가 다문화와 다민족적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보고하여야 한다.

8 항: 공천 위원회 (*Commission on Nominations*)

a. 회원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각 대회에서 1명씩,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 원주민, 아시아 태평양계 소수민족 위원회 각각을 대표하는 1명씩, 직전 총회장 1명을 포함한다. 각 대회는 평신도와 목회자 1명씩을 6년의 임기로 돌아가며 추천을 하여, 위원회가 적어도 3명의 평신도와 3명의 목사로 구성되록 해야 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 원주민, 아시아 태평양계 소수민족 위원회의 대표들은 각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b. 의장

위원회의 의장은 적어도 2년을 봉사한 회원중에서 공천되어 총회에서 선출된다.

c. 임무

1. 위원회는 총회중앙위원회의 회원을 공천하며, 내규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모든 총회의 위원회나 기관들의 회원을 공천한다.

2. 위원회는 교단 총무와 의논하여 공천할 적당한 인물을 교단에서 찾는다. 공천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한 인물의 지역과 직업을 비롯하여, 노회와 대회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교단에 대한 이전 봉사의 기록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하여 각 위원회나 대행 기관에게 부여된 임무, 회원으로서의 자격, 추천된 공천후보자, 회의의 장소와 스케줄 등에 비추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살펴야 한다.

3. 위원회 회원들은 그들이 지명을 받은 노회나 대회의 서기와 의논하여 그 해당되는 대회 안에 있는 후보자들의 자료를 수집할 책임이 있다.

4. 위원회는 여러 위원회나 대행기관의 회원을 공천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년령별, 문화 및 사회적 다양성, 또 학문적 전문성 및 다른 필요한 전문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소수민족계의 인물의 공천 과정을 검토하여, 공천하는 단체가 적합한 소수민족 위원회와 의논하였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 항: 신학 위원회 (*Commission on Theology*)

a. 회원

위원회는 10명의 회원을 둘 것이다. 회원은 본 교단 신학교 교수 2명, 총회 임명 교수 1명, 본 교단 대학교 교수 2명,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 3명 (그 중 한명은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어야 함), 그리고 최소한 2명의 비목회자 평신도로 구성된다. 또한 본 위원회가 지명하고 총회가 인준한 2명의 에큐메니컬 방청인 두어야 하는데, 타 개혁 교단으로부터 1명과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로부터 1 명으로 한다. 에큐메니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그들은 한 번 더 재선될 수 있다. 신학에 대한 조예가 모든 회원에게 요구된다.

b. 임무

위원회는 교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신학적인 문제를 연구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총회가 의뢰한 것일 수도 있고, 위원회 자체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10 항: 여성 위원회 (*Commission for Women*)

a. 회원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된다. 모든회원은 모든 사람의 모든 재능에 대해 열려 있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이룸에 있어 여성의 온전한 참여를 위한 일에 강렬한 소망을 공유해야 한다. 회원 중 2명은 남성이어야 한다.

3.I.5

b. 임무

위원회는:

1.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관련해 남녀동등권에 대한 관심의 고취와 의식의 함양을 위한 기회와 자료를 제공한다.

2. 교단의 전문적이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리더십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와 대행기관들의 회원 및 임원, 또한 교단의 유급직원 임명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3. 교단에서 발행되고, 제작되고, 배부된 모든 자료들에서 그 태도나 이미지나 언어에서 성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돕는다.

4. 교회나 사회에서 여성들의 전적인 참여를 위한 조직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주장하며, 적용한다.

5.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점들에 대하여 다른 RCA의 기관들과 협력한다.

6. 다른 교단의 비슷한 그룹들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점들에 대한 의견과 자료들을 교환함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한다.

11 항: 예배 위원회 (*Commission on Christian Worship*)

a. 회원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회원에게는 예배의식이나, 예술, 교회 음악 등에 관심과 능력이 요구 된다.

b. 임무

위원회는:

1. 예배 모범에 있어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교회에 조언한다.

2. 교회에서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예배의 자료를 만들고 배부한다.

3. 예배음악의 기준을 제안하고, 현행 교단 찬송가 (*Rejoice in the Lord*)의 후속 판을 제작할 책임이 있다.

4. 성경의 여러 번역본에 대한 비평적인 지식을 교회에 제공한다.

5. 예배의식, 찬송, 또 다른 예배자료들과 관련한 현시대의 발전 사항을 적절한 비평과 함께 교회에 제공한다.

12 항: 기독교 교육과 제자훈련 위원회 (*Commission on Christian Discipleship and Education*)

a. 회원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적어도 3명은 RCA 교회에서 교육과 제자훈련에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이고, 또 1 명은 RCA 산하 기관의 교수여야 한다. 모든 회원에게는 기독교 교육과 제자훈련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요구된다.

b. 의무

1. 위원회는 RCA의 선교와 삶에 있어서 모든 연령층이 온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제자훈련에 있어 RCA가 이루고 있는 성과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

3. 위원회는 RCA 교회 내 차세대를 위한 제자훈련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RCA 직원들과 치리회, 각종 대행기관과 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

4. 위원회는 교회를 위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6 조: 교수회 (The Professorate)

1 항: 회원

모든 총회 임명 교수들은 본 회의 회원이 된다. 위원회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모여야 한다.

2 항: 의무

a. 교수회는 교회의 삶과 사역에 중심이 된다고 판단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교회를 섬긴다.

b. 교수회는 총회에서 의뢰한 모든 문제들을 심사해야한다.

c. 교수회는 전체 교회를 대신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검토할 수 있다. 교수회는 총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 그러한 연구 주제들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d. 교수회는 요청에 따라 총회의 다양한 대행기관과 위원회 등에 조언과 상담을 제공할 것이다.

e. 교수회는 신학교육에 대한 표준과 관련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을 총회에 회부하거나, 제안된 변경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f. 교수회는 목회자 후보생의 준비와 평가에 있어서 RCA 대행기관 및 단체들과 조력해야 한다.

g. 교수회는 회원 중 5인을 매년 총회에 참석할 총대로 선출하는 절차를 세워야 한다. 매년 적어도 각 신학교에서 1인의 교수들과,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 의 교사나 인준 위원회 회원으로 섬기는 1인의 교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 교수회는 정해진 임기를 가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 7 조: 총회 대행기관들 (General Synod Agencies)

1 항: 정의

총회 대행기관들은 그 수권 (授權) 문서 (enabling documents) 혹은 정관을 총회가 승인한 이사회나 협회들이다.

2 항: 법적 규정의 내용

총회 대행기관들의 수권 문서에는 기관의 명칭, 목적, 회원을 기록한 규약서와 회의에 대한 규정, 총회 보고 사항, 내규 및 개정 등이 포함된다.

제 8 조: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s)

1 항: 자문 위원회의 기능

자문 위원회는 총회중앙위원회가 부여하고 총회 첫 번 회의 시간에 보고된 총회 업무를 감당할 것이다.

2 항: 자문 위원회

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문 위원회들을 둘 것이다.

3 항: 자문 위원회의 회원

a. 통상 총회장이 총대들을 그 은사에 따라 필요한대로 자문위원회 회원으로 지명할 것이다. 회원의 새로운 지명과 모든 변경사항은 그 이유와 함께 총회중앙위원회에 보고 되어 인준을 얻어야 한다.

c. 제출한 보고서가 평가되는 대행기관이나 위원회의 대표들은 해당되는 자문위원회의 준회원이 될 것이다.

d. 어떤 자문위원회의 모임 이전에 용무가 있는 기관은 2명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보낼 수 있다.

제 9 조: 준회원 (Corresponding Delegates)

1 항: 준회원의 권리

준회원은 총회의 모든 일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 없고,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없다.

2 항: 총회 임명 교수

교수회가 파송한 정규 총대는 아니지만 총회 석상에 출석해 있는 신학교 교수는 준회원으로 인정된다.

3 항: 대학

a. 미국개혁교회와 공식적으로 관계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이나, 총장을 대신하여 재단 이사회에서 지명한 사람은 준회원이 된다.
b. 공식적으로 관계가 있는 각 대학은 2명의 학생을 준회원으로 지명한다.

c. 미국개혁교회에 소속된 대학의 총장이나, 그 총장이 지정한 인사는 총회에 게스트로 초청될 수 있으며, 보고를 하도록 초대될 수 있다.
d. 각 소속 대학은 총회와 해당 대학 이사회가 승인한 소속 협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협약서는 양측 관계의 성격을 규정한다.

4 항: [보류됨]

5 항: 신학생

각 RCA 신학교 및 교단과 공적으로 연관된 신학교는 2 명의 학생을 준회원으로 지명할 것이다.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은 RCA 신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2명의 후보생을 준회원으로 지명한다.

6 항: 교단 총무

교단 총무는 준회원이다.

7 항: 총회중앙위원회

총회중앙위원회의 회원은 준회원이다.

8 항: 위원회 (Commissions)

총회의 각 위원회들은 1명씩 준회원을 지명한다.

9 항: 신학교 총장, 재단이사회의 의장 또는 회원들

신학교의 총장들 및 신학교와 목회자격증명기관 (MFCA)의 재단 이사회 의장이나 다른 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10 항: 에큐메니칼 대표

크리스찬 연합 위원회는 최대 11명까지 에큐메니칼 대표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 그들은 준회원이 된다.

11 항: 대회들

a. 각 대회로부터 2명의 여성을 준회원으로 지명하는데, 이때 여성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b. 각 대회로부터 1명의 청년을 준회원으로 지명한다.

c. 대회의 유급 운영진은 총회의 준회원이 된다.

12 항: 후생부 이사회 회장 및 회원 (Board of Benefits Services President or Member)

후생부서의 이사회 회장이나 또는 부서에서 지명된 다른 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13 항: RCA 교회 발전 기금 (RCA Church Growth Fund)

RCA 발전기금 위원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가 지명한 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14 항: 추가로 지명된 특별위원회

여성 위원회는 그 회원이 아닌 1인의 여성을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소수민족 위원회는 그 회원이 아닌 소수 인종 1인을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과 제자훈련 위원회는 그 회원이 아닌 1인의 청년을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제 10 조: 비상 상황 위원회 (Committee on Emergencies)

1항. 목적

비상 상황 위원회는 재해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기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화재, 자연 재해 혹은 기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총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에 지장이 생길 때 소집될 것이다.

2항. 회원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총회장, 부총회장. 직전 총회장 (직권상 참여하며 투표권은 없음)

b. 각 노회장. 노회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노회가 부노회장 혹은 서기를 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c. 교단 총무 (직권상 참여하며 투표권은 없음)

3항. 회의

a. 위원회는 상기 1항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회장에 의해 소집될 것이다. 재난으로 인해 총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직무의 순서를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a) 부총회장, (b) 직전 총회장.

b. 회의는 참여 인원 전체가 동시에 청각적 소통이 가능하다면 전자 기기를 사용해 모일 수 있다.

c. 노회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회의 성수가 된다.

d. 참석 인원의 3분의 2 가결을 통해, 이 위원회는 총회 회의의 연기와 다음 회의의 시간과 장소 결정, 총회 상납금액 결정, 공천 위원회의 건의와 관계된 결의 및 총회 차원에서 필요한 기타 결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e. 회의 소집자는 다음 총회에서 위원회의 모든 회의 및 주어진 비상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을 보고할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음 정기 총회에서 검토하여 인준함으로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 11 조: 회의 규칙 (Rules of Order)

총회에서 회의 규칙의 적용은 총회 특별규칙 (Special Rules of Order of the Genral Synod) 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한, 최신판 로버트 회의 규칙 (Robert's Rules of Order) 을 적용한다.

제 12 조: 개정 (Amendments)

총회의 내규 및 특별규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개정할 수 있다. 그 수정안은 직전 정기 총회에 서면으로 상정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것이어야 한다. 내규 및 특별규칙의 개정 사항은 총회장의 선포로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 2 장 총회의 특별규칙 (Part II: Special Rules of Order of the General Synod)

제 1 조. 회무의 순서 (Order of Business)

1 항: 총회의 성립 (Formation of General Synod)

a. 회의로의 부름

b. 예배

c. 총회 회원 점명

d. 총대 의석 확인

e. 개회 성수 선언

f. 회의록 낭독

g. 의사록 승인의 절차

h. 회의 진행 규칙 발표

l. 계표원 지명

j. 안건과 스케줄의 승인

2 항: 총회의 안건 (Agenda of General Synod)

a. 통신의 배치

b. 노회 승인된 총회헌법 수정안에 대한 최종 결의 및 선포

c. 새 안건의 제안과 의뢰

d. 교단 총무 보고

e. 총회장 보고

f. 총회중앙위원회 보고

g. 이사회 보고

h. 법사 위원회 보고

i. 자문 위원회 보고

j. 임원 선출

k. 총회헌법 위원회의 준회원 보고

l. 공천 위원회 보고

m. 문의 위원회 보고

3 항: 총회의 폐회 (Close of General Synod)

a. 총회장 직분의 이임

b. 성찬 예식

c. 폐회 선언

4 항: 기도와 예배

총회의 회의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 매일 첫 시간은 예배로 시작한다.

제 2 조: 회무의 상정 (Presentation of Business)

1 항: 보고서의 목적

총회의 보고서는 다음 목적들에 하나 이상 해당이 되어야 한다.

a. 보고하는 기관의 지난해의 중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발전에 관한 것을 총회에 통보하기.

b. 총회의 결정을 위해 제안하기.

c. 교회에서 연구하고 토의될 문제를 발의하기.

2 항: 보고서의 구성요소

총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보고하는 기관의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

b. 현 교단의 우선순위에 관계된 그 기관의 사업에 대한 정보.

c. 전 총회에서 위임되 안건에 대한 보고.

d.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제안.

3 항: 보고서의 스타일

보고서는 전체 교회를 염두해 두고 기록되어야야 한다.

4 항: 보고서의 길이

보고서는 필요한 내용 전부를 다 담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간결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제안의 경우에는 간결한 배경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연구문서나 정책 서류는 부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RCA 대행기관들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은 보고서나 설명들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석을 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부록에 요약된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때 공식적 입장과 관련된 자료로써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서 전체를 부록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5 항: 보고서의 준비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보고하는 기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보고서 끝에 설명을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설명에는 누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하고, 승인하였는가를 기록해야 한다. 총회로 올리는 보고서는 총회가 열리기 3개월 전에 총회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6 항: 항: 보고서의 제출

자문위원회는 본래의 보고서에 추가 보고를 첨부할 수 있으나, 총회의 회의자료에 이미 있는 것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 총회의 보고서는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읽을 필요는 없다. 자문위원회 사회자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나 기관들의 모든 제안들은 동의안으로 취급된다. 자문 위원회는 총회의 항속적인 기관의 대표가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보고하는 기관의 대표는 자문 위원회에서 구두로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총회 석상에서는 할 수 없다.

7 항: 헌의안 (overture)의 제출

총회는 노회나 대회로부터 헌의안을 접수한다. 재판에 회부된 사항이나, 개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고소의 건은 헌의안이 될 수 없다. 노회로부터의 헌의안은 적어도 총회 회의 2개월 전에는 총회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대회로부터 헌의안은 적어도 총회 회의 3주 전에는 총회 사무실에 접수 되어야 한다.

8 항: 신안건의 제출과 회부

총회는 총회의 첫 회의 시간과 자문 위원회 마지막 회의 전에 신안건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신안건을 제출할 때는 상정된 안건의 설명과 목적, 그리고 치리회나 기관들 또 위원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안건으로 올리는 이유들이 잘 설명되어야 한다. 모든 신안건은 자동적으로 문의 위원회 (Committee of Reference)로 회부되어 새 안건으로 총회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결정된다면, 적절한 결정을 위하여 해당되는 부서로 회부한다.

9 항: 특별 위원회의 임명

특별 위원회나 전문 위원회 혹은 모든 종류의 다른 기관 (이하 특별 위원회)의 구성을 필요로 하는 제안이 총회에 제출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문의 위원회로 회부된다. 문의 위원회는 그 제안이 기존의 총회 위원회나 대행 기관들의 임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 제안이 기존 기관의 범위 안에 있다면, 문의 위원회는 해당 기관 혹은 위원회를 특별 위원회로 지명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던지, 특별 위원회의 목적, 임명의 방법, 봉사의 기간, 총회에 보고하는 방법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특별 위원회는 해당 되는 총회의 위원회나 대행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무의 처리 (Transaction of Business)

1 항: 자문

모든 대행기관이나 위원회는 총회에 보고하기 전, 상정하는 제안에 영향을 받게 될 타 기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그러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타 기관이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 제안은 문의 위원회로 회부된 이후에

총회로 다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항: 총회헌법의 개정안

총회헌법의 모든 개정안들은 문의 위원회로 회부될 것이며, 문의 위원회는 총회헌법 위원회에서 파송된 준회원의 자문을 거쳐 그 최종 문구를 다듬어 다시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3 항: 예산 변경

총회 예산의 모든 변경은 자동적으로 문의 위원회로 회부해 평가토록 한 뒤 다시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4 항: 유기명 투표

총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만인을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총회의 어떤 안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진 총회 회원들의 명단을 회의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총회의 3 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통해 거부될 수 있다.

부록: 미국개혁교회의 각종 양식들
APPENDIX: The Formularies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1.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선언서 (Declaration for Licensed Candidates)

(이 선언서는 후보생이 노회 앞에서 구두로 선언해야 한다. 선언 이후 후보자는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는 노회의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나 [후보자 이름]은(는) 미국개혁교회의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이 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고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들에 표현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임을 믿습니다. 나는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 것과, 또한 교회 내의 사랑과 교제 안에서 살면서 연합과 순결과 화평을 좇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노회의 자문과 충고에 복종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의 고백을 언제든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노회 앞에 고백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사역을 질서를 따라, 그리고 예배모범과 총회헌법을 따라 수행할 것입니다.

2.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증명 (Attestation of a Licensed Candidate)

관계자 여러분께: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후보자 이름]은(는) [노회 이름] 노회 앞에서 [신학교 이름] 신학교의 교수로부터 전수받은 학문이나 신학에 대한 성취도를 증거하였으며, 미국개혁교회의 정치에 기술된 대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포함한 신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에 본 노회는 그의 은사와 경건과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에 만족하였으므로, 교회의 왕이요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보자 이름]이(가) 그 주어진 지역 안에서 거룩한 사역의 후보생으로 섬길 수 있음과, 또한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와 구주되신 이의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자리로 청빙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허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노회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상기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설교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생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노회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주께서 [그/그녀]를 당신의 사역에 더욱 적합하도록 훈련시키시고, [그/그녀]가 부름받은 주의 포도원에서 유용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노회 회집 장소]에서, [일시]에 열린 노회에서 증명됨

_____

[노회장 이름], 노회장

_____

[노회서기 이름], 노회서기

3.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의 선언서** (Declaration for 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

(이 선언서는 후보자가 노회에 가입할 때 노회 앞에서 구두로 선언해야 한다. 새로 가입한 목회자는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는 노회의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나 [목회자 이름] 은(는) 미국개혁교회 [노회 이름] 노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고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들에 표현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임을 믿습니다. 나는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 것과, 또한 교회 내의 사랑과 교제 안에서 살면서 연합과 순결과 화평을 좇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노회의 자문과 충고에 복종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의 고백을 언제든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노회 앞에 고백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사역을 질서를 따라, 그리고 예배모범과 총회헌법을 따라 수행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과, 교회를 세우고 훈련하여 세계선교에 동참케 하는 일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며, 환란당한 자를 위로하며,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사는데 드리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종인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과 왕되신 분 앞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서는 영광의 그 날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 안수 받은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에 대한 증명 (Attestation of an Ordained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관계자 여러분께: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회 이름] 노회에 소속된 [목회자 이름]은(는) 미국개혁교회의 정치조례에 기술된 대로 신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에 본 노회는 그의 은사와 경건과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에 만족하였으므로, 교회의 왕이요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자 이름]이(가) 미국개혁교회의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한 결의에 따라, [그/그녀]는 [일시]에, 미국개혁교회의 예배의식에 의거 거룩한 사역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별되어 안수를 받고, 목회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본 노회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상기인을 복음을 설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를 집례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노회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주께서 상기인을 당신의 사역에 적합하도록 더욱 풍성한 자격으로 채우시고, [그(녀)]가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그곳에서 유용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노회 회집 장소]에서, [일시]에 열린 노회에서 증명됨.

_____
[노회장 이름], 노회장

_____
[노회서기 이름], 노회서기

5.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에 대한 청빙
(Call to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목회자 이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이럼, 주소] 교회는 귀하 [목회자 이름] 목사님의 경건과 은사 및 목회자로서의 자격에 크게 만족하며,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섬기는 사역이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름]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목회자 이름] 목사님을 우리의 목사와 교사로 청빙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신실함으로 설교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며, 회중들을 교육하고, 특별히 젊은이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고, 기독교적인 권징을 수행하며,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본 청빙의 수락을 위해 요구되는 바 미국개혁교회의 헌법을 따라 복음 사역자로서의 전반적인 사역을 우리와 함께 수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목사님께서 선택한 성경 본문에 대해 설교할 뿐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포함된 교리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하며, 모든 공예배를 인도함에 있어 우리 교회의 관습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요구하는 특별한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시스토리가 결의한 특정한 사항을 기입].

우리들은 목사님께 교회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모든 합당한 관심과 사랑과 복종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과,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베푸는 동안 세상적인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매해 $[액수]를 [횟수: 예를 들어 매주, 매달 등]번에 나누어 드릴 것이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시무하시는 한, 매년 그 사례가 적당한지를 검토하며, 그와 함께 [사택, 주택보조, 수당 등을 기입]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이 이 교회의 목회자로 시무하는 동안 우리는 약정된 금액을 RCA 퇴직적금에 납부하고, 단체 생명보험과 장기신체장해보험을 지급하며, 교단 건강보험을.

목사님과 직계가족이 목사님의 배우자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보험을 선택할 경우, 우리는 목사님과 직계가족의 보험료를 개혁교단 후생연합회에서 정한 액수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후임자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래의 서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청빙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의 축복의 풍성함 안에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시]에 열린 콘시스토리에서 인준됨
인증 _____
[이름], 청빙의 감독자

[컨시스토리 모든 회원과 노회 임원의 사인란이 청빙 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컨시스토리 회원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BCO* 1부 1장 2조 3항을, 청빙 서류가 목회자에게 보내지기 이전에 필요한 노회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BCO* 1부 2장 15조 7항을 참조하라.]

6. **총회 임명 교수의 임용**
(Appointment of a General Synod Professor)

[총회교수 이름] 목사님께:

미국개혁교회의 총회는 귀하의 경건과 학문과 은사를 신뢰하여, 전체 RCA 내의 교수 사역을 맡기고, 목회 사역을 위한 후보생들의 훈련과 인준에서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을 대표하기 위하여 귀하를 총회 임명 교수로 선출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께서 귀하의 수고를 유용하고 즐거운 일이 되게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 규정에 의한 서명,

_____
[총회장 이름], 총회장

[일시]에 열린 총회에서 승인됨

7. **총회 임명 교수의 선언서**
(Declaration for a General Synod Professor)

(이 선언은 취임식 때 크리스천 공동체 앞에서 되어져야 할 것이다. 임직하는 분이 구두로 선언할 것이다. 새로 임직하는 교수는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는 총회의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나 [총회교수 이름]은(는) 미국개혁교회의 총회 임명 교수가 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고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들에 표현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임을 믿습니다. 나는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 것과, 또한 교회 내의 사랑과 교제 안에서 살면서 연합과 순결과 화평을 좇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교리의 문제와 나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노회의 자문과 충고에 복종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의 고백을 언제든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노회 앞에 고백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사역을 질서를 따라, 그리고 예배모범과 총회헌법을 따라 수행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과, 교회를 세우고 훈련하여 세계선교에 동참케 하는 일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며, 환란당한 자를 위로하며,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사는데 드리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종인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과 왕되신 분 앞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서는 영광의 그 날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 **목회 관계의 종결에 대한 청원**
(Application for the Dissolution of a Pastoral Relationship)

[노회 이름] 노회 귀하:

이것은 아래 서명한 사람이 [교회 이름, 주소] 교회의 컨시스토리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에 출석하여 결정한 내용의 확인입니다. 이 회의에서 [목회자 이름] 목사와 이 교회 간의 목회 관계의 종결을 [노회 이름] 노회에 청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일시] 부터이며, [목회자 이름] 목사는 이 청원서에 동의하였습니다.

_____
[목회자 이름], 노회 목사
[일시]

9.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의 이명서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목회자를 타 교단으로 이전하려면 양식 No. 18을 사용하십시오.)

목회자의 전출

전입 노회: [노회 이름]
전출 노회: [노회 이름]

본 이명서는 [목회자 이름] 목사가 [전출 노회 이름] 노회의 성실한 정회원이었음을 확인하며, 동시에 이제 [전입 노회 이름] 노회로 이명을 요청 한 바, 그곳에서도 이곳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랑의 교제와 돌봄을 받게 될 것을 추천합니다. [전입 노회 이름] 노회에서 상기 목회자의 전입을 처리했을 때, 이곳 노회와의 관계는 종결될 것입니다.

대회 총대로서 최종 봉사한 때: [일시]
총회 총대로서 최종 봉사한 때: [일시]
안수 받은 해: [연도]

_____
[서기 이름], 노회 서기
[일시]

목회자의 전입

전출 노회: [노회 이름]
전입 노회: [노회 이름]

본 이명서는 [목회자 이름] 목사가 [날짜] 에 [전입 노회 이름] 노회에 가입되어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의 선언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
[서기 이름], 노회 서기
[일시]

10. 교인의 이명서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Church Member)

본 이명서는 [교인 이름]이(가) [전출 교회 이름, 주소] 교회의 성실한 정교인이었을 확인합니다. [교인 이름]은(는) [장로/집사]의 직분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교인 이름]은(는) [그/그녀]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전입 교회 이름, 주소] 교회로 이명하여, 그곳에서도 이곳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랑의 교제와 돌봄을 받게 될 것을 추천합니다. 귀 노회에서 상기인의 전입을 처리했을 때,[교인 이름] 교회와의 관계는 종결될 것입니다.

장로회 규정에 의거

_____
[장로회 회장 이름], 회장

[장로회 회장에 의해 서명된 장소 이름과 주소]에서 [일시]에 인준됨

참고: 이 이명서는 발행일로부터 일년 동안만 유효하다. 단 이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RCA 산하 교회를 다른 교단으로 전출하는 증명서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Church to Another Denomination)

미국개혁교회의 [노회 이름] 노회는 [청원 교회 이름, 주소]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교회를 본 교단에서 분리하여, [교단 이름] 교단에 속하기로 요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교인들의 의사가 확인되었고, 기도하면서 의논한 결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최선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요청이 허락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기 교회는 미국개혁교회의 정치조례를 따라 교단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개혁교회의 [노회 이름] 노회는 미국개혁교회 정치조례 제 1부, 2장, 10조, 3항에 의거 치리회로부터 상기의 교회를 분리하여 [교단 이름] 교단의 교회로 전출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그 증거로 [일자] 이 증서에 상기 노회의 규정을 따라 서명합니다.

_____
[이름], 노회장

_____
[이름], 노회 서기

12. **고소장** (Charge)

미국 개혁 교회

고소인의 성명
[고소인 이름]

주 소
[고소인 주소]

소속 교회
[고소인 소속 교회 이름]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 이름]

범죄 사항
[범죄 사항의 일반적 기술]

범죄의 시간과, 장소, 상황
[발생한 범죄에 대한 증거 사실]

[일시]

_____

[이름]

13. 고소를 당한 개인이나 컨시스토리의 소환장
(Citation to an Accused Person or Consistory)

미국 개혁 교회

고소사건에 관계하여:
[고소인 이름]
고소인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피고인 이름]
피고인

상기 피고인에게:
총회헌법 제2부-권징조례, 1장, 5조에 의하여 주어진 권위에 따라 귀하를 이 치리회 앞에 소환하여 귀하에 대한 고소에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일시는 [일시]이며, 장소는 [장소] 입니다.

_____
[컨시스토리 회장 이름], 회장

_____
[컨시스토리 서기 이름], 컨시스토리 서기
[교회 이름, 주소]

혹은

_____
[노회장 이름], 노회장

_____
[노회 서기 이름], 노회 서기
[노회 이름]

* 컨시스토리를 상대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라는 단어 대신 “피고소 컨시스토리” 라고 표기할 것이다.

14. 증인의 소환장
(Citation to a Witness)

미국 개혁 교회

고소사건에 관계하여:
[고소인 이름]
고소인

증인에 대한 소환장

[피고인 이름]
피고인

총회헌법 제2부-권징조례, 1장, 5조에 의하여 주어진 권위에 따라 귀하를 이 치리회 앞에 소환하여 귀하에 대한 고소에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일시는 [일시]이며, 장소는 [장소] 입니다.

_____
[컨시스토리 회장 이름], 회장

_____
[컨시스토리 서기 이름], 컨시스토리 서기
[교회 이름, 주소]

혹은

_____
[노회장 이름], 노회장

_____
[노회 서기 이름], 노회 서기
[노회 이름]

15. **교회등록을 위한 정관의 규정**
(Provision for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Congregations)

이 [조직을 위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첨가] 서류에 포함된 내용에 반하는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름] 은(는) 미국개혁교회의 회원이며, 따라서 언제나 미국개혁교회의 헌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 [정관전체/장/문단] 에 기록된 내용은 이 조직 [조직이름]에 대해 치리권을 가지는 교단 노회의 승인이 없이는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가 없다.

16. **평신도 목회자의 선언서**
(Declaration for Commissioned Pastors)

(이 선서는 노회에 의하여 승인된 각 위임식의 시작 시 후보자가 노회 앞에서 구두로 선언해야 한다. 새로 위임받은 평신도 목회자는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이는 노회의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나 [평신도 목회자 이름]은(는) 미국개혁교회 [노회 이름] 노회에서 평신도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신구약 성경에 계시되고 미국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들에 표현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임직식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 것과, 또한 교회 내의 사랑과 교제 안에서 살면서 연합과 순결과 화평을 좇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노회의 자문과 충고에 복종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의 고백을 언제든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노회 앞에 고백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사역을 질서를 따라, 그리고 예배모범과 총회헌법을 따라 수행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과, 교회를 세우고 훈련하여 세계선교에 동참케 하는 일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며, 환란당한 자를 위로하며,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사는데 드리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종인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과 왕되신 분 앞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서는 영광의 그 날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7.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의 이명서
(Certificate of Transfer for a Licensed Candidate)

강도권을 인허 받은 후보생의 전출

전입 노회: [노회 이름]
전출 노회: [노회 이름]

본 이명서는 [후보생 이름] 씨가 [전출 노회 이름]의 강도권을 인허 받은 후보생임을 확인합니다. 이제 [후보생 이름] 씨가 [전입 노회 이름]로의 이명을 요청한 바, 그곳에서도 이곳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랑의 교제와 돌봄을 받게될 것을 추천합니다.

[전입 노회 이름]에서 [후보생 이름] 씨의 전입을 처리했을 때, 이곳 노회와의 관계는 종결될 것입니다.

[후보생 이름] 씨가 노회 앞에서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 선언서를 낭독하고 서명한 날짜는 [일자] 입니다.

_____
[서기 이름], 노회 서기
[일자]

강도권을 인허 받은 후보생의 전입

본 이명서는 [후보생 이름] 목사가 [날짜] 에 [전입 노회 이름] 노회에 가입되어 강도권을 인허 받은 목회자 후보생 선언서를 낭독하고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
[서기 이름], 노회 서기
[일자]

이 전입서를 전출 노회에 돌려 주십시오.

18. 말씀과 성례의 목회자가 타 교단으로 이전하는 증명서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to Another Denomination)

(목회자가 RCA 내 다른 노회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식 No. 9를 사용하시오.)

목회자의 사직 (Demission of a Minister)

미국개혁교회 [노회 이름]로부터 [속하게 되는 조직과 교단의 이름 (Name of Receiving Body and Denomination]에게:

이 증명서는 [성명]목사가 미국개혁교회 [노회 이름]의 성실한 정회원이었음을 증명하고, 현재 [속하게 되는 조직과 교단의 이름]으로의 이전을 요청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와 돌봄을 [그/그녀]가 받도록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속하게 되는 조직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성(last name)] 목사의 본 노회와 미국개혁교회와의 관계는 종결됩니다.

[서기의 이름], 노회서기
[날짜]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RCA 노회의 이름]
[노회 주소]

목회자의 영입

[속하게 되는 조직과 교단 이름]으로부터 미국개혁교회 [노회 이름]에게:

이 증명서는 [성명]목사가 [영입 날짜]에 [속하게 되는 조직과 교단]으로 소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속하게 되는 교단 조직 임원의 서명]
[속하게 되는 조직의 이름과 주소]

총회 회의록 참조
REFERENCES TO THE *MINUTES OF GENERAL SYNOD*

Amendments to sections of the *Book of Church Order* are referenced as follows: (P - *MGS 1992*, R-1, p. 101; A - *MGS 1993*, R-2, p. 39)

The P indicates that an amendment in Chapter 1 or 2 of the *Book of Church Order* was adopted by the General Synod for recommendation to the classes for approval or an amendment in Chapter 3 was approved by the General Synod in first reading for recommendation to the General Synod the following year for a second reading. The "MGS 1992, R-1, p. 101" indicates the adopted amendment is recorded in the *1992 Minutes of General Synod* (*MGS*), Recommendation 1 (R-1), page 101.

Upon approval by two-thirds of the classes (for Chapters 1 and 2) or approval by the General Synod in second reading (for Chapter 3), the A indicates that the General Synod the following year adopted a final declarative action to incorporate the amendment into the *Book of Church Order*. The "MGS 1993, R-2, p. 39" indicates the declarative action is recorded in the *1993 Minutes of General Synod* (*MGS*), Recommendation 2 (R-2), page 39.

References for the Preamble sec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are located immediately below the paragraph amended. References for Chapters 1-3 of the *Book of Church Order* are located after the Appendix. References are abbreviated as follows: 1/I/3/2 (Chapter 1, Part I, Article 3, Section 2).

References are not numbered and the section amended does not indicate the specific addition(s) or deletion(s). Consult the *Minutes of the General Synod* for the year the amendment was adopted (P) to determine what was specifically amended (added or deleted) in the section footnoted.

"Global Amendments"

The following amendments relate to "global amendments" throughout the *Book of Church Order*. Rather than cite each article and section of the *Book of Church Order* that was amended with the same amendment of wording, the following primary action of the General Synod is noted:

Revision of various words, phrases, miscellaneous additions and deletions:
(P - *MGS 1971*, R-4, pp. 204-08)

Revisions to eliminate exclusive use of the masculine gender:
(P - *MGS 1983*, R-9, p. 212; A - *MGS 1984*, R-4, p. 40)

Revisions of membership categories and definitions:
(P - *MGS 1990*, R-3, p. 230; A - *MGS 1991*, R-6, pp. 48-9)
(P - *MGS 1995*, R-8, p. 226; A - *MGS 1996*, R-5, p. 64)

Substitute the word "regional" for the word "particular" for each reference to "particular" synod:
(P - *MGS 1991*, R-16, p. 238; A - *MGS 1992*, R-4, p. 39)
(P - *MGS 1991*, R-17, p. 239; A - *MGS 1992*, R-5, p. 40)

Change designation of "minister of the Word" to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P - *MGS 1992*, R-1, pp. 268-76; A - *MGS 1993*, R-5, p. 55)

Substitute the name "Ministerial Formation Coordinating Agency" for the name "Theological Education Agency":
(P - *MGS 1998*, R-12, pp. 368-74; A - *MGS 1999*, R-53, pp. 229)

Substitute the name "Ministerial Formation Certification Agency" for the name "Ministerial Formation Coordinating Agency":
(*MGS 2007*, R-58 , p. 218)

Correction of cross-references and standardization of numbering:
(Editorial, beginning with 2016 edition)

Change designation of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to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Editorial, beginning with 2017 edition)

Elimination of the word "the" from the phrase "candidate for the ministry": (Editorial, beginning with 2021 edition)

Revision of references to sessions, meetings, and their variations: (Editorial, beginning with 2022 edition)

Revision of geographical references from "state" to "state or province" or "state or provincial" or "state and provincial": (Editorial, beginning with 2022 edition)

Standardization of references to Ministerial Formation Certification Agency: (Editorial, beginning with 2022 edition)

Replacement of "(session)" with "governing body": (Editorial, beginning with 2022 edition)

Changes of "session" to "meeting" and "meeting" to "session": (Editorial, beginning with 2022 edition)

Correction of references to sessions of assemblies: (Editorial, beginning with 2022 edition)

Correction of references to "stated" vs "regular" sessions: (Editorial, beginning with 2022 edition)

Revision of references to quorum requirements: (Editorial, beginning with 2022 edition)

DELETIONS

Several sections of the *Book of Church Order* have been deleted. Deleted sections are as follows:

Elimination of Committee on Necrology:
(P - *MGS 1974*, R-3, pp. 200, 267; A - *MGS 1975*, R-5, p. 103)

Exercising Christian Discipline:
(P - *MGS 1979*, R-2, p. 174; A - *MGS 1980*, R-5, p. 40)

Corresponding Delegates:
(P - *MGS 1979*, R-3, pp. 174-75; A - *MGS 1980*, R-5, p. 40)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5, p. 57)

Corresponding Delegate for Emerging Synod of Canada:
(P - *MGS 1993*, R-9, p. 251; A - *MGS 1994*, R-5, p. 52 and R-1, p. 400)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ssion on Church Order:
(P - *MGS 1981*, R-4, p. 197; A - *MGS 1982*, R-4, p. 41)

Deletion of Editorial Committee:
(P - *MGS 1982* R-2, pp. 183-84; A - *MGS 1983*, R-6, p. 42)

Deletion of Constitutional Inquiry Question:
(P - *MGS 1989*, R-4, p. 195; A - *MGS 1990*, R-6, p. 41)

Minister Emeritus Status:
(P - *MGS 1991*, R-11, p. 233; A - *MGS 1992*, R-4, p. 39)

Particular Synod Representation at the General Synod:
(P - *MGS 1983*, R-3, p. 154; A - *MGS 1984*, R-4, p. 40)

Disbanding of Commission on Evangelization and Church Growth:
(P - *MGS 1985*, R-15, p. 185; A - *MGS 1986*, R-7, p. 40)
(P - *MGS 1980*, R-6, p. 259: A - *MGS 1981*, R-5, p. 43)
(P - *MGS 1981*, R-5, pp. 45, 215; A - *MGS 1982*, R-5, p. 41)
(P - *MGS 1982*, R-7, pp. 174-76; A - *MGS 1983*, R-6, p. 42)

Dispensations for those not enrolled in a Master of Divinity Degree Program:
(P - *MGS 1998*, R-12, p. 373; A - *MGS 1999*, R-53, p. 229)
(P - *MGS 1998*, R-12, p. 373; A - *MGS 2001*, R-7, p. 58)

Classis Provision of Elders for New Churches:
(P - *MGS 1999*, R-52, p. 224;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06*, R-17, pp. 72-73; A - *MGS 2007*, R-3, p. 46)

REWRITE

Chapter 2, "The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was entirely rewritten by a Task Force to Revise Disciplinary and Judicial Procedures (*MGS 1997*, pp. 242-61).
(P - *MGS 1997*, R-5, pp. 245-61; A - *MGS 1998*, R-5 , p. 70)

"General Synod Professors" sections were entirely rewritten by the Task Force on General Synod Professors of Theology.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 p. 42)

Preamble

First paragraph
(P - *MGS 1973*, R-14, p. 200; A - *MGS 1974*, R-1, p. 130)
(P - *MGS 1988*, R-4, p. 228; A - *MGS 1989*, R-5, p. 46)
(P - *MGS 2009*, R-55, p. 247; A - *MGS 2010*, R-5, p. 45)
(P - *MGS 2013*, R-82, p. 360; A - *MGS 2014*, R-2, p. 41)

Second paragraph
(P - *MGS 1971*, R-4, p. 204)
(P - *MGS 1984*, R-1, p. 166; A - *MGS 1985*, R-5, p. 41)
(P - *MGS 1992*, R-1, p. 276;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2*, R-3, p. 278; A - *MGS 1993*, R-5, p. 55)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Third paragraph
(P - *MGS 1971*, R-4, p. 204)

The Nature of the Church on Earth
(P - *MGS 2002*, R-53 amended, p. 231; A - *MGS 2003*, R-3, p. 58)

The Nature of the Church's Authority
(P - *MGS 2002*, R-56, p. 235; A - *MGS 2003*, R-3, p. 58)

Membership Categories and Definitions
(P - *MGS 1990*, R-3, pp. 230-31; *A - MGS 1991*, R-6, p. 49)
(P - *MGS 1995*, R-8, p. 226; A - *MGS 1996*, R-5, p. 64)

The Representative Principle
(P - *MGS 2024*, EC 24-10, pp. 75-77; A - *MGS 2025*, EC 25-2, p. 26)

Government by Elders
(P - *MGS 2002*, R-53 amended, p. 231; A - *MGS 2003*, R-3, p. 58)
(P - *MGS 2024*, EC 24-10, pp. 75-77; A - *MGS 2025*, EC 25-2, p. 26)

The Equality of the Ministry
(P - *MGS 2024*, EC 24-10, pp. 75-77; A - *MGS 2025*, EC 25-2, p. 26)

A Historical Note

(A - *MGS 2002*, R-57 amended, p. 237)
(A - *MGS 2011*, R-45, p. 281)

Chapter 1, Part I—The Consistory

1/I/1/1
(P - *MGS 1996*, R-6, pp. 244-45; A - *MGS 1997*, R-4, p. 63)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P - *MGS 2019*, CO 19-9, pp. 251-52; A - *MGS 2021*, EC 21-8, p. 35)

1/I/1/1d
(P - *MGS 1972*, R-7, p. 195; A - *MGS 1973*, R-6, p. 128)

1/I/1/3
(P - *MGS 1980*, R-23, pp. 275, 286-87; A - *MGS 1981*, R-4, p. 42)
(P - *MGS 1985*, R-11, p. 181; A - *MGS 1986*, R-6, p. 40)
(P - *MGS 1990*, R-4, p. 232; A - *MGS 1991*, R-5, p. 48)
(P - *MGS 2001*, R-88, p. 357; A - *MGS 2002*, R-5, p. 62)
(P - *MGS 2017*, R 17-44, pp. 268-69; A - *MGS 2018*, EC 18-5, p. 40)

1/I/1/4
(P - *MGS 2004*, R-4, p. 54; A - *MGS 2005*, R-4, p. 61)
(P - *MGS 2017*, R 17-44, pp. 268-69; A - *MGS 2018*, EC 18-5, p. 40)

1/I/1/4b (formerly 1/I/1/5)
(P - *MGS 1984*, R-6, p. 180; A - *MGS 1985*, R-5, p. 41)
(P - *MGS 2004*, R-4, p. 54; A - *MGS 2005*, R-4, p. 61)

1/I/1/5 (formerly 1/I/1/7)
(P - *MGS 1990*, R-4, p. 232; A - *MGS 1991*, R-5, p. 48)

1/I/1/6 (formerly 1/I/1/8)
(P - *MGS 1973*, R-5, p. 184; A - *MGS 1974*, R-1, p. 130)
(P - *MGS 1996*, R-6, pp. 244-45; A - *MGS 1997*, R-4, p. 63)
(P - *MGS 2001*, R-86, p. 349; A - *MGS 2002*, R-5, p. 62)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1/7 (formerly 1/I/1/9)
(P - *MGS 1990*, R-4, p. 232; A - *MGS 1991*, R-5, p. 48)

1/I/1/8 (formerly 1/I/1/10)
(P - *MGS 1988*, R-10, p. 239; A - *MGS 1989*, R-5, p. 46)
(P - *MGS 2001*, R-86, p. 349; A - *MGS 2002*, R-5, p. 62)

1/I/1/9 (formerly 1/I/1/11)
(P - *MGS 1990*, R-4, p. 232; A - *MGS 1991*, R-5, p. 48)

1/I/2/1
(P - *MGS 2010*, R-23, p. 113; A - *MGS 2011*, R-3, p. 42)

1/I/2/2
(P - *MGS 1997*, R-1, p. 239; A - *MGS 1998*, R-5, p. 70)
(P - *MGS 2002*, R-53 amended, p. 231; A - *MGS 2003*, R-3, p. 58)
(P - *MGS 2010*, R-22, p. 113; A - *MGS 2011*, R-3, p. 42)

1/I/2/4
(P - *MGS 2000*, R-104 amendment, p. 417; A - *MGS 2001*, R-6, p. 58)
(P - *MGS 2001*, R-88, p. 357; A - *MGS 2002*, R-5, p. 62)
(P - *MGS 2006*, R-16, p. 71; A - *MGS 2007*, R-3, p. 46)
(P - *MGS 2014*, R-55, pp. 265-67; A - *MGS 2015*, R-2, p. 40)

1/I/2/5
(P - *MGS 1996*, R-6, pp. 244-45; A - *MGS 1997*, R-4, p. 63)
(P - *MGS 1999*, R-48, p. 217;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01*, R-87, pp. 351-53; A - *MGS 2002*, R-5, p. 62)

1/I/2/7
(P - *MGS 2003*, R-90, pp. 282-83; A - *MGS 2004*, R-35, p. 161)
(P - *MGS 2014*, R-36, p. 174;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6*, R 16-53, pp. 264-66; A - *MGS 2017*, R 17-5, p. 42)
(P - *MGS 2025*, CO 25-1, pp. 168-170; A - *MGS 2026*, EC 26-2, p. 30)

1/I/2/9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2/11
(P - *MGS 1973*, R-5, p. 184; A - *MGS 1974*, R-1, p. 130)

1/I/2/11a
(P - *MGS 1988*, R-5, p. 229; A - *MGS 1989*, R-5, p. 46)

1/I/2/11c
(P - *MGS 1974*, R-1, p. 189; A - *MGS 1975*, R-2, p. 100)
(P - *MGS 1990*, R-4, p. 233; A - *MGS 1991*, R-5, p. 48)
(P - *MGS 2008*, R-56, p. 242; A - *MGS 2009*, R-3, p. 46)

1/I/2/11e
(P - *MGS 1978*, R-3, p. 245; A - *MGS 1979*, R-4, p. 48)
(P - *MGS 1991*, R-13, pp. 234-35; A - *MGS 1992*, R-4, p. 39)
(P - *MGS 1997*, R-11, pp. 283-84; A - *MGS 1997*, R-19, p. 372)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2/11f
(P - *MGS 2024*, EC 24-12, p. 80; A - *MGS 2025*, EC 25-4, p. 26)

1/I/2/13
(P - *MGS 1979*, R-6, p. 178; A - *MGS 1980*, R-5, p. 40)
(P - *MGS 2011*, R-43, pp. 278-80; A - *MGS 2012*, R-3, p. 47)

1/I/2/14a
(P - *MGS 1970*, R-1, pp. 102-03; A - *MGS 1971*, R-10, p. 152)
(P - *MGS 1971*, p. 289; A - *MGS 1972*, R-6, p. 120)
(P - *MGS 1972*, R-4, p. 194; A - *MGS 1973*, R-6, p. 128)
(P - *MGS 1990*, R-4, p. 233; A - *MGS 1991*, R-5, p. 48)

1/I/2/14c(2)
(P - *MGS 1990*, R-4, p. 233; A - *MGS 1991*, R-5, p. 48)

1/I/2/14c(4)
(P - *MGS 1988*, R-2, p. 226; A - *MGS 1989*, R-5, p. 46)
(P - *MGS 1989*, R-36, p. 233; A - *MGS 1990*, R-6, p. 41)

1/I/2/14d
(P - *MGS 1990*, R-15, p. 243; A - *MGS 1991*, R-6, p. 49)

1/I/2/14f
(P - *MGS 1998*, R-2, p. 292; A - *MGS 1999*, R-8, p. 67)

1/I/2/16
(P - *MGS 198*5, R-8, p. 179; A - *MGS 1986*, R-6, p. 40)

1/I/2/17
(P - *MGS 1983*, R-2, p. 153-54; A - *MGS 1984*, R-4, p. 40)
(P - *MGS 1995*, R-4, p. 380; A - *MGS 1996*, R-5, p. 64)

1/I/2/18
(P - *MGS 1990*, R-4, p. 233; A - *MGS 1991*, R-5, p. 48)

1/I/2/19
(P - *MGS 1979*, R-5, p. 177; A - *MGS 1980*, R-5, p. 40)
(P - *MGS 1987*, R-3, p. 166; A - *MGS 1988*, R-5, p. 46)

1/I/3/1
(P - *MGS 2000*, R-104 amendment, p. 417; A - *MGS 2001*, R-6, p. 58)

1/I/3/2
(P - *MGS 1996*, R-6, pp. 244-45; A - *MGS 1997*, R-4, p. 63)

1/I/3/4
(P - *MGS 2002*, R-55 amended, p. 234; A - *MGS 2003*, R-3, p. 58)

1/I/4/3
(P - *MGS 2012*, R-47, p. 299; A - *MGS 2013*, R-3, p. 51)

1/I/4/4
(P - *MGS 1985*, R-7, p. 193; A - *MGS 1986*, R-6, p. 40)

1/I/5/1
(P - *MGS 1988*, R-1, p. 225; A - *MGS 1989*, R-5, p. 46)

1/I/5/2
(P - *MGS 1969*, R-2, pp. 211-13; A - *MGS 1970*, R-8, p. 141)

1/I/5/2a
(P - *MGS 1975*, R-2, p. 161; A - *MGS 1976*, R-1, p. 46)
(P - *MGS 1978*, R-2, p. 244; A - *MGS 1979*, R-4, p. 48)
(P - *MGS 1990*, R-4, p. 233; A - *MGS 1991*, R-5, p. 48)

1/I/5/2b
(P - *MGS 1990*, R-4, p. 233; A - *MGS 1991*, R-5, p. 48)

1/I/5/2c
(P - *MGS 1990*, R-4, p. 233; A - *MGS 1991*, R-5, p. 48)

1/I/5/2d
(P - *MGS 1973*, R-3, p. 183; A - *MGS 1974*, R-1, p. 130)
(P - *MGS 1990*, R-4, p. 234; A - *MGS 1991*, R-5, p. 48)

1/I/5/2e
(P - *MGS 1990*, R-4, p. 234; A - *MGS 1991*, R-5, p. 48)

1/I/5/2f
(P - *MGS 1990*, R-4, p. 234; A - *MGS 1991*, R-5, p. 48)

1/I/5/2g
(P - *MGS 1990*, R-4, p. 234; A - *MGS 1991*, R-5, p. 48)

1/I/5/2h
(P - *MGS 1980*, R-23, p. 275, 286-87; A - *MGS 1981*, R-4, p. 42)
(P - *MGS 2012*, R-60, p. 324; A - *MGS 2013*, R-3, p. 51)

1/I/5/3b
(P - *MGS 1970*, R-2, p. 200; A - *MGS 1971*, R-10, p. 152)
(P - *MGS 1988*, R-1, pp. 224-25; A - *MGS 1989*, R-5, p. 46)

1/I/5/4
(P - *MGS 1969*, R-2, pp. 211-13; A - *MGS 1970*, R-8, p. 141)
(P - *MGS 1970*, R-2, p. 200; A - *MGS 1971*, R-10, p. 152)
(P - *MGS 1978*, R-4, pp. 245-46; A - *MGS 1979*, R-4, p. 48)
(P - *MGS 1988*, R-1, pp. 224-25; A - *MGS 1989*, R-5, p. 46)
(P - *MGS 1990*, R-4, p. 234; A - *MGS 1991*, R-5, p. 48)

1/I/5/5
(P - *MGS 1970*, R-2, p. 200; A - *MGS 1971*, R-10, p. 152)

1/I/6/1
(P - *MGS 1988*, R-11, p. 239; A - *MGS 1989*, R-5, p. 46)

1/I/6/2
(P - *MGS 1988*, R-11, p. 239; A - *MGS 1989*, R-5, p. 46)

1/I/6/3
(P - *MGS 1987*, R-11, p. 177; A - *MGS 1988*, R-5, p. 46)
(P - *MGS 1988*, R-11, p. 239; A - *MGS 1989*, R-5, p. 46)

1/I/7/1
(P - *MGS 1985*, R-8, p. 179; A - *MGS 1986*, R-6, p. 40)

1/I/7/2a-w
(P - *MGS 2024*, CO 24-3, pp. 241-246; A - *MGS 2025*, EC 25-8, p. 27)

1/I/7/2g
(P - *MGS 1990*, R-4, p. 234; A - *MGS 1991*, R-5, p. 48)

1/I/7/2p
(P - *MGS 2023*, CO 23-1, p. 189; A - *MGS 2024*, EC 24-2, p. 34)

Chapter 1, Part I—The Consistory

1/I/7/2r-u
(P - *MGS 1999*, R-46, p. 215; A - *MGS 2000*, R-3, p. 63)

1/I/7/2u
(P - *MGS* 2007, R-85, p. 300, A - *MGS* 2008, R-3, p. 40)

1/I/7/3
(P - *MGS 2024*, CO 24-3, pp. 241-246; A - *MGS 2025*, EC 25-8, p. 27)

1/I/8
(P - *MGS 2003*, R-47, pp. 204-06; A - *MGS 2004*, R-35, p. 161)

1/I/9
(P - *MGS 2019*, CO 19-1, pp. 236-37; A - *MGS 2021*, EC 21-2, p. 35)

Chapter 1, Part II—The Classis

1/II/1
(P - *MGS 1978*, R-1, pp. 243-44; A- *MGS 1979*, R-4, p. 48)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2/1
(P - *MGS 1973*, R-14, p. 200; A - *MGS 1974,* R-1, p. 130)
(P - *MGS 2010*, R-21, p. 113;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24*, EC 24-11, p. 78; A - *MGS 2025*, EC 25-3, p. 26)

1/II/2/2
(P - *MGS 2002*, R-53 amended, p. 231; A - *MGS 2003*, R-3, p. 58)
(P - *MGS 2010*, R-20, p. 112;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2/7
(P - *MGS 1980*, R-23, pp. 275, 286-87; A - *MGS 1981*, R-4, p. 42)

1/II/2/8
(P - *MGS 1991*, R-9, pp. 231-32; A - *MGS 1992*, R-4, p. 39)
(P - *MGS 2001*, R-87, pp. 351-53; A - *MGS 2002*, R-5, p. 62)
(P - *MGS 2012*, R-60, p. 324; A - *MGS 2013*, R-3, p. 51)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2/1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3/1
(P - *MGS 1969*, R-1, pp. 210-11; A - *MGS 1970*, R-8, p. 141)
(P - *MGS 1990*, R-4, p. 235; A - *MGS 1991*, R-5, p. 48)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5*, R-40, p. 186; A - *MGS 2016*, R 16-2, p. 36)
(P - *MGS 2024*, CO 24-1, pp. 238-239; A - *MGS 2025*, EC 25-7, p. 27)

1/II/3/2
(P - *MGS 1972*, R-7, p. 195; A - *MGS 1973*, R-6, p. 128)

1/II/3/3
(P - *MGS 1993*, R-5, p. 248; A - *MGS 1994*, R-4, p. 51)

1/II/3/4
(P - *MGS 1990*, R-4, p. 235; A - *MGS 1991*, R-5, p. 48)

1/II/4/1
(P - *MGS 1972*, R-2, p. 194; A - *MGS 1973*, R-6, p. 128)
(P - *MGS 1978*, R-14, p. 109; A - *MGS 1979*, R-4, p. 48)
(P - *MGS 1991*, R-14, p. 236; A - *MGS 1992*, R-4, p. 39)
(P - *MGS 2010*, R-83, pp. 325-26;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4*, R-55, pp. 265-67;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4/2
(P - *MGS 1970*, R-1, p. 199; A - *MGS 1971*, R-10, p. 152)
(P - *MGS 1978*, R-5, p. 246; A - *MGS 1979*, R-4, p. 48)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4/3
(P - *MGS 1970*, R-1, p. 196; A - *MGS 1971*, R-10, p. 152)
(P - *MGS 1971*, R-2, p. 199; A - *MGS 1972*, R-6, p. 120)
(P - *MGS 1991*, R-14, pp. 235-36; A - *MGS 1992*, R-4, p. 39)

1/II/5/2
(P - *MGS 1985*, R-7, p. 178; A - *MGS 1986*, R-6, p. 40)

1/II/6/4
(P - *MGS 1993*, R-5, p. 248; A - *MGS 1994*, R-4, p. 51)
(P - *MGS 1997*, R-3, p. 240; A - *MGS 1998*, R-5, p. 7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6/5
(P - *MGS 1993*, R-20, p. 282; A - *MGS 1994*, R-4, p. 51)

1/II/7/1
(P - *MGS 2011*, R-42, pp. 276-77; A - *MGS 2012*, R-3, p. 47)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7/1a
(P - *MGS 1985*, R-4, p. 177; A - *MGS 1986*, R-6, p. 40)

1/II/7/1b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c
(P - *MGS 2013*, R-32, p. 140;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d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e (formerly 1/II/7/1d)
(P - *MGS 1995*, R-19, pp. 246-47; A - *MGS 1996*, R-5, p. 64)
(P - *MGS 1998*, R-1, p. 291; A - *MGS 1999*, R-8, p. 67)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f (formerly 1/II/7/1e)
(P - *MGS 1982*, R-1, pp. 166-67; A - *MGS 1983*, R-5, p. 42)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g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h (formerly 1/II/7/1g)
(P - *MGS 1972*, R-5, p. 194; A - *MGS 1973*, R-1, p. 128)
(P - *MGS 1996*, R-6, pp. 244-47; A - *MGS 1997*, R-4, p. 63)

1/II/7/1i (formerly 1/II/7/1h)
(P - *MGS 1975*, R-1, p. 160; A - *MGS 1976*, R-1, p. 46)
(P - *MGS 1977*, R-1, p. 320; A - *MGS 1978*, R-1, p. 34)
(P - *MGS 1985*, R-4, p. 177; A - *MGS 1986*, R-6, p. 40)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j (formerly 1/II/7/1i)
(P - *MGS 1972*, R-6, p. 195; A - *MGS 1973*, R-6, p. 128)
(P - *MGS 1985*, R-4, p. 177; A - *MGS 1986*, R-6, p. 40)

1/II/7/1k (formerly 1/II/7/1j)
(P - *MGS 1988*, R-4, p. 224; A - *MGS 1989*, R-4, p. 46)
(P - *MGS 1991*, p. 248; A - *MGS 1992*, R-4, p. 39)

1/II/7/1l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m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7/1n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7/2
(P - *MGS 1988*, R-17, p. 246; A - *MGS 1989*, R-5, p. 46)

1/II/7/3
(P - *MGS 2008*, R-59, p. 249; A - *MGS 2009*, R-3, p. 46)
(P - *MGS 2014*, R-51, p. 239;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5, p. 270; A - *MGS 2018*, EC 18-6, p. 40)
(P - *MGS 2024*, RF 24-7, p. 137; A - *MGS 2025*, EC 25-9, p. 27)

1/II/7/4
(P - *MGS 1987*, R-15, p. 180; A - *MGS 1988*, R-5, p. 46)
(P - *MGS 1996*, R-6, pp. 244-47; A - *MGS 1997*, R-4, p. 63)

1/II/7/5
(P - *MGS 1987*, R-15, p. 180; A - *MGS 1988*, R-5, p. 46)

1/II/7/6
(P - *MGS 1987*, R-2, p. 165; A - *MGS 1988*, R-5, p. 46)

1/II/7/7
(P - *MGS 1987*, R-15, p. 180; A - *MGS 1988*, R-5, p. 46)
(P - *MGS 2016*, R 16-50, p. 262; A - *MGS 2017*, R 17-3, p. 42)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I/7/8
(P - *MGS 1987*, R-15, p. 181; A - *MGS 1988*, R-5, p. 46)
(P - *MGS 1999*, R-49, p. 217;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6*, R 16-50, p. 262; A - *MGS 2017*, R 17-3, p. 42)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I/7/9
(P - *MGS 1996*, R-6, pp. 244-47; A - *MGS 1997*, R-4, p. 63)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7/10
(P - *MGS 1975*, R-3, p. 161; A - *MGS 1976*, R-1, p. 46)

1/II/9/1e-h (formerly 1/II/7/12e-h)
(P - *MGS 2009*, R-59, pp. 291-92; A - *MGS 2010*, R-4, p. 44)

1/II/9/1i (formerly 1/II/7/12i)
(P - *MGS 1973*, R-4, p. 181; A - *MGS 1974*, R-1, p. 130)
(P - *MGS 1987*, R-1, pp. 164-65; A - *MGS 1988*, R-5, p. 48)
(P - *MGS 1990*, R-4, p. 235; A - *MGS 1991*, R-5, p. 48)
(P - *MGS 2009*, R-59, pp. 291-92; A - *MGS 2010*, R-4, p. 44)

1/II/9/1j (formerly 1/II/7/12j)
(P - *MGS 2009*, R-60, p. 292; A - *MGS 2010*, R-4, p. 44)

1/II/9/2 (formerly 1/II/7/13)
(P - *MGS 1973*, R-4, p. 181; A - *MGS 1974*, R-1, p. 130)
(P - *MGS 1991*, R-15, pp. 236-37; A - *MGS 1992*, R-4, p. 39)
(P - *MGS 2009*, R-61, pp. 293-94; A - *MGS 2010*, R-4, p. 44)
(P - *MGS 2010*, R-83, pp. 325-26;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4*, R-55, pp. 265-67;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3, pp. 264-66; A - *MGS 2018*, EC 18-4, p. 40)

1/II/9/3 (formerly 1/II/7/14)
(P - *MGS 1973*, R-4, p. 181; A - *MGS 1974*, R-1, p. 130)
(P - *MGS 2009*, R-61, pp. 293-94; A - *MGS 2010*, R-4, p. 44)
(P - *MGS 2010*, R-83, pp. 325-26;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4*, R-55, pp. 265-67;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3, pp. 264-66; A - *MGS 2018*, EC 18-4, p. 40)

1/II/9/4 (formerly 1/II/7/15)
(P - *MGS 1987*, R-1, p. 165; A - *MGS 1988*, R-5, p. 46)
(P - *MGS 2009*, R-61, pp. 293-94; A - *MGS 2010*, R-4, p. 44)
(P - *MGS 2010*, R-83, pp. 325-26;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4*, R-55, pp. 265-67;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3, pp. 264-66; A - *MGS 2018*, EC 18-4, p. 40)

1/II/9/5
(P - *MGS 2017*, R 17-43, pp. 264-66; A - *MGS 2018*, EC 18-4, p. 40)

1/II/9/6
(P - *MGS 2017*, R 17-43, pp. 264-66; A - *MGS 2018*, EC 18-4, p. 40)

1/II/10/1 (formerly 1/II/7/16)
(P - *MGS 2008*, R-58, p. 247-48; A - *MGS 2009*, R-3, p. 46)
(P - *MGS 2011*, R-43, p. 278-80; A - *MGS 2012*, R-3, p. 47)

1/II/10/1d (formerly 1/II/7/16d)
(P - *MGS 1973*, R-4, p. 181; A - *MGS 1974*, R-1, p. 130)
(P - *MGS 2008*, R-58, pp. 247-48; A - *MGS 2009*, R-3, p. 46)

1/II/10/2 (formerly 1/II/7/17)
(P - *MGS 2008*, R-58, pp. 247-48; A - *MGS 2009*, R-3, p. 46)
(P - *MGS 2016*, R 16-52, p. 263-64; A - *MGS 2017*, R 17-4, p. 42)

1/II/10/3a-c (formerly 1/II/7/18a-c)
(P - *MGS 1992*, R-6, p. 280; A - *MGS 1993*, R-5, p. 55)

1/II/10/3c (formerly 1/II/7/18c)
(P - *MGS 1974*, R-2, p. 190; A - *MGS 1975*, R-2, p. 100)

1/II/10/4a-b (formerly 1/II/7/19a-b)
(P - *MGS 2003*, R-48, pp. 206-07; A - *MGS 2004*, R-37, p. 162)
(P - *MGS 2005*, R-31, p. 113; A - *MGS 2006*, R-5, p. 51)

1/II/10/4g (formerly 1/II/7/19g)
(P - *MGS 1974*, R-2, p. 190; A - *MGS 1975*, R-2, p. 100)
(P - *MGS 1990*, R-4, p. 235; A - *MGS 1991*, R-5, p. 48)

1/II/10/5e (formerly 1/II/7/20e)
(P - *MGS 1974*, R-2, p. 190; A - *MGS 1975*, R-2, p. 100)

1/II/10/6 (formerly 1/II/7/21)
(P - *MGS 1974*, R-2, p. 190; A - *MGS 1975*, R-2, p. 100)

1/II/10/7c (formerly 1/II/7/22c)
(P - *MGS 1974*, R-2, p. 190; A - *MGS 1975*, R-2, p. 100)

1/II/10/7d (formerly 1/II/7/22d)
(P - *MGS 1999*, R-52, p. 224; A - *MGS 2000*, R-3, p. 63)

1/II/11 (formerly 1/II/8)
(P - *MGS 1969*, R-3, pp. 213-16; A - *MGS 1970*, R-8, p. 141)
(P - *MGS 1971*, R-79, p. 273; A - *MGS 2003*, R-3, p. 58)

1/II/11/3 (formerly 1/II/8/3)
(P - *MGS 1989*, R-2, p. 193; A - *MGS 1990*, R-6, p. 40)
(P - *MGS 1993*, R-15, pp. 264-65; A - *MGS 1994*, R-4, p. 51)
(P - *MGS 2002*, R-79, p. 273; A - *MGS 2003*, R-3, p. 58)
(P - *MGS 2004*, R-58, p. 216; A - *MGS 2005*, R-4, p. 61)
(P - *MGS 2013*, R-24, p. 130;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I/11/4 (formerly 1/II/8/4)
(P - *MGS 1970*, R-7, p. 198; A - *MGS 1971*, R-10, p. 152)
(P - *MGS 1998*, R-12, p. 370; A - *MGS 1999*, R-53, p. 229)

1/II/11/6 (formerly 1/II/8/6)
(P - *MGS 1999*, R-45, p. 212; A - *MGS 2000*, R-3, p. 63)

1/II/11/7 (formerly 1/II/8/7)
(P - *MGS 1999*, R-45, p. 212;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13*, R-25, pp. 130-31;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I/11/8 (formerly 1/II/8/8)
(P - *MGS 1999*, R-45, p. 212;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13*, R-26, p. 131; A - *MGS 2014*, R-2, p. 41)

1/II/11/9 (formerly I/II/8/9)
(P - *MGS 1985*, R-1, p. 175; A - *MGS 1986*, R-6, p. 40)
(P - *MGS 2013*, R-27, p. 132; A - *MGS 2014*, R-2, p. 41)

1/II/12/1 (formerly 1/II/9/1)
(P - *MGS 1985*, R-1, p. 175; A - *MGS 1986*, R-6, p. 40)
(P - *MGS 1993*, R-15, pp. 264-65; A - *MGS 1994*, R-4, p. 51)
(P - *MGS 2013*, R-28, pp. 132-33;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22*, TE 22-2, pp. 262-264; A - *MGS 2023*, EC 23-2, p. 31)

1/II/12/1a (formerly 1/II/9/1a)
(P - *MGS 1972*, R-1, p. 194; A - *MGS 1973*, R-6, p. 128)
(P - *MGS 1989*, R-2, p. 193; A - *MGS 1990*, R-6, p. 40)

1/II/12/1b (formerly 1/II/9/1b)
(P - *MGS 1972*, R-1, p. 194; A - *MGS 1973*, R-6, p. 128)
(P - *MGS 1985*, R-1, p. 175; A - *MGS 1986*, R-6, p. 40)
(P - *MGS 1990*, R-17, p. 249; A - *MGS 1991*, R-6, p. 48)

1/II/12/1c (formerly 1/II/9/1c)
(P - *MGS 1972*, R-1, p. 194; A - *MGS 1973*, R-6, p. 128)

1/II/12/2a (formerly 1/II/9/2a)
(P - *MGS 1993*, R-15, pp. 264-65; A - *MGS 1994*, R-4, p. 51)
(P - *MGS 2013*, R-28, pp. 132-33;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22*, TE 22-2, pp. 262-264; A - *MGS 2023*, EC 23-2, p. 31)

1/II/12/2b (formerly 1/II/9/2b)
(P - *MGS 1992*, R-20, p. 66;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3*, R-15, pp. 264, 66; A - *MGS 1994*, R-4, p. 51)
(P - *MGS 1998*, R-12, p. 369; A - *MGS 1999*, R-53, p. 229)

1/II/12/2c (formerly 1/II/9/2c)
(P - *MGS 1993*, R-15, pp. 264, 66; A - *MGS 1994*, R-4, p. 51)
(P - *MGS 2004*, R-54, p. 206; A - *MGS 2005*, R-4, p. 61)
(P - *MGS 2022*, TE 22-2, pp. 262-264; A - *MGS 2023*, EC 23-2, p. 31)

1/II/12/3
(P - *MGS 2022*, TE 22-2, pp. 262-264; A - *MGS 2023*, EC 23-2, p. 31)

1/II/12/4 (formerly 1/II/12/3; formerly 1/II/9/3)
(P - *MGS 2000*, R-103, p. 415; A - *MGS 2001*, R-6, p. 58)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I/12/5 (formerly 1/II/12/4; formerly 1/II/9/4)
(P - *MGS 1998*, R-12, p. 371; A - *MGS 1999*, R-53, p. 229
(P - *MGS 2014*, R-53, pp. 243-44;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I/12/5b (formerly 1/II/12/4b; formerly 1/II/9/4b)
(P - *MGS 2001*, R-91, p. 364; A - *MGS 2002*, R-5, p. 62)
(P - *MGS 2015*, R-56, p. 264; A - *MGS 2016*, R 16-2, p. 36)
(P - *MGS 2022*, TE 22-2, pp. 262-264; A - *MGS 2023*, EC 23-2, p. 31)

1/II/13 (formerly 1/II/10)
(P - *MGS 1969*, R-3, pp. 213-16; A - *MGS 1970*, R-8, p. 141)

1/II/13/4c (formerly 1/II/10/4c)
(P - *MGS 1974*, R-7, p. 202; A - *MGS 1975*, R-2, p. 100)
(P - *MGS 1982*, R-2, p. 169; A - *MGS 1983*, R-5, p. 42)

1/II/13/5 (formerly 1/II/10/5)
(P - *MGS 1973*, R-14, p. 200; A - *MGS 1974*, R-1, p. 130)
(P - *MGS 1995*, R-4, pp. 380-81; A - *MGS 1996*, R-5, p. 64)
(P - *MGS 2011*, R-44, p. 280; A - *MGS 2012*, R-3, p. 47)

1/II/13/6 (formerly 1/II/10/6)
(P - *MGS 2011*, R-43, p. 278-80; A - *MGS 2012*, R-3, p. 47)
(P - *MGS 2019*, CO 19-10, p. 252-53; A - *MGS 2021*, EC 21-9, p. 35)

1/II/14/1 (formerly 1/II/11/1)
(P - *MGS 1986*, R-8, pp. 211-12; A - *MGS 1987*, R-4, p. 40)
(P - *MGS 1995*, R-4, pp. 380-81; A - *MGS 1996*, R-5, p. 64)

1/II/14/2 (formerly 1/II/11/2)
(P - *MGS 1986*, R-8, pp. 211-12; A - *MGS 1987*, R-4, p. 40)

1/II/14/3 (formerly 1/II/11/3)
(P - *MGS 1979*, R-27, p. 205; A - *MGS 1980*, R-5, p. 40)
(P - *MGS 1981*, R-1, pp. 194-95; A - *MGS 1982*, R-4, p. 41)
(P - *MGS 1986*, R-8, pp. 211-12; A - *MGS 1987*, R-4, p. 40)
(P - *MGS 2009*, R-62, pp. 296-98; A - *MGS 2010*, R-4, p. 44)

1/II/14/4 (formerly 1/II/11/4)
(P - *MGS 1998*, R-4, p. 294; A - *MGS 1999*, R-8, p. 67)
(P - *MGS 2009*, R-62, pp. 296-98; A - *MGS 2010*, R-4, p. 44)

1/II/14/5 (formerly 1/II/11/5)
(P - *MGS 2009*, R-62, p. 296-98; A - *MGS 2010*, R-4, p. 44)

1/II/14/5d (formerly 1/II/11/5d)
(P - *MGS 1986*, R-8, pp. 210-11; A - *MGS 1987*, R-4, p. 40)
(P - *MGS 2009*, R-62, pp. 296-98; A - *MGS 2010*, R-4, p. 44)

1/II/14/6 (formerly 1/II/11/6)
(P - *MGS 1985*, R-6, p. 177; A - *MGS 1986*, R-6, p. 40)
(P - *MGS 1986*, R-8, pp. 211-12; A - *MGS 1987*, R-4, p. 40)
(P - *MGS 1993*, R-15, pp. 264, 67; A - *MGS 1994*, R-4, p. 51)

1/II/15/1 (formerly 1/II/12/1)
(P - *MGS 1977*, R-1, pp. 314-15; A - *MGS 1978*, R-1, p. 34)
(P - *MGS 1984*, R-7, p. 180; A - *MGS 1985*, R-5, p. 41)

1/II/15/1a (formerly 1/II/12/1a)
(P - *MGS 1977*, R-1, pp. 314-15; A - *MGS 1978*, R-1, p. 34)
(P - *MGS 1985*, R-10, p. 180; A - *MGS 1986*, R-6, p. 40)
(P - *MGS 2001*, R-87, pp. 351-53; A - *MGS 2002*, R-5, p. 62)

1/II/15/1c (formerly 1/II/12/1c)
(P - *MGS 1985*, R-10, p. 180; A - *MGS 1986*, R-6, p. 40)
(P - *MGS 2001*, R-87, pp. 351-53; A - *MGS 2002*, R-5, p. 62)

1/II/15/1d (formerly 1/II/12/1d)
(P - *MGS 2001*, R-87, pp. 351-53; A - *MGS 2002*, R-5, p. 62)

1/II/15/1e (formerly 1/II/12/1e)
(P - *MGS 1985*, R-10, p. 180; A - *MGS 1986*, R-6, p. 40)
(P - *MGS 1988*, R-6, p. 230; A - *MGS 1989*, R-5, p. 46)

1/II/15/2 (formerly 1/II/12/2)
(P - *MGS 1977*, R-1, pp. 314-15; A - *MGS 1978*, R-1, p. 34)
(P - *MGS 1985*, R-10, p. 180; A - *MGS 1986*, R-6, p. 40)
(P - *MGS 1988*, R-6, p. 230; A - *MGS 1989*, R-5, p. 40)

1/II/15/3 (formerly 1/II/12/3)
(P - *MGS 1980*, R-1, p. 248; A - *MGS 1981*, R-4, p. 42)
(P - *MGS 2003*, R-90, pp. 282-83; A - *MGS 2004*, R-35, p. 161)
(P - *MGS 2014*, R-37, p. 175;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6*, R 16-53, p. 264-66; A - *MGS 2017*, R 17-5, p. 42)
(P - *MGS 2025*, CO 25-1, pp. 168-170; A - *MGS 2026*, EC 26-2, p. 30)

1/II/15/4 (formerly 1/II/12/4)
(P - *MGS 2001*, R-87, pp. 351-53; A - *MGS 2002*, R-5, p. 62)

1/II/15/4a (formerly 1/II/12/4a)
(P - *MGS 1997*, R-4, p. 242; A - *MGS 1998*, R-5, p. 70)

1/II/15/4b (formerly 1/II/12/4b)
(P - *MGS 1989*, R-5, pp. 195-96; A - *MGS 1990*, R-6, p. 40)

1/II/15/5 (formerly 1/II/12/5)
(P - *MGS 1991*, R-2, p. 224; A - *MGS 1992*, R-4, p. 39)
(P - *MGS 2024*, EC 24-13, p. 82; A - *MGS 2025*, EC 25-5, p. 26)

1/II/15/6 (formerly 1/II/12/6)
(P - *MGS 2004*, R-1, p. 50; A - *MGS 2005*, R-4, p. 61)

1/II/15/9 (formerly 1/II/12/9)
(P - *MGS 1999*, R-42, p. 209;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19*, CO 19-8, p. 251; A - *MGS 2021*, EC 21-7, p. 35)

1/II/15/10 (formerly 1/II/12/10)
(P - *MGS 1996*, R-6, pp. 244-47; A - *MGS 1997*, R-4, p. 63)
(P - *MGS 2001*, R-87, pp. 351-53; A - *MGS 2002*, R-5, p. 62)

1/II/15/11a (formerly 1/II/12/11a)
(P - *MGS 1984*, R-4, p. 168; A - *MGS 1985*, R-5, p. 41)

1/II/15/11b (formerly 1/II/12/11b)
(P - *MGS 1974*, R-4, p. 201; A - *MGS 1975*, R-2, p. 100)
(P - *MGS 1984*, R-4, p. 168; A - *MGS 1985*, R-5, p. 41)

1/II/15/11c (formerly 1/II/12/11c)
(P - *MGS 1974*, R-4, p. 201; A - *MGS 1975*, R-2, p. 100)
(P - *MGS 1984*, R-4, p. 168; A - *MGS 1985*, R-5, p. 41)

1/II/15/11d (formerly 1/II/12/11d)
(P - *MGS 1974*, R-4, p. 201; A - *MGS 1975*, R-2, p. 100)
(P - *MGS 1984*, R-4, p. 168; A - *MGS 1985*, R-5, p. 41)
(P - *MGS 1991*, R-11, p. 233; A - *MGS 1992*, R-4, p. 39)

1/II/15/12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P - *MGS 2019*, CO 19-6, p. 249-50; A - *MGS 2021*, EC 21-5, p. 35)

1/II/15/13a (formerly 1/II/12/13a)
(P - *MGS 1977*, R-2, p. 316; A - *MGS 1978*, R-1, p. 34)
(P - *MGS 1982*, R-4, p. 170; A - *MGS 1983*, R-5, p. 42)
(P - *MGS 1983*, R-18, p. 219; A - *MGS 1984*, R-4, p. 40)
(P - *MGS 1991*, R-10, p. 232; A - *MGS 1992*, R-4, p. 39)
(P - *MGS 2019*, CO 19-3, p. 247-48; A - *MGS 2021*, EC 21-3, p. 35)

1/II/15/13b (formerly 1/II/12/13b)
(P - *MGS 1991*, R-10, p. 232; A - *MGS 1992*, R-4, p. 39)

1/II/15/13c (formerly 1/II/12/13c)
(P - *MGS 1991*, R-12, p. 234; A - *MGS 1992*, R-4, p. 39)

1/II/15/14 (formerly 1/II/12/14)
(P - *MGS 2012*, R-50, p. 303; A - *MGS 2013*, R-3, p. 51)

1/II/15/15 (formerly 1/II/12/15); (formerly 1/II/12/16)
(P - *MGS 1980*, R-23, pp. 275, 286-87; A - *MGS 1981*, R-4, p. 42)
(P - *MGS 1993*, R-19, p. 282; A - *MGS 1994*, R-4, p. 51)
(P - *MGS 2012*, R-60, p. 324; A - *MGS 2013*, R-3, p. 51)

1/II/15/15 (formerly 1/II/12/15)
(P - *MGS 1984*, R-18, p. 188; A - *MGS 1985*, R-5, p. 41)
(P - *MGS 1988*, R-18, p. 246; A - *MGS 1989*, R-5, p. 46)
(P - *MGS 1996*, R-5, pp. 243-44; A - *MGS 1997*, R-4, p. 63)
(P - *MGS 2001*, R-88, p. 357; A - *MGS 2002*, R-5, p. 62)
(P - *MGS 2012*, R-60, p. 324; A - *MGS 2013*, R-3, p. 51)

1/II/16 (formerly 1/II/13)
(P - *MGS 1997*, R-11, pp. 283-85; A - *MGS 1998*, R-19, p. 379)

1/II/16/1
(P - *MGS 2014*, R-54, pp. 245-50; A - *MGS 2015*, R-2, p. 40)

1/II/17 (formerly 1/II/14)
(P - *MGS 2003*, R-49, pp. 209-11; A - *MGS 2004*, R-38, p. 162)
(P - *MGS 2011*, R-41, p. 275; A - *MGS 2012*, R-3, p. 47)

1/II/17/1 (formerly 1/II/14/1)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2 (formerly 1/II/14/2)
(P - *MGS 2006*, R-15, p. 69; A - *MGS 2007*, R-3, p. 46)

1/II/17/2b (formerly 1/II/17/3)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2c (formerly 1/II/17/4); (formerly 1/II/14/4)
(P - *MGS 2011*, R-40, p. 275; A - *MGS 2012*, R-3, p. 47)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2d
(P - *MGS 2024*, EC 24-14, p. 83; A - *MGS 2025*, EC 25-6, p. 26)

1/II/17/3a (formerly 1/II/17/5)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3b (formerly 1/II/17/6); (formerly 1/II/14/6)
(P - *MGS 2011*, R-39, pp. 274-75; A - *MGS 2012*, R-3, p. 47)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3c (formerly 1/II/17/7)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4a (formerly 1/II/17/8)
(P - *MGS 2014*, R-52, p. 239;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4b (formerly 1/II/17/9)
(P - *MGS 2014*, R-55, pp. 265-67; A - *MGS 2015*, R-2, p. 4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4c (formerly 1/II/17/10)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4d (formerly 1/II/17/11)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4e (formerly 1/II/17/12); (formerly 1/II/14/12)
(P - *MGS 2011*, R-38, p. 274; A - *MGS 2012*, R-3, p. 47)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4f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1/II/17/4g (formerly 1/II/17/13); (formerly 1/II/14/13)
(P - *MGS 2011*, R-38, p. 274; A - *MGS 2012*, R-3, p. 47)
(P - *MGS 2017*, R 17-41, pp. 257-63; A - *MGS 2018*, EC 18-2, p. 40)

Chapter 1, Part III—The Regional Synod

1/III/1/1
(P - *MGS 1972*, R-3, p. 194; A - *MGS 1973*, R-6, p. 128)
(P - *MGS 1980*, R-2, p. 249; A - *MGS 1981*, R-4, p. 42)

1/III/1/2
(P - *MGS 1972*, R-3, p. 194; A - *MGS 1973*, R-6, p. 128)

1/III/1/3
(P - *MGS 1972*, R-3, p. 194; A - *MGS 1973*, R-6, p. 128)

1/III/2/3
(P - *MGS 2016*, R 16-49, p. 259; A - *MGS 2017*, R 17-2, p. 42)
(P - *MGS 2018*, CO 18-2, pp. 259-60; A - *MGS 2019*, EC 19-3, p. 38)

1/III/3/1
(P - *MGS 1990*, R-4, p. 236; A - *MGS 1991*, R-5, p. 48)

1/III/3/2
(P - *MGS 1997*, R-2, p. 240; A - *MGS 1998*, R-5, p. 70)

1/III/4/2
(P - *MGS 1996*, R-23, p. 287; A - *MGS 1997*, R-4, p. 63)

1/III/4/3
(P - *MGS 1970*, R-2, p. 196; A - *MGS 1971*, R-10, p. 152)

1/III/5/4
(P - *MGS 1985*, R-7, p. 178; A - *MGS 1986*, R-6, p. 40)

1/III/6/2
(P - *MGS 1987*, R-16, p. 181; A - *MGS 1988*, R-5, p. 47)

1/III/6/4
(P - *MGS 1987*, R-16, p. 181; A - *MGS 1988*, R-5, p. 47)
(P - *MGS 1999*, R-47, p. 216; A - *MGS 2000*, R-3, p. 63)

1/III/6/5
(P - *MGS 1997*, R-2, p. 240; A - *MGS 1998*, R-5, p. 70)

1/III/7
(P - *MGS 2002*, R-56, p. 235; A - *MGS 2003*, R-3, p. 58)

Chapter 1, Part IV—The General Synod

1/IV/1
(P - *MGS 1973*, R-2, p. 183; A - *MGS 1974*, R-1, p. 130)
(P - *MGS 1979*, R-4, p. 176; A - *MGS 1980*, R-5, p. 40)
(P - *MGS 1982*, R-7, pp. 174-76; A - *MGS 1983*, R-5, p. 42)
(P - *MGS 1984*, R-8, p. 173; A - *MGS 1985*, R-5, p. 41)
(P - *MGS 1990*, R-4, p. 236; A - *MGS 1991*, R-5, p. 48)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2*, R-11, p. 61;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2*, R-8, p. 282;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4*, pp. 250-51; A - *MGS 1995*, R-6, p. 51)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7*, R 17-42, p. 263; A - *MGS 2018*, EC 18-3, p. 40)
(P - *MGS 2025*, CO 25-2, pp. 171-172; A - *MGS 2026*, EC 26-3, p. 30)

1/IV/2/7
(P - *MGS 1987*, R-4, p. 168; A - *MGS 1988*, R-5, p. 47)

1/IV/2/8
(P - *MGS 1998*, p. 370; A - *MGS 1999*, R-53, p. 229)

1/IV/2/10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5, p. 55)

1/IV/2/11
(P - *MGS 1987*, R-4, pp. 168-69; A - *MGS 1988*, R-5, p. 47)

1/IV/3/1
(P - *MGS 1990*, R-4, p. 237; A - *MGS 1991*, R-5, p. 48)

1/IV/3/4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1/IV/3/5
(P - *MGS 2017*, R 17-42, p. 263; A - *MGS 2018*, EC 18-3, p. 40)

1/IV/3/6
(P - *MGS 1969*, R-3, p. 231; A - *MGS 1970*, R-8, p. 141)
(P - *MGS 1989*, R-9, p. 200; A - *MGS 1990*, R-6, p. 40)

1/IV/3/7
(P - *MGS 1989*, R-9, p. 200; A - *MGS 1990*, R-6, p. 40)
(P - *MGS 2025*, CO 25-5, p. 176; A - *MGS 2026*, EC 26-5, p. 30)

1/IV/4/1
(P - *MGS 2021*, CO 21-4, pp. 239-40; A - *MGS 2022*, EC 22-4, p. 32)
(P - *MGS 2025*, CO 25-4, pp. 174-175; A - *MGS 2026*, EC 26-4, p. 30)

1/IV/4/3
(P - *MGS 1970*, R-3, p. 196; A - *MGS 1971*, R-10, p. 152)

1/IV/5/1
(P - *MGS 2004*, R-18 amended, p. 106; A - *MGS 2005*, R-4, p. 61)

1/IV/5/3
(P - *MGS 1985*, R-7, p. 178; A - *MGS 1986*, R-6, p. 40)
(P - *MGS 1992*, R-16, p. 62; A - *MGS 1993*, R-5, p. 55)

1/IV/7/1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5, p. 55)
(P - *MGS 2002*, R-60 amended, p. 247; A - *MGS 2003*, R-3, p. 58)

1/IV/7/4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5, p. 55)

1/IV/8/1
(P - *MGS 1989*, R-18, p. 214; A - *MGS 1990*, R-6, p. 40)
(P - *MGS 1992*, R-20, p. 66;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2*, R-5, p. 279;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3*, R-15, pp. 265, 67; A - *MGS 1994*, R-4, p. 51)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Chapter 1, Part IV—The General Synod

1/IV/8/2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1/IV/8/3
(P - *MGS 1983*, R-1, p. 153; A - *MGS 1984*, R-4, p. 40)
(P - *MGS 1989*, R-18, pp. 214-15; A - *MGS 1990*, R-6, p. 40)
(P - *MGS 1992*, R-20, p. 66;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3*, R-15, pp. 264, 68; A - *MGS 1994*, R-4, p. 51)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V/8/4
(P - *MGS 1989*, R-18, p. 215; A - *MGS 1990*, R-6, p. 40)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1/IV/8/5
(P - *MGS 1989*, R-18, p. 215; A - *MGS 1990*, R-6, p. 40)
(P - *MGS 1992*, R-20, p. 66; A - *MGS 1993*, R-5, p. 55)
(P - *MGS 1992*, R-4, p. 279; A - *MGS 1993*, R-5, p. 55)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1/IV/8/6
(P - *MGS 2003*, R-90, pp. 282-83; A - *MGS 2004*, R-35, p. 161)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1/IV/8/7
(P - *MGS 1989*, R-18, p. 215; A - *MGS 1990*, R-6, p. 40)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V/8/8
(P - *MGS 1989*, R-18, p. 215; A *MGS 1990*, R-6, p. 40)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22*, TE 22-1, pp. 253-256; A - *MGS 2023*, EC 23-3, p. 31)

1/IV/8/9
(P - *MGS 1989*, R-18, p. 216; A - *MGS 1990*, R-6, p. 40)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Rules and Amendments of The Government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and Disciplinary Procedures

(P - *MGS 2018*, CO 18-1, pp. 257-58; A - *MGS 2019*, EC 19-2, p. 38)
(P - *MGS 2021*, CO 21-5, pp. 240-41; A - *MGS 2022*, EC 22-5, p. 32)

Chapter 2, Part I—Discipline

2/I/1-6
(P - *MGS 1997*, R-5, pp. 245-61; A - *MGS 1998*, R-5, p. 70)

2/I/1/2
(P - *MGS 2000*, R-97, p. 407; A - *MGS 2001*, R-6, p. 58)

2/I/2/2
(P - *MGS 2000*, R-98, p. 408; A - *MGS 2001*, R-6, p. 58)

Chapter 2, Part I—Discipline

2/I/2/3
(P - *MGS 2000*, R-98, p. 408; A - *MGS 2001*, R-6, p. 58)
(P - *MGS 2004*, R-7, p. 57; A - *MGS 2005*, R-4, p. 61)

2/I/3/1
(P - *MGS 2021*, CO 21-7, p. 242; A - *MGS 2022*, EC 22-6, p. 32)

2/I/3/3
(P - *MGS 2010*, R-82, p. 324; A - *MGS 2011*, R-3, p. 42)

2/I/3/4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2/I/3/5
(P - *MGS 2000*, R-99, p. 412; A - *MGS 2001*, R-6, p. 58)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2/I/3/6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2/I/4/4
(P - *MGS 2011*, R-46, pp. 282-83; A - *MGS 2012*, R-3, p. 47)

2/I/4/6
(P - *MGS 2009*, R-58, p. 290; A - *MGS 2010*, R-4, p. 44)

2/I/5/12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Chapter 2, Part II—Complaints

2/II/1
(P - *MGS 1997*, R-5, pp. 245-61; A - *MGS 1998*, R-5, p. 70)

2/II/1/1
(P - *MGS 2003*, R-50, pp. 211-12; A - *MGS 2004*, R-35, p. 161)

2/II/1/2
(P - *MGS 1997*, R-5, pp. 245-61; A - *MGS 1998*, R-5, p. 70)
(P - *MGS 1999*, R-44, p. 211;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03*, R-50, pp. 211-12; A - *MGS 2004*, R-35, p. 161)

2/II/1/3
(P - *MGS 2003*, R-50, pp. 211-12; A - *MGS 2004*, R-35, p. 161)

2/II/1/5
(P - *MGS 2000*, R-96, p. 407; A - *MGS 2001*, R-6, p. 58)

2/II/2/3
(P - *MGS 2003*, R-51, p. 212; A - *MGS 2004*, R-35, p. 161)

Chapter 2, Part II—Complaints

2/II/2/5
(P - *MGS 2008*, R-57, p. 245; A - *MGS 2009*, R-3, p. 46)
(P - *MGS 2010*, R-84, pp. 327-28; A - *MGS 2011*, R-3, p. 42)

Chapter 2, Part III—Appeals

2/III/1
(P - *MGS 1997*, R-5, pp. 245-61; A - *MGS 1998*, R-5, p. 70)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2/III/2
(P - *MGS 1997*, R-5, pp. 245-61; A - *MGS 1998*, R-5, p. 70)

2/III/2/3
(P - *MGS 2003*, R-51, p. 212; A - *MGS 2004*, R-35, p. 161)

2/III/2/5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2/III/2/6
(P - *MGS 2008*, R-57, p. 245; A - *MGS 2009*, R-3, p. 46)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0*, R-84, pp. 327-28; A - *MGS 2011*, R-3, p. 42)

Chapter 3, Part I—Bylaws of the General Synod

3/I/1b-c
(P - *MGS 1992*, R-9, p. 282; A - *MGS 1993*, R-5, p. 57)

3/I/2/3b
(P - *MGS 1988*, R-15, p. 243; A - *MGS 1989*, R-6, p. 47)

3/I/3/1
(P - *MGS 2015*, R-42, pp. 192-93; A - *MGS 2016*, R 16-2, p. 36)

3/I/3/1d
(P - *MGS 2001*, R-21, p. 73; A - *MGS 2002*, R-6, p. 63)

3/I/3/1-6
(P - *MGS 1969*, R-4, pp. 216-26; A - *MGS 1970*, R-98, p. 149)
(P - *MGS 1973*, R-1, p. 179; A - *MGS 1975*, R-7, p. 103)
(P - *MGS 1973*, R-2, p. 179; A - *MGS 1975*, R-8, p. 103)
(P - *MGS 1978*, R-7, pp. 249-50; A - *MGS 1979*, R-5, p. 49)
(P - *MGS 1978*, R-8, p. 250; A - *MGS 1979*, R-5, p. 49)
(P - *MGS 1989*, R-25, p. 221: A - *MGS 1990*, R-7, p. 41)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6, p. 55)
(P - *MGS 1994*, R-9, p. 229; A - *MGS 1995*, R-7, p. 52)
(P - *MGS 2002*, R-58 amended, pp. 242-45; A - *MGS 2003*, R-4, p. 58)

3/I/3/1b
(P - *MGS 2012*, R-49, p. 301; A - *MGS 2013*, R-4, p. 51)

3/I/3/1c
(P - *MGS 1998*, R-16, p. 318; A - *MGS 1999*, R-9, p. 68)
(P - *MGS 2012*, R-49, p. 301; A - *MGS 2013*, R-4, p. 51)

3/I/3/2a
(P - *MGS 2012*, R-48, p. 300; A - *MGS 2013*, R-4, p. 51)
(P - *MGS 2015*, R-42, pp. 192-93; A - *MGS 2016*, R 16-2, p. 36)

3/I/3/2b
(P - *MGS 1998*, R-16, p. 318; A - *MGS 1999*, R-9, p. 68)
(P - *MGS 2011*, R-16, p. 100; A - *MGS 2012*, R-4, p. 47)

3/I/3/4
(P - *MGS 2005*, R-10, pp. 78-79; A - *MGS 2006*, R-6, p. 51)

3/I/3/5a
(P - *MGS 1999*, R-10, p. 68; A - *MGS 2000*, R-4, p. 63)

3/I/3/6c
(P - *MGS 2011*, R-21, p. 112; A - *MGS 2012*, R-4, p. 47)
(P - *MGS 2019*, EC 19-11, p. 53; A - *MGS 2022*, EC 22-9a, p. 34)

3/I/3/6g
(P - *MGS 2005*, R-13, p. 89; A - *MGS 2006*, R-6, p. 51)

3/I/4/1d
(P - *MGS 1980*, R-7, p. 41; A - *MGS 1981*, R-5, p. 43)

3/I/4/2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6, p. 55)

3/I/4/2a
(P - *MGS 1992*, R-6 and R-20, pp. 57, 67; A - *MGS 1993*, R-6, p. 55)
(P - *MGS 2010*, R-85, pp. 328-29; A - *MGS 2011*, R-4, p. 42)

3/I/4/2b
(P - *MGS 1980*, R-4, pp. 257-58; A - *MGS 1981*, R-5, p. 43)
(P - *MGS 1990*, R-4, p. 238; A - *MGS 1991*, R-7, p. 49)
(P - *MGS 2010*, R-85, pp. 328-29; A - *MGS 2011*, R-4, p. 42)

3/I/4/3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6, p. 55)

3/I/4/4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6, p. 55)
(P - *MGS 1998*, R-16, p. 317; A - *MGS 1999*, R-9, p. 68)

3/I/5/1b
(P - *MGS 1992*, R-15, p. 61; A - *MGS 1993*, R-6, p. 55)
(P - *MGS 1998*, R-15, p. 314; A - *MGS 1999*, R-9, p. 68)

3/I/5/1d
(P - *MGS 2025*, CO 26-5, p. 177; A - *MGS 2026*, EC 26-6, p. 31)

3/I/5/2a
(P - *MGS 1974*, R-3, p. 120; A - *MGS 1975*, R-3, p. 100)
(P - *MGS 1982*, R-7, pp. 174-75; A - *MGS 1983*, R-6, p. 42)
(P - *MGS 2000*, R-130, p. 456; A - *MGS 2001*, R-8, p. 59)

3/I/5/3a
(P - *MGS 1974*, R-6, p. 201; A - *MGS 1975*, R-4, p. 101)
(P - *MGS 1982*, R-7, pp. 174-76; A - *MGS 1983*, R-6, p. 42)

3/I/5/3b(3)
(P - *MGS 1974*, R-6, p. 201; A - *MGS 1975*, R-4, p. 101)

3/I/5/4a
(P - *MGS 1982*, R-7, pp. 174-76; A - *MGS 1983*, R-6, p. 42)

3/I/5/5a
(P - *MGS 1996*, R-10, p. 267; A - *MGS 1997*, R-8, p. 65)

3/I/5/5b(4)
(P - *MGS 1974*, R-3, p. 267; A - *MGS 1975*, R-5, p. 103)
(P - *MGS 2000*, R-110, pp. 427-29; A - *MGS 2001*, R-8, p. 59)

3/I/5/5b(1-5)
(P - *MGS 1994*, R-10, pp. 229-30; A - *MGS 1995*, R-7, p. 52)
(P - *MGS 1998*, R-6, p. 295; A - *MGS 1999*, R-9, p. 68)
(P - *MGS 2000*, R-110, pp. 427-29; A - *MGS 2001*, R-8, p. 59)

3/I/5/6a
(P - *MGS 1989*, R-23, p. 220; A - *MGS 1990*, R-7, p. 41)
(P - *MGS 1993*, R-8, p. 250; A - *MGS 1994*, R-5, p. 52)
(P - *MGS 2001*, R-95, p. 367; A - *MGS 2002*, R-6, p. 63)

3/I/5/6b
(P - *MGS 1994*, R-3, p. 221; A - *MGS 1995*, R-7, p. 52)

3/I/5/7
(P - *MGS 1998*, R-17, pp. 318-19; A - *MGS 1999*, R-9, p. 68)

3/I/5/8a
(P - *MGS 1989*, R-23, p. 220; A - *MGS 1990*, R-7, p. 41)
(P - *MGS 1993*, R-8, pp. 250-51; A - *MGS 1994*, R-5, p. 52)
(P - *MGS 2000*, R-107, p. 421; A - *MGS 2001*, R-8, p. 59)
(P - *MGS 2004*, R-5 amended, p. 56; A - *MGS 2005*, R-5, p. 61)

3/I/5/9a
(P - *MGS 1986*, R-10, p. 214; A - *MGS 1987*, R-6, p. 41)
(P - *MGS 1988*, R-8, pp. 232-33; A - *MGS 1989*, R-6, p. 47)
(P - *MGS 1998*, R-11, p. 310; A - *MGS 1999*, R-9, p. 68)
(P - *MGS 2017*, R 17-57, p. 319; A - *MGS 2018*, EC 18-7, p. 40)
(P - *MGS 2023*, TH 23-1, p. 229; A - *MGS 2024*, EC 24-4, p. 34)

3/I/5/10
(P - *MGS 1993*, R-21, pp. 282-83; A - *MGS 1994*, R-5, p. 52)

3/I/5/10a
(P - *MGS 1982*, R-7, pp. 174-76; A - *MGS 1983*, R-6, p. 42)
(P - *MGS 2004*, R-6, p. 57; A - *MGS 2005*, R-5, p. 61)
(P - *MGS 2019*, W 19-1, p. 294; A - *MGS 2021*, 11, p. 35)

3/I/5/11
(P - *MGS 1974*, R-8, p. 202; A - *MGS 1975*, R-6, p. 103)

3/I/5/11a
(P - *MGS 1987*, R-10, p. 176; A - *MGS 1988*, R-6, p. 47)

3/I/5/11b
(P - *MGS 1987*, R-10, p. 176; A - *MGS 1988*, R-6, p. 47)

3/I/5/11b(1)
(P - *MGS 1988*, R-4, p. 228; A - *MGS 1989*, R-6, p. 47)

3/I/5/12
(P - *MGS 2002*, R-47, p. 214; A - *MGS 2003*, R-4, p. 58)
(P - *MGS 2009*, R-64, p. 299; A - *MGS 2010*, R-6, p. 45)
(P - *MGS 2010*, R-79, p. 301; A - *MGS 2011*, R-4, p. 42)
(P - *MGS 2015*, R-38, pp. 168-69; A - *MGS 2016*, R 16-2, p. 36)

3/I/6
(P - *MGS 2010*, R-19, pp. 95-96; A - *MGS 2011*, R-4, p. 42)

3/I/7/1
(P - *MGS 1998*, R-16, p. 317; A - *MGS 1999*, R-9, p. 68)

3/I/7/2
(P - *MGS 1981*, R-5, p. 197; A - *MGS 1982*, R-5, p. 41)

3/I/8/1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6, p. 55)

3/I/8/2
(P - *MGS 1970*, R-3, p. 200; A - *MGS 1971*, R-8, p. 143)
(P - *MGS 1981*, R-6, p. 198; A - *MGS 1982*, R-5, p. 41)
(P - *MGS 2002*, R-58 amended, pp. 242-45; A - *MGS 2003*, R-4, p. 58)

3/I/8/3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6, p. 55)
(P - *MGS 2016*, R 16-38, p. 175; A - *MGS 2017*, R 17-7, p. 43)

3/I/9/2
(P - *MGS 2010*, R-19, pp. 95-96; A - *MGS 2011*, R-4, p. 42)

3/I/9/3
(P - *MGS 2002*, R-48, p. 215; A - *MGS 2003*, R-4, p. 58)
(P - *MGS 2024*, CO 24-2, p. 240; A - *MGS 2025*, EC 25-10, p. 27)

3/I/9/4
[Retained for future use.]
(P - *MGS 2010*, R-85, pp. 328-29; A - *MGS 2011*, R-4, p. 42)

Chapter 3, Part I—Bylaws of the General Synod

3/I/9/5
(P - *MGS 1971*, R-1, p. 198; A - *MGS 1972*, R-6, p. 120)
(P - *MGS 1986*, R-8, p. 41; A - *MGS 1987*, R-6, p. 41)
(P - *MGS 2023*, CO 23-2, p. 190; A - *MGS 2024*, EC 24-3, p. 34)

3/I/9/6
(P - *MGS 1971*, R-1, p. 209; A - *MGS 1972*, R-6, p. 120)

3/I/9/7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6, p. 55)
(P - *MGS 2002*, R-58 amended, pp. 242-45; A - *MGS 2003*, R-4, p. 58)

3/I/9/9
(P - *MGS 1980*, R-7, p. 260; A - *MGS 1981*, R-5, p. 43)
(P - *MGS 1985*, R-3 p. 176; A - *MGS 1986*, R-7, p. 40)
(P - *MGS 1994*, pp. 224-25; A - *MGS 1995*, R-7, p. 52)

3/I/9/10
(P - *MGS 1983*, R-10, p. 213; A - *MGS 1984*, R-5, p. 40)

3/I/9/11
(P - *MGS 1981*, R-2, p. 150, 213; A - *MGS 1982*, R-5, p. 41)
(P - *MGS 2002*, R-48, p. 215; A - *MGS 2003*, R-4, p. 58)
(P - *MGS 2016*, R 16-36, p. 173; A - *MGS 2017*, R 17-6, p. 43)

3/I/9/12
(P - *MGS 1980*, R-8, p. 260; A - *MGS 1981*, R-5, p. 43)
(P - *MGS 1989*, p. 217; A - *MGS 1990*, R-7, p. 41)
(P - *MGS 1994*, R-11, p. 231; A - *MGS 1995*, R-7, p. 52)

3/I/9/13
(P - *MGS 2009*, R-63, p. 298; A - *MGS 2010*, R-6, p. 45)

3/I/9/14
(P - *MGS 2009*, R-15, pp. 91-92; A - *MGS 2010*, R-6, p. 45)

3/I/10
P - *MGS 2021*, CO 21-3, pp. 235-239; A - *MGS 2022*, EC 22-7, p. 33)

Chapter 3, Part II—Special Rules of Order of the General Synod

3/II/1/1
(P - *MGS 2016*, R 16-38, p. 175; A - *MGS 2017*, R 17-7, p. 43)

3/II/1/2b
P - *MGS 2021*, CO 21-6, p. 241; A - *MGS 2022*, EC 22-8, p. 33)

3/II/1/2d (formerly 3/II/1/2c)
P - *MGS 1992*, R-16, p. 621, A - *MGS 1993*, R-6, p. 55)

3/II/1/2e (formerly 3/II/1/2d)
(P - *MGS 1992*, R-16, p. 62; A - *MGS 1993*, R-6, p. 55)

3/II/1/2f (formerly 3/II/1/2e)
(P - *MGS 1992*, R-6, p. 57; A - *MGS 1993*, R-6, p. 55)

Chapter 3, Part II—Special Rules of Order of the General Synod

3/II/1/2j (formerly 3/II/1/2i)
(P - *MGS 1983*, R-4, p. 154; A - *MGS 1984*, R-5, p. 40)

3/II/2/7
(P - *MGS 1980*, R-9, pp. 260-61; A - *MGS 1981*, R-5, p. 43)

3/II/2/8
(P - *MGS 1973*, R-3, p. 180; A - *MGS 1975*, R-9, p. 104)

3/II/2/9
(P - *MGS 2004*, R-2, pp. 52-53; A - *MGS 2005*, R-5, p. 61)

3/II/3/2
(P - *MGS 1982*, R-2, pp. 183-84; A - *MGS 1983*, R-6, p. 42)
(P - *MGS 2002*, R-59 amended, p. 246; A - *MGS 2003*, R-4, p. 58)

3/II/3/3
(P - *MGS 1973*, R-3, p. 180; A - *MGS 1975*, R-9, p. 104)

Appendix—Formularies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Formulary 1 - Declaration for Licensed Candidates
(P - *MGS 1972*, R-8, p. 195; A - *MGS 1973*, R-6, p. 128)
(P - *MGS 2013*, R-83, pp. 362-63;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19*, CO 19-6, pp. 249-50; A - *MGS 2021*, EC 21-5, p. 35)

Formulary 3 - Declaration for 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
(P - *MGS 1972*, R-8, p. 195; A - *MGS 1973*, R-6, p. 128)
(P - *MGS 2013*, R-83, pp. 362-63;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19*, CO 19-5, p. 249; A - *MGS 2021*, EC 21-4, p. 35)
(P - *MGS 2019*, CO 19-6, pp. 249-50; A - *MGS 2021*, EC 21-5, p. 35)

Formulary 4 - Attestation of an Ordained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P - *MGS 2013*, R-29, p. 133; A - *MGS 2014*, R-2, p. 41)

Formulary 5 - Call to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P - *MGS 1971*, R-3, p. 210; A - *MGS 1972*, R-6, p. 120)
(P - *MGS 1976*, R-22, p. 109; A - *MGS 1977*, R-1, p. 42)
(P - *MGS 1981*, R-7, p. 198; A - *MGS 1982*, R-4, p. 41)
(P - *MGS 2003*, R-90, pp. 282-83; A - *MGS 2004*, R-35, p. 161)
(P - *MGS 2013*, R-61, pp. 259-60;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16*, R 16-53, pp. 264-66; A - *MGS 2017*, R 17-5, p. 42)
(P - *MGS 2018*, CO 18-3, pp. 261-62; A - *MGS 2019*, EC 19-4, p. 38)
(P - *MGS 2025*, CO 25-1, pp. 168-170; A - *MGS 2026*, EC 26-2, p.30)

Formulary 6 - Appointment of a General Synod Professor
(P - *MGS 1983*, p. 158)
(P - *MGS 1989*, R-20, pp. 212-17; A - *MGS 1990*, R-6, p. 40)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Formulary 7 - Declaration for a General Synod Professor
(P - *MGS 1972*, R-8, p. 195; A - *MGS 1973*, R-6, p. 128)
(P - *MGS 2010*, R-18, pp. 87-95;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3*, R-83, pp. 362-63;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19*, CO 19-6, pp. 249-50; A - *MGS 2021*, EC 21-5, p. 35)

Formulary 9 -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P - *MGS 1999*, R-42, p. 209;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19*, CO 19-7, pp. 250-51; A - *MGS 2021*, EC 21-6, p. 35)
(P - *MGS 2021*, CO 21-2, pp. 231-32; A - *MGS 2022*, EC 22-3, pp. 31-32)

Formulary 10 -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Church Member
(P - *MGS 1981*, R-16, p. 210; A - *MGS 1982*, R-4, p. 41)

Formulary 11 -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Church to Another Denomination
(P - *MGS 1974*, R-2, p. 190; A - *MGS 1975*, R-2, p. 100)

Formulary 12 - Charge
(P - *MGS 1997*, R-5, pp. 260-61; A - *MGS 1998*, R-5, p. 70)

Formulary 13 - Citation to an Accused Person or Consistory
(P - *MGS 1983*, R-5, p. 155; A - *MGS 1984*, R-4, p. 40)

Formulary 14 - Citation to a Witness
(P - *MGS 1983*, R-5, p. 155; A - *MGS 1984*, R-4, p. 40)

Formulary 15 - Provision for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Congregations
(P - *MGS 1999*, R-52, p. 224; A - *MGS 2000*, R-3, p. 63)
(P - *MGS 2011*, R-43, pp. 278-80; A - *MGS 2012*, R-3, p. 47)

Formulary 16 - Declaration for Commissioned Pastors
(P - *MGS 2010*, R-33, pp. 144-45; A - *MGS 2011*, R-3, p. 42)
(P - *MGS 2013*, R-83, pp. 362-63; A - *MGS 2014*, R-2, p. 41)
(P - *MGS 2019*, CO 19-6, pp. 249-50; A - *MGS 2021*, EC 21-5, p. 35)

Formulary 17 - Certificate of Transfer for a Licensed Candidate
(P - *MGS 2019*, CO 19-11, pp. 253-54; A - *MGS 2021*, EC 21-10, p. 35)

Formulary 18 - Certificate for the Transfer of a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to Another Denomination
(P - *MGS 2021*, CO 21-1, pp. 230-31; A - *MGS 2022*, EC 22-2, pp. 31-32)

#868fwtf77